

공중화장실 운영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지자체 사례를 중심으로



공중화장실 운영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지자체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진

임 태 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이 소 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1. 연구배경 및 목적

□ 연구배경

- 공중화장실 수급확대에 대한 필요성은 증가추세이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한 조직, 예산, 법적 근거 등이 미흡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관련부처, 지자체, 협회, 이용자 등의 의견이 반영된 공중화장실 관리·운영방안을 도출하는 것 자체에 많은 제약과 한계점 존재
 - 사회변화에 따른 공중화장실 이용 현황 및 지역 여건이 반영된 공중화장실 운영방안 마련이 어려운 상황
 -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눈높이 및 욕구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근본적인 조직 인원 예산이 제한된 상태에서, 지금의 인원과 예산으로 공중화장실(민간개방화장실)의 운영·관리에 관련된 효율과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

□ 연구목적

- 현행 공중화장실의 적용 범위별 관리현황 및 실태 분석 통한 시사점 도출
 - 지자체 단위에서 공중화장실이 적용범위별로 어떻게 관리·운영되고 있는지와 공중화장실 적용범위별 담당 소관부처를 조사함으로써 관리주체 및 관리체계에 대한 실태조사 후 제도개선 방안 도출
- 민간의 자율적 참여 확대로 공중화장실 수급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민간개방화장실) 공급·관리 측면에서 업무추진상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에 관련된 의견조사 후 시사점 도출

- 개방화장실을 확대하기 위하여 민간개방화장실 공급주체인 건물주를 대상으로 민간참여자의 애로사항 및 참여 동기에 관한 의견조사 실시 후 개선 필요사항 도출

2. 지자체 공중화장실 공급관리 측면에서의 의견조사결과 종합

1) 지자체 공중화장실 담당공무원 의견조사 종합

공급관리체계 측면

- 조직체계상의 공중화장실 전담부서 부재
 - 공중화장실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부서에서 설치하는 경우와 사업추진부서에서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설치부서와 관리부서의 이원화로 혼란 발생
 - 공중화장실 관리부서가 일원화 되어 있지 않아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개방화장실 지정은 관련 조례가 있지만 실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거의 없는 실정
-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에 대해 총괄적으로 관리 담당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라는 질문에 환경과 관련된 조직에서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4.39%로 가장 많았음
 - 구체적으로 경제문화국-환경보호과, 경제개발국-환경보호과, 교통환경국-환경위생과, 복지생활국-환경위생과 등에서 관련업무 담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규 제3조의 적용범위에 의하여 공중화장실 허가, 설치 관리 등에 대하여 협조하는 부서를 묻는 질문에 건축과, 건축허가과, 건축지적과 등과 같이 건축물 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와의 협조가 존재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11.25%로 가장 높음
-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안전한 화장실 설치 및 관리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지에 대한 설문문항에 대해 ‘함께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2.2%로 매우 높게 나타남

- 화장실 비상벨, CCTV 설치 등 안전한 화장실 설치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서로는 생활안전교통과, 건설도시국-안전재난과, 안전건설과, 안전건설교통국-안전총괄과, 안전건설국-안전도시과 등으로 응답
 - 반면에 가족행복과, 경제녹지과, 경제산업과, 산림과, 자치행정국_행정지원과로 응답한 비율도 존재해 안전한 화장실 설치 및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조직)의 부재와 관련업무의 체계성 및 전문성 부족을 예측할 수 있음
- 허가·설치와 관리의 일원화된 업무구조에 대해 비효율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3.14%로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 높음
- ‘일원화된 조직체계 하에서 운영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는 의견에 대한 주된 이유로는 허가과 관리가 분리되면 중복관리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부서 간 원활하지 못한 협업이 발생되어 업무 추진 어려움이 따르며 공중화장실의 설치부서와 관리부서를 분리하여 운영할 경우 민원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분명
 - ‘이원화된 조직체계 하에서 운영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는 의견에 대한 주된 이유로는 일원화된 하나의 전담부서에서 공중화장실에 관련된 업무를 일괄적으로 관리 처리하기에는 지역내 공중화장실 수가 너무 많으며,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리를 일원화된 조직 구조 하에서 운영할 경우, 인력, 예산 등이 낭비될 수 있다고 응답
- 지자체의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방식과 담당 공무원이 느끼는 어려움
- 지자체의 공중화장실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되고 있으며 (49.89%) 위탁 및 직영관리를 혼합적 방법을 사용해 관리하는 지자체도 존재(23.37%)
 - 현재의 유지관리 방식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으로는 공중화장실 개수는 증가하고 이에 따른 관리도 엄격해짐으로 인해 공중화장실 관리부서의 업무과다가 발생하고 있고, 신규시설 요청에 따른 예산 및 운영비 확보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대다수

- 공중화장실 관련 업무 효율성 증진 위한 개선 필요영역
 - 공중화장실 관련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점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에 대한 질문에 1순위는 ‘관련담당 인력 충원’이 42.15%로 가장 높았으며 2순위는 ‘업무체계상의 구조개선’이 25.13%로 가장 높은 비율 보임

□ 안전성 확보 측면

- 공중화장실의 안전한 이용환경 확보를 위한 관련 조례 부재
 - 공중화장실의 안전한 이용환경 확보를 위한 조례가 재정 되었는지를 묻는 설문문항에 대해서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응답이 57.33%로 ,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등 범죄발생으로부터 안전한 이용 환경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의 질문에 마련하고 있다는 응답이 80.63%로 매우 높은 비율 보임
 - 안전한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비상벨 설치를 시행중인 지자체도(31.87%) 있었으나 여전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은 미흡
- 안전성 확보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시책
 - 공중화장실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 관련 문제 중 가장 개선이 필요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 질문에 범죄자 처벌규정 강화가 36.13%로 가장 높았음
 - 공중화장실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 관련 문제 중 가장 개선이 필요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의 설문문항에 대해 가장 높은 비율은 49.21%인 불법촬영 등 여성피해자 중심의 성범죄로 나타남
 - 근무하고 계신 지자체에 위치한 공중화장실 내 안전시설 설치 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장소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의 질문에 공원 및 산책로라고 응답한 공무원이 52.88%로 과반수 이상으로 확인됨

□ 개방화장실 수급확대 측면

- 공중화장실 수급관리 중 노후 공중화장실 개선이 가장 시급
 - 현재 공중화장실 공급이 수요에 비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의 질문에 대부분의 공무원 64.92%가 충분히 공급되고 있다고 응답
 - 공중화장실 수급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를 순위로 분석한 결과 1순위와 2순위 모두 노후 공중화장실 등 개선으로 43.46%, 21.47%의 높은 비율을 나타냄
- 도심지 내 공중화장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민간개방화장실 수급 확대는 필요하지 않다고 의견이 51.05%
 - 도심지 내 공중화장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민간개방화장실 수급 확대가 필요한지를 묻는 설문 문항에 대해서는 큰 차이는 나타내고 있지 않지만 필요하지 않다 의 응답이 51.05%, 필요하다는 응답이 48.17%로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근소하게 더 높음
 - 민간개방화장실이 위치한 건물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관리 운영비를 대부분 지원하고 있으며(59.42%) 민간화장실 대상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등의 자체 점검을 위한 점검 장비 또한 지원 중(54.45%)
- 민간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원수준
 - 현재의 민간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원 수준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의 설문문항에 충분히 지원되고 있다고 응답은 52.88%,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43.46%로 지자체 공무원들은 대부분 충분히 지원하고 있다고 인식
 -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민간개방화장실 지정확대 사업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건물의 소유주가 왜 개방을 취소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 질문에 공무원 300명인 78.53%가 위생상태 악화, 시설파손 등으로 인한 관리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음
 - 민간개방화장실 수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설문문항에 물품 및 보조금 지원의 확대 필요하다는 응답이 47.38%로 가장 많았음

- 민간개방화장실의 개인 소유 시설물(건물주)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를 묻는 설문 문항에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고 응답한 공무원은 46.6%로 가장 많았음
-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여부
 - 공중화장실 관리 및 점검을 위한 지자체, 경찰서, 관련 단체 등과의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까? 의 설문문항에 구축되어 있다고 응답한 공무원은 74.35%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협력체계 구축되어 있지만 관련된 자문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은 실정

2) 지자체 개방화장실 민간수급주체 의견조사 종합

공급관리체계 측면

- 민간에서 개방화장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지저분한 사용으로 인해 화장실 관리가 어렵다는 의견이 팽배
 - 특히 유동인구가 많이 존재하는 재래시장 및 상가밀집 지역 내 화장실을 개방형 화장실로 지정하여 사용하는 경우 시설파손 및 고장의 빈도가 동시에 증가하여 추가관리비용 발생 심각
 - 24시간 개방으로 인해 수시로 청결 상태 유지위해 새로운 인력을 고용해야하는 부분이 새로운 비용발생으로 직결되고, 그럴 경우 건물전체의 관리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건물입점 관계자들 역시 개방화장실 참여를 반대하는 실정
 - 지원받는 비용보다 더 많은 청소관리 비용부담 발생과 시설파손 등으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하여 사업 참여 철회 유발

안전성 확보 측면

- 화장실 내 불법촬영물 설치에 대해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지원 부재
 - 불법촬영물 설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를 대여해주는 방식보다는 전

문가 또는 관계자가 직접 개방화장실로 방문하여 설치 유무를 정기적으로 확인해 줄 수 있는 인력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팽배

개방화장실 수급확대 측면

○ 지정확대 위한 필요사항

- 청결한 화장실이 유지될 수 있도록 화장실 청소용품을 대폭적으로 지원하고, 청소관리 인력을 지원해주는 사항이 필요
- 민간 건물에 입점한 사람들의 경우 개개인의 손익 계산이 맞지 않은 경우 민간 개방형 화장실 참여 및 유도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실정을 반영해 「개방화장실 지정운영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인해서 민간 건물주(수급주체)들에게 이익이 발생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책에 대한 고민 필요

3. 공중화장실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종합

1) 기본방향

혁신적인 국비지원 필요

- 개방화장실 지정이 반드시 필요한 입지를 대상으로 혁신적인 예산지원 필요
 - 민간 수급자로부터의 개방화를 유도할 수 있는 합리적인 관리비용을 예측하여 혁신적인 금액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도입 필요
 -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지 및 역내 주변으로 개방화장실의 지정이 반드시 필요한 위치가 존재 하지만, 충분치 못한 지자체의 예산으로 민간으로부터의 개방화를 유도할 수 없는 현실 존재
 - 개방화장실 지정이 반드시 필요한 위치를 선발해 지자체 간 경쟁을 통하여 차등화하여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한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활용 필요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중화장실의 공급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행안

- 부, 지자체, 주민, 시민단체 등의 협력적 노력 필요
- 지자체 단위 공중화장실 전담 관리체계를 확충하는 것에 대한 현실적인 한계점이 다르므로 현재구조 틀에서 부서간 또는 민·관 간의 협력체계가 가동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 필요
- 공중화장실 협력적 관리체계 위한 공중화장실 위원회 구축 및 활성화 필요
- 민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서 「공중화장실 위원회」 활용 또한 가능
- 민·관 간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민간 전문 교육기관의 참여를 토대로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수준 높은 교육시행 또한 가능 할 것으로 판단

공중화장실의 안전성 확보방안 마련 필요

- 취약지역 중심의 상시점검 시스템 마련 필요
 - 어둡고 후미진 공원주변 등에 위치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범죄발생 또는 범죄발생에 대한 불안감이 조성될 수 있으므로 취약지역에 위치한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상시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필요
- 이동식 카메라 설치지원과 민간보안업체와의 협업행정을 통한 공중화장실 안전성 확보방안 마련 검토 가능
 - 범죄취약지역에 위치하면서 안전사고에 관련된 사고 발생률이 높은 공중화장실을 중심으로 이동식 카메라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주고, 민간경비업체와의 위탁계약을 통해 유지관리 될 수 있는 방안 모색 가능

2)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 종합

공급·관리체계 측면

- 공중화장실 관련 중앙정부 차원의 법령정비 필요

- 공중화장실 용어의 명확화 필요
- 지자체의 공중화장실 관리 및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등의 관련 항목을 개정하여 지자체 여건에 맞게 반영하도록 노력 필요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중화장실 공급 계획 수립 필요
 - 정기적 현황 및 실태조사에 기반 한 지역맞춤형 공중화장실 공급계획 수립 필요
 -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공급을 계획하기 위해서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수요조사가 일차적으로 선행되는 것이 필요하며,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별 공중화장실 공급계획을 마련하는 접근 필요
- 민간 개방화장실 지정확대 사업 지정요건 기준 완화 필요
 - 지자체에서 적용중인 민간 개방화장실 지정요건 또한 매우 제한적이어서, 참여를 원한다 할지라도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이 아닐 경우 참여 불가능
 - 개방화장실 지정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 지정요건을 완화 또는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민간수급주체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조성할 필요 있음
- 인식개선을 위한 정책적 장치 마련 시급
 - 인식개선을 통해 시민참여를 촉진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법의 홍보활동이 지속되는 것이 필요
- 지자체 단위 공중화장실 관리 조직체계의 개선책으로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공중화장실의 공급 및 효율적 관리 필요
 - 지자체 단위 공중화장실 전담 관리체계 확충하는 것에 현실적인 한계점이 따르므로 현재구조 틀에서 부서간의 협력체계가 가동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설정 필요
 -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에 대해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는 존재하지만 업무의 특성상 허가 및 설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복수의 부서가 참여하는 업무의 진행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공중화장실 업무 관련협조부서와 다양한 전문가들의 참여와 의견을 토대로 공중화장실 공급 및 관리에

대한 개선방안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기준안 마련 및 업데이트 진행할 수 있는 협조체계 마련 필요

□ 공중화장실 안전성 확보 측면

○ 제도개선

- 공중화장실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자체 조례 정비 필요
- 취약지역 중심의 상시점검 시스템 마련 필요
- 지자체 단위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확인 전담조직 마련운영
- 이동식 카메라 설치지원과 민간보안업체와의 협업행정을 통한 공중화장실 안전성 확보마련 마련 가능

○ 디지털기술의 활용을 통한 안전성 확보

- 빅데이터 활용하여 공공화장실 위치 제공하는 모바일 앱(App) 개발·제공 가능
- 산업측면에서 유료화장실 산업육성이 수입과 일자리를 창출 시킬 수 있는 영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유료화장실을 대상으로 디지털기술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방안 검토 가능
- 유료화장실은 민간사업화로 전환하여 기본 이상의 특별한 서비스를 원하는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을 채택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 개방화장실 수급확대 및 관리 측면

○ 예산지원측면

- 우수관리 개방화장실 사례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개방화장실 지정이 반드시 필요한 입지를 우선적으로 선발해 합리적인 수준의 국비를 지원하는 제도 도입 필요
- 이용률, 개방시간, 번기수, 청소상태에 따른 다양한 물품 및 구입비를 차등적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는 방안 필요

- 노후화장실 시설개선을 위한 정기적 실태조사 후 노후된 화장실을 유지 보수 하기 위한 전략 마련 필요
- 비예산지원측면
 - 공공근로 인력 활용한 청소인력 지원 방안 검토 필요
 - 사회적경제조직을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건축법상 「공개공지」의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는 방법을 통해 개방형 화장실 설치 규정을 추가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검토 가능
 - 유동인구 밀집 지역 또는 상가밀집 지역 인근 공중화장실에 명명권(命名權) 제도 도입 검토 가능
 - 임팩트 있는 그림을 통해 이용자의 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시행 검토 가능

【표 1】 공중화장실 확충 위한 단계별 제도개선 방안

구분	공중화장실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단기	중기	장기
공급 관리 측면	건축물 용도별 위생기구 세부 설치기준 권고안 조례반영		○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공급 위한 정기적 수요조사 시행	○		
	민간 개방화장실 지정확대 사업 지정요건 기준 완화		○	
	민간개방화장실 수급주체 모집 위한 다양한 방법의 홍보활동 도입	○		
	공중화장실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안전성 확보	공중화장실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자체 조례 정비		○	
	취약지역 중심의 공중화장실 상시점검 시스템 마련		○	
	지자체 단위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확인 전담조직 운영	○		
	이동식 카메라 설치지원과 민간보안업체와의 협업행정을 통한 공중화장실 안전성 확보방안 마련	○		
	디지털기술의 활용할 수 있는 유료화장실 도입 검토			○
	빅데이터 활용한 공중화장실 위치 제공 모바일 앱 개발 및 제공	○		
개방 화장실 수급 확대	개방화장실 지정이 필요한 입지를 선정하여 국비지원		○	
	유동인구 고려한 지원금 지원물품 차등화 방안 마련		○	
	노후화장실 개선비용 지원		○	
	공공근로 인력 활용한 청소인력 지원방안 마련	○		
	민관 간의 명명권 제도 도입	○		
	네티효과 활용한 정책도입 검토	○		

CONTENTS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3
1. 연구배경	3
2. 연구목적	8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1
1. 연구범위	11
2. 연구방법	12
제2장 국내 공중화장실 일반현황	15
제1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관련법규 및 상위계획 검토	17
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관련법규	17
2. 기타 관련법규	18
제2절 공중화장실 목적 유형 적용범위 검토	20
1. 공중화장실의 목적 및 유형	20
2. 공중화장실의 적용범위 검토	21
제3절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사업현황	25
1. 공중화장실 사업현황	25
2. 개방화장실 사업현황	28
제4절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설치현황	31
1. 공중화장실 설치현황	31
2. 개방화장실 설치현황	34
제3장 지자체 공중화장실 공급·관리체계 실태분석	37
제1절 공중화장실 수급에 관한 기본방침	39
1. 분석대상(지자체) 선정기준	39

2. 지자체 공중화장실 수급에 관한 기본방침	40
제2절 공중화장실 적용범위별 관리현황	43
1.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현황분석	43
2. 공중화장실 관리 조직체계 현황분석	60
3.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사업 현황 분석	64
제3절 시사점 도출	70
1. 공급·관리측면	70
2. 안전성 확보 측면	73
3. 개방화장실 수급관리 측면	76
제4장 공중화장실 공급관리 측면에서의 의견조사	79
제1절 지자체 공중화장실 담당공무원 의견조사	81
1. 조사개요	81
2. 공급·관리체계 측면에서의 설문분석 결과	84
3.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의 설문분석 결과	106
4. 개방화장실 수급확대 측면에서의 설문분석 결과	114
제2절 지자체 개방화장실 수급주체(건물주) 의견조사	132
1. 심층인터뷰(Focused on In-depth Interview) 조사개요	132
2. 심층인터뷰(Focused on In-depth Interview) 분석결과	135
제3절 시사점 도출	140
1. 지자체 공중화장실 담당공무원 의견조사 종합	140
2. 지자체 개방화장실 수급주체(건물주) 의견조사 종합	144
3. 시사점 도출	145

CONTENTS

제5장 공중화장실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147
제1절 기본방향	149
1. 혁신적인 국비지원 필요	149
2.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한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활용 필요 ..	150
3. 공중화장실의 안전성 확보방안 마련 필요	150
제2절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	151
1. 공급 관리체계 측면	151
2. 공중화장실 안전성 확보 측면	165
3. 개방화장실 수급 관리 측면	171
【참고문헌】	181
【부록 1】 심층인터뷰 회의록 1	183
【부록 2】 심층인터뷰 회의록 2	185
【부록 3】 심층인터뷰 회의록 3	187
【부록 4】 IPC Minimum Plumbing Facilities	192
【부록 5】 공중화장실 세부 설치기준(안)	195
【부록 6】 공중화장실 안심환경개선 체크리스트	200

표목차

[표 1-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개방화장실) ……………	5
[표 1-2]	개인소유물 시설 내 개방화장실 현황(2019년 12월 기준) …	5
[표 1-3]	공공시설 내 개방화장실 현황(2019년 12월 기준) ……………	6
[표 1-4]	공중화장실 범죄발생 현황(2017년 12월 기준) ……………	6
[표 1-5]	공중화장실의 유형 ……………	8
[표 2-1]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	17
[표 2-2]	기타 관련 법규 ……………	18
[표 2-3]	공중화장실의 유형 ……………	20
[표 2-4]	공중화장실의 적용범위 ……………	22
[표 2-5]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개방화장실) ……………	29
[표 2-6]	개방화장실 지원 조례 현황 ……………	29
[표 2-7]	개방화장실 지원방식 ……………	30
[표 2-8]	시도별 민간 개방화장실 지원사항 ……………	30
[표 2-9]	전국 시설별 공중화장실 현황(2019년 12월 기준) ……………	31
[표 2-10]	유형별 전국 공중화장실(2019년 12월 기준) ……………	32
[표 2-11]	시도별 공중화장실 유형 현황(2019년 12월 기준) ……………	33
[표 2-12]	공공시설 내 개방화장실 현황(2019년 12월 기준) ……………	34
[표 2-13]	공공시설 내 개방화장실 현황(2018년 9월 기준) ……………	35
[표 2-14]	개인소유물 시설 내 개방화장실 현황(2019년 12월 기준) …	35
[표 2-15]	개인소유물 시설 내 개방화장실 현황(2018년 9월 기준) …	36
[표 3-1]	광명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43
[표 3-2]	광명시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안) ……………	47
[표 3-3]	용인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49
[표 3-4]	용인시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안) ……………	52
[표 3-5]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54
[표 3-6]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안) ……………	59

CONTENTS

[표 3-7] 광명시 공중화장실 관리현황	61
[표 3-8] 용인시 공중화장실 관리현황	62
[표 3-9] 화성시 공중화장실 관리현황	63
[표 3-10] 광명시 민간 개방화장실 지정확대 사업 추진절차	64
[표 3-11] 광명시 개방화장실 지원사례	66
[표 3-12] 용인시 민간 개방화장실 지정확대 사업 추진절차	66
[표 3-13] 용인시 개방화장실 지원사례	67
[표 3-14] 화성시 민간 개방화장실 지정확대 사업 추진절차	68
[표 3-15] 화성시 개방화장실 지원사례	69
[표 3-16]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분석	70
[표 3-17] 지자체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관련 소관부처	72
[표 3-18] 「광주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5조 (설치기준)	74
[표 3-19] 안전한 화장실 관리업무 전담부서 존재유무 현황	75
[표 3-20] 지자체 개방화장실 지원사례 종합	76
[표 4-1] 응답자의 소속 지방 자치 단체(광역)	82
[표 4-2] 응답자의 성별 및 연령	83
[표 4-3] 응답자의 직급 및 공중화장실 관련 업무 수행기간	84
[표 4-4]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 여부	84
[표 4-5] 관련 법규의 항목이 실제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85
[표 4-6] 관련 법규가 운영되지 않는 이유	87
[표 4-7]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총괄 관리 담당부서의 주요 명칭 구분	89
[표 4-8] 협조부서 여부	90
[표 4-9]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관리 협조 부서 주요 명칭 구분	90
[표 4-10] 안전 화장실 설치 및 관리 업무 수행 여부	92
[표 4-11] 안전 화장실 설치 및 관리 업무 수행 부서	93

[표 4-12] 이원 업무구조에 대한 의견	95
[표 4-13] 법규 제3조 외 시설물 내의 공중화장실 관리방식	97
[표 4-14] 지자체의 공중화장실 유지 및 관리 방식(복수응답)	98
[표 4-15] 지자체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를 위한 외부위탁업체 명	99
[표 4-16] 관리인에 대한 정기적 교육 수행 여부	101
[표 4-17] 교육 담당 기관(교육 수행 시만 응답)	102
[표 4-18] 공중화장실 관리대장 기록 여부	103
[표 4-19] 공중화장실 업무 개선 필요 영역	104
[표 4-20] 업무 개선 영역에 대한 기타 의견	105
[표 4-21] 안전한 이용환경 확보 위한 조례제정 여부	106
[표 4-22] 안전한 이용환경 확보 위한 시책 여부	107
[표 4-23] 안전 위한 시책(복수응답)	108
[표 4-24] 안전 위해 시행 중인 기타 시책	110
[표 4-25] 안전확보 위한 필요 정책	111
[표 4-26] 공중화장실 안전 문제 중 개선 필요 영역	112
[표 4-27] 공중화장실 안전시설 설치 시 우선적인 고려가 필요한 장소	113
[표 4-28] 지자체 내 공중화장실 수급계획 및 관리방안 마련 여부	115
[표 4-29] 공중화장실 수급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중 중요 분야	116
[표 4-30] 현 공중화장실 공급의 수요 대비 수준	117
[표 4-31] 도심 내 공중화장실 수요 충족 위한 민간개방화장실 수급의 확대 필요 여부	118
[표 4-32] 민간개방화장실 소유자 대상 관리운영비 지원 여부 및 지원방식	120
[표 4-33] 민간 개방화장실 불법촬영기기 설치 자체검사 지원여부	121
[표 4-34] 현 민간개방화장실 지원 수준의 충분 여부 및 확대필요 시 지원 방식	123

CONTENTS

[표 4-35] 민간 개방화장실 소유주의 취소 이유	125
[표 4-36] 민간개방화장실 수급 확대 위한 필요 영역	126
[표 4-37] 민간 개방화장실 지정확대 사업 홍보 방식	128
[표 4-38] 공중화장실 관리 및 점검 위한 상시적 협력체계 구축 여부 ..	129
[표 4-39]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 여부	130
[표 4-40] 인터뷰 대상자 특징	133
[표 4-41] 참여계기 및 참여철회 이유	136
[표 4-42] 문제점 및 불편사항	137
[표 4-43] 문제점 및 불편사항	138
[표 4-44] 민간개방화장실 수급 및 지원에 대한 담당공무원과 수급주체간의 의견비교	146
[표 5-1] 뉴욕 주의 「Section 403」Minimum Plumbing Facilities ..	152
[표 5-2]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156
[표 5-3] 민간 개방화장실 지정요건 개선(안)	157
[표 5-4] 민간개방화장실 지정확대 사업 홍보방식 설문조사 결과 ..	158
[표 5-5] 인식개선 및 공공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한 기법	158
[표 5-6] 일원화 및 이원화된 업무구조상의 장·단점 비교분석 ..	159
[표 5-7] 협조부서 여부 설문조사 결과	159
[표 5-8] 공중화장실 주체별 역할	162
[표 5-9]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163
[표 5-10] 충남 공중화장실 자문위원회의 구성	164
[표 5-11] 충남 공중화장실 자문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	164
[표 5-12] 협조부서 여부 설문조사 결과	165
[표 5-13] 공중화장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정된 지자체 조례의 예 ..	166
[표 5-14] 취약지역 공중화장실의 안전문제 위해 지역커뮤니티를 활용하고 있는 호주의 사례	167

[표 5-15] 취약지역 공중화장실의 안전문제 위해 지역커뮤니티를 활용하고 있는 호주의 사례	168
[표 5-16] 유료화장실 산업육성을 위한 필요사항	169
[표 5-17] 유료화장실 운영에 대한 이탈리아 라치오 사례	169
[표 5-18] 유료화장실 운영에 대한 이탈리아 베니스 사례	170
[표 5-19] 시흥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	172
[표 5-20] 차등화 지원 사례	172
[표 5-21] 호주 멜버른 데어빈(Darebin)시의 Public Toilet Strategy ...	175
[표 5-22] 사회적경제조직과 민간기업과의 비교	176
[표 5-23] 일본의 명명권제도에 대한 해외사례	179

CONTENTS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흐름도	13
	[그림 2-1] 국민안심 공중화장실 선도사업 추진절차	28
	[그림 3-1] 공중화장실 관리 패러다임 변화	73
	[그림 4-1]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 여부	85
	[그림 4-2]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실제 운영 여부	86
	[그림 4-3]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총괄 관리 담당부서의 주요 명칭 구분 ..	89
	[그림 4-4]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관리 협조부서 주요 명칭 구분 ..	91
	[그림 4-5] 안전 화장실 설치 및 관리 업무 수행 여부	92
	[그림 4-6] 허가·설치와 관리의 이원화된 업무구조에 대한 의견 ..	95
	[그림 4-7]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규 제3조의 적용범위에 적용받지 않은 시설물 관리방식	97
	[그림 4-8] 지자체의 공중화장실 유지 및 관리방식	99
	[그림 4-9] 관리인에 대한 정기적 교육 수행 여부	101
	[그림 4-10] 관리인에 대한 교육 담당 기관	102
	[그림 4-11] 공중화장실 관리대장 기록 여부	103
	[그림 4-12] 공중화장실 관리대장 기록 여부	105
	[그림 4-13] 안전한 이용환경 확보 위한 조례제정 여부	106
	[그림 4-14] 안전한 이용환경 확보 위한 시책 여부	107
	[그림 4-15] 안전 위한 시책	109
	[그림 4-16] 안전확보 위한 필요 정책	111
	[그림 4-17] 공중화장실 안전 문제 중 개선 필요 영역	112
	[그림 4-18] 공중화장실 안전시설 설치 시 우선적인 고려가 필요한 장소 ..	114
	[그림 4-19] 지자체 내 공중화장실 수급계획 및 관리방안 마련 여부 ..	115
	[그림 4-20] 공중화장실 수급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중 중요 분야 ..	117
	[그림 4-21] 현 공중화장실 공급의 수요 대비 수준	118
	[그림 4-22] 도심 내 공중화장실 수요 충족 위한 민간개방화장실 수급의 확대 필요 여부	119

[그림 4-23] 민간개방화장실 소유자 대상 관리운영비 지원 여부	120
[그림 4-24] 민간개방화장실 소유자 대상 관리운영비 지원 방식	121
[그림 4-25] 민간 개방화장실 불법촬영기기 설치 자체검사 지원여부	122
[그림 4-26] 현 민간 개방화장실 지원 수준의 충분 여부	123
[그림 4-27] 확대시 지원방식	124
[그림 4-28] 현 민간 개방화장실 지원 수준의 충분 여부	125
[그림 4-29] 현 민간 개방화장실 지원 수준의 충분 여부	127
[그림 4-30] 현 민간 개방화장실 지원 수준의 충분 여부	129
[그림 4-31] 공중화장실 관리 및 점검 위한 상·하 협력체계 구축 여부	130
[그림 4-32]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 여부	131
[그림 5-1] 부서간 협력의 과정	160
[그림 5-2] 빅데이터 활용한 공중화장실 위치정보 시스템	170
[그림 5-3] 공중화장실 사용 관련 넛지 사례	179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1장

서론

KRILA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 공중화장실에 대한 시민들의 양적·질적 수요 증가추세

-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공중화장실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이용 및 위생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위생상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공중화장실에 관한 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공중화장실 정책은 지역 또는 입지에 따라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는 실정
- 시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공원, 하천 등 시설 이용이 많아지면서 공중화장실에 대한 시민들의 양적·질적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
 - 용인시 「공중화장실 수급계획 및 관리방안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시민들의 47.7%가 공중화장실수가 부족하다고 응답했으며, 광명시의 시민들의 47.3% 또한 공중화장실수가 부족하다고 응답
 - 화성시 「공중화장실 수급계획 및 관리방안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시민들의 67.3%가 공중화장실수가 부족하다고 응답했으며, 행정안전부 연구용역 「공중화장실 세부 설치기준 마련 및 활용방안 연구」에서 화장실협회 회원 211명을 대상으로 시행된 설문결과에서도 시민들의 49.8%가 공중화장실수가 부족하다고 응답

□ 공중화장실 수급확대 및 관리·운영방안에 대한 한계점 대두

- 공중화장실 수급확대에 대한 필요성은 증가추세이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한 조직, 예산, 법적 근거 등이 미흡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관련부처, 지자체, 협회, 이용자 등의 의견이 반영된 공중화장실 관리·운영방안을 도출하는 것 자체에 많은 제약과 한계점 존재
 - 사회변화에 따른 공중화장실 이용 현황 및 지역 여건이 반영된 공중화장실 운영방안 마련이 어려운 상황
 -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눈높이 및 욕구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근본적인 조직 인력 예산이 제한된 상태에서, 지금의 인원과 예산으로 공중화장실(민간개방화장실)의 운영·관리에 관련된 효율과 능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

□ 공중화장실 늘리겠다는 취지와는 다르게 민간의 개방화장실 문 닫는 추세

- 시민 편의를 위해 지정된 개방화장실 취소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
 - 개방형화장실 지정 신청을 하면 매달 5만~10만원 상당의 위생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이용객들의 이기주의 및 과도한 요구 등의 문제로 개방화장실 관리 문제가 대두되자 건물주들은 개방형화장실 신청을 취소하는 상황 증가
 - 이용객이 몰리는 대형 빌딩 화장실의 경우나 이용객이 드문 소형빌딩의 경우 모두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이 10만원 내외로 동일해 유도할 수 있는 장치가 부재하여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표 1-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개방화장실)

제9조(개방화장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1. 해당 시설물 또는 업무의 특성상 보안 또는 안전관리가 필요하여 일반 공중이 출입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시설물의 구조적 특성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방화장실을 설치한 시설물에는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방화장실의 지정 절차,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자료: <http://www.law.go.kr/>

□ 공중화장실 수급확대를 위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도 방안 모색 필요

- 민간의 자율적 참여 확대로 공중화장실 수급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 민간(건물주) 수급 주체자들이 개방화장실 사업 및 남녀 공용화장실 분리 사업, 층간 분리사업 등에 참여할 의향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의견조사가 필요하며 민간의 애로사항과 참여 동기에 대한 면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 도출 필요

[표 1-2] 개인소유물 시설 내 개방화장실 현황(2019년 12월 기준)

지역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개소	505	499	68	665	706	55	39	527
지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개소	175	127	69	23	142	151	74	64

자료: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내부자료

[표 1-3] 공공시설 내 개방화장실 현황(2019년 12월 기준)

지역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개소	25	16	10	5	5	5	1	31
지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개소	18	11	15	14	22	23	18	1

자료: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내부자료

□ **공중화장실 범죄 및 안전사고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새로운 문제점 대두**

- 최근 공중화장실에서의 범죄·안전사고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인해 공중화장실에 대한 새로운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정책변화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
 - 2016년 서울 강남역 인근 상가 화장실 ‘묻지마 살인사건’을 계기로 공중화장실 안전관리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
 - 공중화장실 내에서의 최근 5년간 11,178건의 범죄 발생
 - 2017년 설문결과(경기도, 1,562명) 남성 52%, 여성 70%가 공중화장실이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
 - 유흥가나 상가 등에 위치한 오래된 비주거용 건물의 민간화장실의 안전성은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에 있고, 공중화장실 몰카범죄에 대해서도 위험요소 급증추세
 -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을 뿐 아니라 공중화장실이 일탈과 범죄의 장소로서의 부정적 이미지가 커지고 있는 실정

[표 1-4] 공중화장실 범죄발생 현황(2017년 12월 기준)

	2014	2015	2016	2017
강력범죄	161	158	169	138
절도범죄	462	483	439	531
폭력범죄	216	203	232	211
지능범죄	138	315	379	448
기타범죄	818	822	831	753
계	1,795	1,981	2,050	2,061

자료: 경찰청

- **공중화장실 관리정책의 패러다임이 청결성(cleanliness)에서 안전성(safety) 중심으로 변화됨에 따라 개선된 관리운영방안 마련 필요**
 - 공중화장실 관리정책은 그동안 많이 개선되고 성과를 이루었던 편의성, 청결성 중심에서 안전성을 더 중요시하는 경향으로 본격적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비상벨을 설치하는 등 안전대책을 강구해 오고 있지만 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체계성과 효과성 있는 방안은 여전히 미흡
 - 공중화장실 내 범죄예방에 관련된 효과성 있는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토대로 공중화장실 관리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도출 필요하며,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추진될 수 있는 과제모색 필요

- **지자체 단위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지자체 단위에서 「공중화장실 구조와 조명 채색의 개선 등을 통한 범죄예방 디자인 기법 적용」, 「경찰관서나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한 비상벨 CCTV 설치 운영을 통한 비상대응 체계 구축」 등과 같은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나, 사업 초기집행단계로 국민의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사업이 활성화 되고 있지 않은 실정
 - 지자체가 효율적으로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세부추진전략 발굴에 대한 모색 필요

- **지방자치단체 공중화장실 관리의 이원화로 혼란 존재하며 공중화장실 관리의 사각지대 발생 시 책임질 총괄부서 부재**
 - 공중화장실 설치부서 및 관리부서의 이원화 등 총괄 관리체계의 부재로 많은 혼란 존재
 - 공중화장실 법령은 행정안전부 소관이지만,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공중화장실 설치하는 해당 시설 설치부서 및 사업장에서 담당하고, 공공시설 내 공

중화장실 관리업무는 환경위생과에서 담당하는 등 공중화장실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어 많은 혼란이 존재하며 공중화장실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경우 이를 책임질 총괄부서 부재

- 구체적으로 어린이공원 내의 공중화장실은 하수시설과에서 담당하며, 체육 시설, 공원 등의 공중화장실 관리는 시설관리과, 공공시설 내 공중화장실 관리업무는 환경위생과(또는 일반총무과) 개방화장실 신청은 행정과에서 담당
- 공중화장실 관리(소관부처) 조직체계 실태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 개선 방안 도출 필요

2. 연구목적

□ 공중화장실 공급·관리 측면에서의 법·제도 분석 후 시사점 도출

- 국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관련법규 및 상위계획 검토
 - 공중화장실 목적 유형 적용범위 검토
 -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사업 현황 검토
 -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설치 현황 검토
- 지자체차원에서 공중화장실 법·제도 분석
 - 지자체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련 조례입법 현황조사
 - 지자체 공중화장실 관련 사업 현황조사
 - 지자체 공중화장실 설치 현황조사

[표 1-5] 공중화장실의 유형

1. 공중화장실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
2. 개방화장실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화장실
3. 이동화장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
4. 간이화장실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
5. 유료화장실	화장실의 설치·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

- **지자체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도출 위한 공급·관리체계 측면에서의 실태조사 후 시사점 도출**
 - 현행 공중화장실의 적용 범위별 관리현황 및 실태 분석 통한 시사점 도출
 - 지자체 단위에서 공중화장실이 적용범위별로 어떻게 관리·운영되고 있는지와 공중화장실 적용범위별 담당 소관부처를 조사함으로써 관리주체 및 관리체계에 대한 실태조사 후 시사점 도출
 - 공중화장실의 운영·관리 소관부처 및 운영관리 상에서 나타나는 공공과 민간의 애로사항에 관련된 실태조사 후 시사점 도출
 - 공중화장실 및 민간개방화장실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는지의 유무 조사를 통한 시사점 도출

- **국내 공중화장실 공급·관리 측면에서의 공무원 건물주(개방화장실 수급주체) 대상 의견조사를 통해 다각적 측면에서의 합리적인 제도개선방안 도출**
 -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민간개방화장실) 공급·관리 측면에서 업무추진상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에 관련된 의견조사
 -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공무원 의견조사를 통해 개선된 운영·관리방안 모색
 - 안전관리에 역점을 두어야 할 사항(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안전관리 분야 정책) 및 민간화장실 대상 안전관리 공공정책 추진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 조사를 통하여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의 안전관리 개선방안 도출
 - 개방화장실을 확대하기 위하여 민간개방화장실 수급주체인 건물주를 대상으로 민간참여자의 애로사항 및 참여 동기에 관한 의견조사 실시 후 개선 필요사항 도출
 - 건물주 대상 민간개방화장실 지원 사업 참여 동기 조사를 통해 민간참여 유도 방안 도출

- 건물주 대상 민간남여공용화장실 분리사업 참여 동기 조사 통해 민간참여 유도방안 도출

안전하고 편리한 공중화장실 확충을 위한 개선방안 도출

- 민간 참여 유도 통한 개방화장실의 시설 확충 방안 모색
 - 현재 추진 중인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 모색
 -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유도를 위한 방안 모색
- 현재 운영 중인 공중화장실의 이용환경개선 방안 도출
 - 위생·청결·안전 관리의 측면에서 공중화장실의 이용환경개선 방안 탐색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 공간적 범위

- 본 연구는 공중화장실 운영관리의 측면에서 선도 지자체 사례를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여 공중화장실 사업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공중화장실 수급확대 및 운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으므로 연구의 공간적 범위를 공중화장실 운영관리 관련 선도 지자체로 함
- 이 밖의 국내 타도시를 연구의 공간적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음

□ 시간적 범위

- 국내 공중화장실 공급·관리 주체인 공무원, 개방화장실 수급주체(건물주)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설문·의견조사의 시간적 범위는 2020년을 기준연도로 함
- 전국 시·도별 공중화장실 설치현황 및 지자체 사례지역 공중화장실 유형별 설치현황조사의 시간적 범위는 2018년~2019년을 기준연도로 함

□ 내용적 범위

- 국내 공중화장실 현황 및 실태분석을 통한 전국 시도별 공중화장실 현황을 살펴보고, 지자체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공중화장실 유형별 설치현황 실태 분석
- 공중화장실 운영·지원관련 법·제도분석
- 공중화장실 공급·관리 주체대상 의견조사
- 현황 및 실태조사, 법제도분석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과 공중화장실 관련 주체별 의견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중화장실 개선방안 도출

2. 연구방법

문헌 및 자료조사

- 관련정책, 법률 등 문헌검토
 - 공중화장실 관련 정책, 법률, 정책보고서 등 선행연구 검토
 - 지자체 「공중화장실 수급계획 및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보고서 검토를 통한 실태조사
-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설치현황검토
 - 전국시설별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현황 자료 검토
 - 시도별 공중화장실 유형별 현황자료 검토

설문조사

- 공중화장실 공급·관리 측면에서의 주체별 문제점 및 애로사항 조사를 통한 시사점 도출
 - 지자체 공중화장실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 추진상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개선된 운영 관리방안 모색

심층인터뷰 등을 통한 정성적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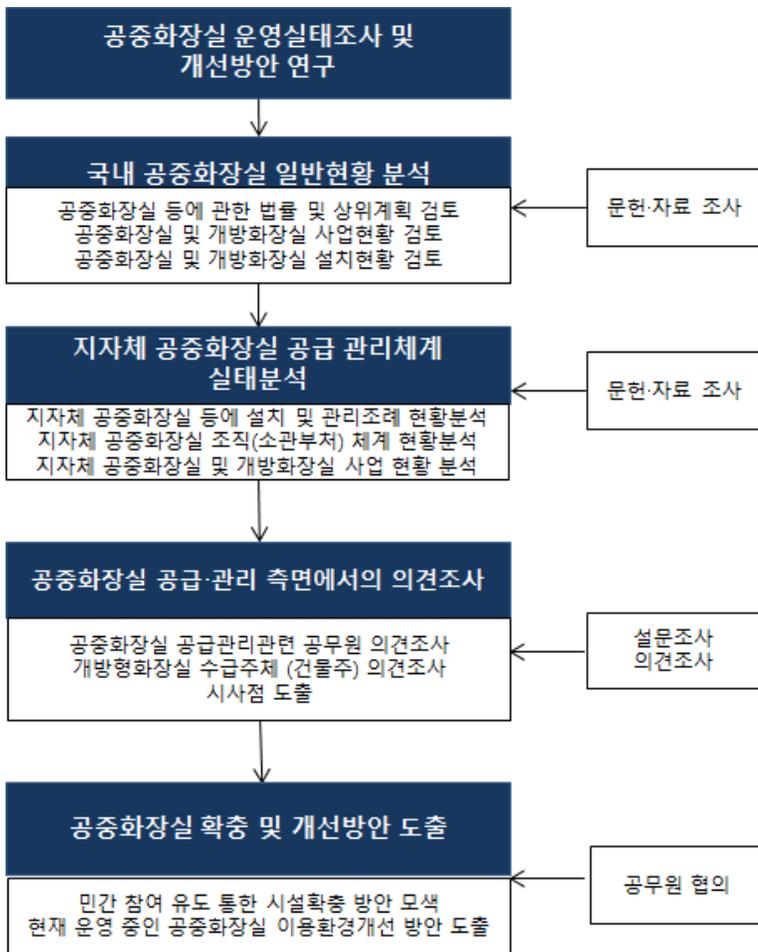
- 민간 개방화장실 수급주체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제 개방형 화장실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했던 이력이 있는 민간 개방화장실 수급주체를 찾아가 의견을 청취하는 심층인터뷰(Focused on In-depth Interview) 시행
 - 민간 개방화장실 수급주체 대상으로 인터뷰 진행을 통해 지원사업 참여 동기 및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조사 실시 후 시사점 도출

관계자 협의 및 관련 자문단 등을 활용한 관계자 워크숍 개최

- 관계자 및 전문가를 포함한 자문위원단 구성 및 자문회의 수시 개최

- 국내 공중화장실 관련 현황 및 실태,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대한 자문의견 수렴
- 협회, 관련공무원, 학계 등 관련자들이 참여하여 공중화장실 개선방안에 관한 토의

[그림 1-1] 연구흐름도



제2장

국내 공중화장실 일반현황

제1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관련법규 및 상우계획 검토

제2절 공중화장실 목적 유형 적용범위 검토

제3절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사업현황

제4절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설치현황

제2장

국내 공중화장실 일반현황

KRILA

제1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관련법규 및 상위계획 검토

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관련법규

□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관련법규

[표 2-1]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근거규정	세부 내용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함.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함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시설, 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함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의2 (어린이용 대·소변기의 설치 등)	① 공중화장실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어린이용 대·소변기 및 세면대를 설치하여야 함 ② 공중화장실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성 및 여성 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함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조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 및 영 별표 제14호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동화장실 또는 법 제2조 제3호의 2에 따른 간이화장실을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공중화장실등을 설치하는 경우를 말함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한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액화석유 가스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 중 신고체육시설업

근거규정	세부 내용
	의 시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로서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 66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4.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로서 남학생 또는 여학생만 재학하는 학교 5. 그 밖에 이용대상·규모와 이용자의 남녀 성별비율 등 설치 장소·시설의 여건을 고려하여 영 별표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기 어렵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조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중 공연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야외음악당 또는 야외극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4.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에 설치된 휴게시설(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로서 연평균 1일 편도 교통량이 5만대 이상인 고속국도 구간에 설치된 휴게시설 ② 제1항의 시설 또는 장소 중 이용자의 남녀 성별비율 등의 특성상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동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③ 법 제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음

2. 기타 관련법규

기타 관련법규

[표 2-2] 기타 관련 법규

근거규정	세부 내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5조 (석유판매업의 등록)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 <table border="1" data-bbox="379 1487 1115 1580"> <tr> <td data-bbox="379 1487 493 1580">공중 화장실</td> <td data-bbox="493 1487 1115 1580">1개 이상일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광역시장·특별</td> </tr> </table>	공중 화장실	1개 이상일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광역시장·특별
공중 화장실	1개 이상일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광역시장·특별		

근거규정	세부 내용		
	<p>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의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주유소</p> <p>(2) 주유소의 경계로부터 보행거리 20미터 이내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중화장실로 한정한다)의 출입문이 있는 주유소</p> <p>(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에 설치하여 선박에 주유하는 주유소(「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만 해당한다)</p>		
<p>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36조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종류 및 등록)</p>	<p>②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별표2] 와 같다.</p> <p>[별표2]</p> <table border="1" data-bbox="379 809 1115 999"> <tr> <td data-bbox="379 809 484 999">공중 화장실</td> <td data-bbox="484 809 1115 999">1개 이상일 것. 다만,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의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주유소이거나 주유소의 경계로부터 보행거리 20미터 이내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중화장실로 한정한다)의 출입문이 있는 주유소의 경우는 제외한다.</td> </tr> </table>	공중 화장실	1개 이상일 것. 다만,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의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주유소이거나 주유소의 경계로부터 보행거리 20미터 이내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중화장실로 한정한다)의 출입문이 있는 주유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공중 화장실	1개 이상일 것. 다만,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의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주유소이거나 주유소의 경계로부터 보행거리 20미터 이내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중화장실로 한정한다)의 출입문이 있는 주유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p>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시설 기준 등)</p>	<p>①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p> <p>[별표3]</p> <table border="1" data-bbox="379 1188 1115 1345"> <tr> <td data-bbox="379 1188 484 1345">편의 시설</td> <td data-bbox="484 1188 1115 1345">수용인원에 적합한 주차장(등록 체육시설업만 해당한다) 및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해당 체육시설이 다른 시설물과 같은 부지에 위치하거나 복합건물 내에 위치한 경우로서 그 다른 시설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 및 화장실이 있을 때에는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td> </tr> </table>	편의 시설	수용인원에 적합한 주차장(등록 체육시설업만 해당한다) 및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해당 체육시설이 다른 시설물과 같은 부지에 위치하거나 복합건물 내에 위치한 경우로서 그 다른 시설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 및 화장실이 있을 때에는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편의 시설	수용인원에 적합한 주차장(등록 체육시설업만 해당한다) 및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해당 체육시설이 다른 시설물과 같은 부지에 위치하거나 복합건물 내에 위치한 경우로서 그 다른 시설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 및 화장실이 있을 때에는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p>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4 (화장실)</p>	<p>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p>		

제2절 공중화장실 목적 유형 적용범위 검토

1. 공중화장실의 목적 및 유형

□ 공중화장실 목적

-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공중화장실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이용 및 위생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위생상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공중화장실의 유형

- 공중화장실의 유형
 - 우리나라의 공중화장실 설치·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음
 - 공중화장실법에서는 공용화장실의 유형을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 5가지로 법정 구분하고 있음

[표 2-3] 공중화장실의 유형

1. 공중화장실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
2. 개방화장실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화장실
3. 이동화장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
4. 간이화장실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
5. 유료화장실	화장실의 설치·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

- 개방화장실(제9조)은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 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음
- 단, 해당 시설물 또는 업무의 특성상 보안 또는 안전관리가 필요하여 일반 공중이 출입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시설물의 구조적 특성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외함
 - 또한 개방화장실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방화장실을 설치한 시설물에는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 이동화장실(제10조)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행사 등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경우 그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음
 - 간이화장실(제10조의2)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기, 수도, 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악, 해변, 하천 주변 등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라 산악, 해변, 하천 주변 등에 설치하는 간이화장실은 호우나 태풍 등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의 오염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유료화장실(제11조)은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하려는 법인 또는 개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 후 15일 이내에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유료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 화장실 설치기준, 관리방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들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함

2. 공중화장실의 적용범위 검토

공중화장실의 적용범위

- 동법 제 3조는 공중화장실의 적용범위를 17가지로 규정하고 있음

[표 2-4] 공중화장실의 적용범위

근거규정	적용범위	
	자연공원(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 규정)	1. “자연공원”이란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郡立公園) 및 지립공원을 말한다.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제10호 규정)	6. “관광지”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7. “관광단지”란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10. “지원시설”이란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관리·운영 및 기능 활성화에 필요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안팎의 시설을 말한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여객자동차터미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 규정)	5. “여객자동차터미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가 아닌 곳으로서 승합자동차를 정류(停留)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乘下車)시키기 위하여 제3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과 장소를 말하며, 그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가. 도로의 노면(路面) 나. 그 밖에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장소
	대규모점포·임시시장·상점가·전문상가단지(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제5호·제7호·제8호 규정)	3.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결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5. “임시시장”이란 다수(多數)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7. “상점가”란 일정 범위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근거규정	적용범위
	8. “전문상가단지”란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여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일정 지역에 점포 및 부대시설 등을 집단으로 설치하여 만든 상가단지를 말한다.
도시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규정)	3.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이하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한다)
휴게시설(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 규정)	가.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
역시설(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 규정)	가. 철도의 선로(선로에 부대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역시설(물류시설·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 및 철도운영을 위한 건축물·건축설비
역사 및 역 시설(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 규정)	가. 도시철도의 선로(線路), 역사(驛舍) 및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한다)
항만의 여객이용시설(항만법 제2조제1호 규정)	1. “항만”이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하선, 화물의 하역·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을 말한다.
유선 및 도선장(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3호 규정)	3. “유선장” 및 “도선장”이란 유선 및 도선(이하 “유·도선”이라 한다)을 안전하게 매어두고 승객이 승선·하선을 할 수 있게 한 시설과 승객 편의시설을 말한다.
주유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6호 규정)	6. “석유판매업”이란 석유 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규정	적용범위	
	<p>액화석유가스 충전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 규정)</p>	<p>“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이란 저장시설에 저장된 액화석유가스를 용기(容器)에 충전(배관을 통하여 다른 저장 탱크에 이송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p>
	<p>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규정)</p>	<p>1.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p>
	<p>공항시설(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 규정)</p>	<p>7. “공항시설”이란 공항구역에 있는 시설과 공항 구역 밖에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항공기의 이륙·착륙 및 항행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 나. 항공 여객 및 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p>
	<p>공연장(공연법 제2조제4호 규정)</p>	<p>4. “공연장”이란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공연법시행령 제1조의2(공연장의 범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p>
	<p>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p>	
<p>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p>	<p>① 법 제3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함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 : 집회장, 전시장, 동·식물원 3. 의료시설 : 병원, 격리병원 4. 교육연구시설 : 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5. 노유자시설 :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6. 수련시설 :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7. 묘지 관련 시설 : 화장시설, 봉안당,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속되는 건축물 8. 장례시설 : 장례식장</p>	

근거규정	적용범위
	<p>② 법 제3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함</p> <p>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 중 사무구획별로 화장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해당 사무구획에 해당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바닥면적의 합산 대상에서 제외함</p> <p>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p> <p>2. 삭제(2017.11.21.)</p> <p>3.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p>

제3절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사업현황

1. 공중화장실 사업현황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 사업

○ 근거 및 사업 목적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편의 증진 및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지정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관리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 3개 시민단체 한국화장실협회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 화장실문화시민연대와 공동으로 남녀화장실 분리 캠페인 화장실 실태조사 화장실 우수관리인 시상 등을 실시해 공중화장실 위생수준 향상 및 국민들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을 통해 외국 관광객 등에게 국가 이미지 제고

○ 2016~2017년 추진 성과 및 내용

-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 추진. 화장실 우수관리인 시상, 제18회 아름다운 화장실 大賞 공모 시상, 제7회 한국화장실 문화축전 등 6개 사업
- 공중화장실 국민편의 대책 추진. 2016 전국공중화장실 실태조사(조사기간: 2016.7.1.~11.31), 명절 행락철 등 공중화장실 청결 일제정비(55,207건), 화장실 바로쓰기 캠페인 전개(스티커 2만 매, 터미널 역사 휴게소 등)
-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 추진(3개 단체 공동), 전국 공중화장실 실태조사 및 평가(2월~5월), 공중화장실 우수관리인(청소미화원 등) 시상(5월)
 - 「제19회 아름다운 화장실 大賞」공모·시상(8~11월), 담당공무원 워크숍 및 심포지엄(6월, 11월), 제9회 한국화장실 문화 축전(9~11월) 등
 - 화장실 문화 개선을 위한 남녀화장실 분리 국민캠페인(스티커 등 전개 (연중))
 - 화장실 산업발전을 위한 포럼 개최(11월)
 - 설·추석·행락철 등 국민편의 대책 추진
 - 전국 공중화장실 일제정비 계획 시달(3회, 대상 55,207개소)
- 2017 아름다운화장실 조성사업(6개 사업) 세부추진계획 수립(2월) 및 추진: 연중

□ 2018년 휴지통 없는 깨끗한 화장실

- 그 동안 미관은 물론 악취와 해충을 동반했던 공중화장실 변기 옆 휴지통이 사라짐에 따라 사용한 휴지는 변기에 버리게 되며 다만 여성 화장실에는 위생용품을 버릴 수 있도록 수거함이 비치됨
- 화장실 이용자의 인권 존중과 사생활 보호
 - (청소 보수 알림) 여성이 남성화장실을, 혹은 남성이 여성화장실을 청소 또는 보수중일 때는 입구에 청소 또는 보수중임을 안내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줄임
 - (화장실은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설치) 앞으로 신축하거나 새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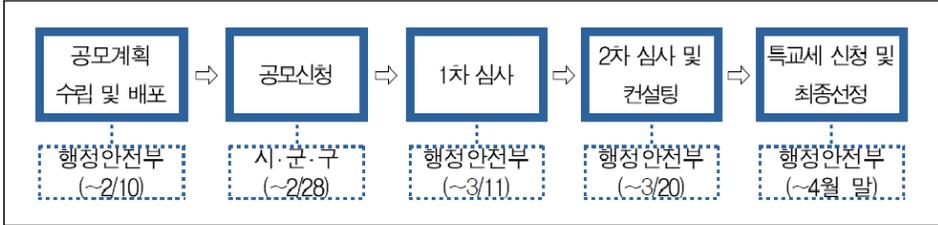
장(리모델링)하는 화장실은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여 인권이나 사생활 침해 예방을 도모하고 다만 기존 화장실은 입구 가림막 설치 등으로 개선하도록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등에 권장하고 있음

- 깨끗한 화장실을 위하여 이용자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 중요
 - 행정안전부는 “휴지통 없는 화장실 문화가 빠르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모두가 공감하고 실천하는 습관이 중요하며 휴지통 없는 화장실, 청소·보수중 안내, 내부가 안 보이는 화장실, 소변기 가림막 설치” 등 개선된 사항들이 공중화장실에 이어 민간 화장실에도 빠르게 확산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함

□ 국민안심 공중화장실 선도사업

- 추진 배경
 - 불법촬영 등 범죄발생으로부터 공중화장실의 안전개선과 함께 위생·청결 등 이용환경 개선에 대한 필요성 증대
 - ('19년 공중화장실 실태분석 조사 등) 위생상태 개선 요구가 가장 높게 (49.8%) 나타났으며, 안전한 화장실 조성을 위해서 청결한 관리(17.8%) 가장 중요하게 뽑음
- 주요 내용
 - 공중화장실 이용자 불편함 개선 및 위생·안전 위해요소 해소
 - 화장실 노후시설 개선, 범죄예방설계(CPTED)를 고려한 환경설계, 비상벨 및 CCTV 설치 등 안전설비 확충
 - 사업대상: 지자체 직접 수행가능한 사업으로 한정, 민간보조 금지
 - '20년 예산: 특별교부세 20억(예정), 보조율 최대70%(지방비30%)
 - ※ ('19년) 총11개 지자체 20억 지원
 - 추진방법: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공모 후 심사로 선정

[그림 2-1] 국민안심 공중화장실 선도사업 추진절차



출처: 행정안전부 내부자료

2. 개방화장실 사업현황

□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 추진 배경

- 남녀공용화장실 이용에 대한 국민의 불편이 높음에도, 민간화장실 중 다수 (70%)는 남녀공용으로 운영되어, 남녀분리 문화 확산 필요
- '17년 공중화장실 만족도조사 결과 남녀공용화장실이 불편하다는 응답이 83.9%였고, '18년 조사 결과 62%의 이용자가 공중화장실 이용시 범죄에 대해 불안을 느낀다고 응답

○ 사업 개요

- 근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중화장실법) 제16조(보조금의 지급)
- 예산/사업량: 국비 2,260백만원(보조율 25%)/452개소(변경 가능)
- 지원내용: 1개소 당 공사비용 50%(국비 25%, 지방비 25%), 10백만원 한도, 민간자부담 50%
- 지원대상: ① 개방화장실, ② 개방화장실 3년 이상 지정조건부 민간화장실, ③ 「공중화장실법」제3조에 해당하는 민간 공중화장실
- 세부사업내용: 남녀공용화장실 남녀화장실별 출입구 분리 또는 층별 분리, 남녀분리 화장실의 안전개선사업 시행

□ 민간 개방화장실 지정 지원사업

○ 추진 배경

- 도심지 내 부족한 공중화장실 수요 충족 및 화장실 이용자에 대한 접근 편리성 제공을 위하여 민간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운영
- 지자체의 예산지원을 통하여 민간화장실 소유자(관리자)에 대한 적극적인 화장실 개방화 유도 및 지속적인 개방화장실 운영유지 필요

○ 사업 개요

- 민간 개방화장실 지정 지원 사업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근거
- 지자체 단위에서는 개방화장실 지정요건 및 지원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각 지자체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지정하여 운영

[표 2-5]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개방화장실)

제9조(개방화장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1. 해당 시설물 또는 업무의 특성상 보안 또는 안전관리가 필요하여 일반 공중이 출입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시설물의 구조적 특성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방화장실을 설치한 시설물에는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방화장실의 지정 절차,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출처: <http://www.law.go.kr/>

[표 2-6] 개방화장실 지원 조례 현황

(단위: 개소)

대상 지자체 수	조례 유	조례 무	비고
228	222(97%)	6(3%)	-

※ 기초자치단체(226) + 세종·제주

- 예산: 민간 개방화장실 지정 지원사업 예산은 지방비(100%)로 투입되며, 물품 및 현금 지원 방법 및 지원금액은 시도별 재정여건에 따라 상이함

[표 2-7] 개방화장실 지원방식

(단위: 개소)

대상 지자체 수	물품	현금	물품+현금	지원없음
228	130(57%)	25(11%)	6(3%)	67(29%)

※ 기초자치단체(226) + 세종·제주

[표 2-8] 시도별 민간 개방화장실 지원사항

(단위: 개소, 천원)

구분	물품** (금액 환산 시)		현금		물품+현금		지원없음
서울 (25)*	868	(20)	1,300	(3)	1,058	(2)	-
부산 (16)	-		780	(16)	-		-
대구 (8)	275	(8)	-		-		-
인천 (10)	2,400	(10)	-		-		-
광주 (5)	600	(5)	-		-		-
대전 (5)	190	(5)	-		-		-
울산 (5)	650	(5)	-		-		-
세종 (1)	600	(1)	-		-		-
경기 (31)	1,318	(25)	2,584	(3)	1,610	(2)	1
강원 (18)	383	(12)	-		20,500	(1)	5
충북 (11)	1,131	(4)	-		-		7
충남 (15)	980	(5)	1,500	(2)	-		8
전북 (14)	200	(9)	-		-		5
전남 (22)	709	(6)	-		1,126	(1)	15
경북 (23)	200	(5)	-		-		18
경남 (18)	321	(9)	144	(1)	-		8
제주 (1)	200	(1)	-		-		-

* 기초 자치단체의 수

** 종류 : 편의위생용품(휴지, 비누, 종량제봉투, 방향제, 세정제 등)

※ 물품 및 현금 지원금액은 시도별 관할 시군구의 평균금액 이고, 재정여건에 따라 차이가 큼

※ 조사기간: 2019년9월5일~2019년9월27일

제4절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설치현황

1. 공중화장실 설치현황

□ 전국 시설별 공중화장실 현황

- 행정안전부 2019년 12월 기준, 전국 공중화장실 설치 개수는 총 52,327개임
 - 시설별 공중화장실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음
 - 시·도별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10,537개(20%), 서울이 5,354개(10%)로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으로는 경상북도 4,587개(9%), 경상남도 4,715(9%)개 순임
 - 공중화장실이 수도권에 집중 설치되어 있음
 - 시설별 공중화장실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공용시설이 18,811개로 약 36.1%를 차지하고 있으며 관광/체육시설이 9,996개(19.2%), 주유소/충전소가 4,700개(9.0%), 상업시설 4,138개(7.9%) 순으로 설치되어 있음

[표 2-9] 전국 시설별 공중화장실 현황(2019년 12월 기준)

구분	계	비율	공공용 시설	교통 시설	관광, 체육 시설	상업 시설	주유소, 충전소	기타
총계	52,327	100%	18,943	1,772	10,010	4,164	4,989	12,413
서울	5,354	10%	2,150	257	566	920	123	1,338
부산	2,172	4%	893	90	285	159	237	506
대구	2,221	4%	898	95	228	168	358	474
인천	2,548	5%	1,143	166	501	130	120	486
광주	1,290	2%	342	20	215	127	305	275
대전	1,855	4%	648	24	203	139	233	598
울산	1,414	3%	500	22	235	78	249	330
세종	470	1%	179	6	49	162	39	35
경기	10,537	20%	3,733	304	1,971	1,284	1,328	1,915
강원	3,340	6%	1,175	122	658	153	278	942

구분	계	비율	공공용 시설	교통 시설	관광, 체육 시설	상업 시설	주유소, 충전소	기타
충북	1,842	4%	758	69	394	59	228	332
충남	2,756	5%	926	96	657	122	144	811
전북	2,377	4%	839	64	565	98	217	594
전남	4,024	8%	1,394	159	884	197	376	1,014
경북	4,587	9%	1,622	159	1,106	160	393	1,147
경남	4,715	9%	1,609	113	1,265	153	361	1,214
제주	825	2%	134	6	228	55	0	402

출처: 행정안전부 내부자료(www.toiletdata.go.kr)

□ 공중화장실 유형별 현황

- 공중화장실 유형에 따른 전국 공중화장실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음
 - 공중화장실 유형에는 간이화장실, 개방화장실, 공중화장실, 이동화장실 등이 있음
 - 공중화장실이 44,716개(85.4%)로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개방화장실이 6,082개(11.6%), 간이화장실 1,499개(2.8%) 순으로 설치되어 있음

【표 2-10】 유형별 전국 공중화장실(2019년 12월 기준)

공중화장실		
유형	합계	비율(%)
간이화장실	1,499	2.8%
개방화장실	6,082	11.6%
공중화장실	44,716	85.4%
이동화장실	117	0.2%
유료화장실	1	0%
합계	52,327	100%

출처: 행정안전부 내부자료(www.toiletdata.go.kr)

□ 시도별 공중화장실 유형별 현황

- 유형별 공중화장실 현황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음
 - 간이화장실의 경우 강원도와 경북의 비율이 충북, 전남, 제주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이동화장실의 경우에는 강원도의 설치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공중화장실은 경기도가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2-11] 시도별 공중화장실 유형 현황(2019년 12월 기준)

구분	간이화장실		개방화장실		공중화장실		이동화장실		유료화장실	
	합계	비율 (%)	합계	비율 (%)	합계	비율 (%)	합계	비율 (%)	합계	비율 (%)
전국	1,499	2.6%	6,082	10.6%	44,716	86.6%	117	0.2%	0	0%
서울	0	0%	541	10.1%	4,813	%	0	0%	0	0%
부산	62	2.8%	951	44.0%	1,159	53.2%	0	0%	0	0%
대구	8	0.3%	643	29.0%	1,569	70.7%	1	0%	0	0%
인천	1	0%	131	5.1%	2,402	94.4%	13	0.5%	0	0%
광주	0	0%	1,013	78.5%	277	21.5%	0	0%	0	0%
대전	0	0%	781	42.1%	1,073	57.8%	1	0.1%	0	0%
울산	1	0.1%	58	4.1%	1,354	95.8%	1	0.1%	0	0%
세종	22	4.6%	61	12.9%	387	82.5%	0	0%	0	0%
경기	38	0.4%	702	7.0%	9,785	92.8%	12	0.2%	0	0%
강원	342	10.2%	239	7.2%	2,700	80.8%	59	1.8%	0	0%
충북	147	8.0%	242	13.1%	1,542	78.8%	1	0.1%	0	0%
충남	83	3.0%	95	3.4%	2,577	93.5%	1	0%	0	0%
전북	31	1.3%	30	1.3%	2,314	97.3%	2	0.1%	0	0%
전남	80	2.0%	240	6.0%	3,696	91.8%	8	0.2%	0	0%
경북	500	11.0%	209	4.5%	3,865	84.3%	13	0.2%	0	0%
경남	148	3.1%	81	1.7%	4,483	95.1%	3	0.1%	0	0%
제주	36	4.4%	65	7.9%	720	87.5%	2	0.1%	0	0%

출처: 행정안전부 내부자료

2. 개방화장실 설치현황

1) 공공시설 내 개방화장실 시도별 현황

공공시설 내 개방화장실 시도별 현황

- 2019년 공공시설 내 개방화장실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음
 - 화장실 소유는 크게 공공시설 혹은 지자체, 민간으로 구분 할 수 있음
 - 2019년 공공시설 내 개방화장실은 총 337개소이며 광주가 132개소, 부산이 93개소, 서울이 25개소 순으로 높았음
 - 반면 울산, 세종, 경남, 제주는 개방형 화장실은 1개로 타 지역에 비해 부족한 실정임

[표 2-12] 공공시설 내 개방화장실 현황(2019년 12월 기준)

지역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개소	25	93	10	132	17	1	1	12
지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개소	6	2	3	2	13	18	1	1

출처: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내부자료

공공시설 내 개방화장실 수급 변화추이 (2018-2019)

- 다음 표는 2018년 9월 기준의 공공시설 내 개방형 화장실 현황임
 - 2018년 9월 기준 공공시설 내 개방형 화장실은 644개소임
 - 2018년 9월(644개소)에서 2019년 12월(337개소)까지 공공시설 내 개방형 화장실은 307개소가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음
 - 특히 충북의 경우 2018년 109개소에서 2019년 2개소로 극감하였음
 - 반면 2018년에 비해 공공시설 내 개방형 화장실은 광주가 전년도 대비 63개소로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으며 인천은 10개소, 경북은 8개소, 서울

7개소 순으로 증가함. 또한 세종시의 경우 공공시설 내 개방형 화장실이 없었으나 2019년 1개소가 신설되었음

[표 2-13] 공공시설 내 개방화장실 현황(2018년 9월 기준)

지역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개소	18	160	0	79	27	6	0	76
지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개소	50	109	12	2	88	10	6	1

출처: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내부자료

2) 개인소유물 시설 내 개방화장실 시도별 현황

개인소유물 시설 개방화장실 시도별 현황

- 다음 표는 2019년 개인소유물 내 개방형화장실 현황을 나타낸 표로서 2019년 12월 기준 개인소유물 시설 내 개방형 화장실은 총 3,889개소가 설치되었음
 - 대전이 706개소로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다음으로 광주가 665개소, 경기도가 527개, 서울이 505개소로 설치 되어있음
 - 전북이 23개소로 가장 적게 설치 되어있음을 확인 할 수 있음

[표 2-14] 개인소유물 시설 내 개방화장실 현황(2019년 12월 기준)

지역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개소	505	499	68	665	706	55	39	527
지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개소	175	127	69	23	142	151	74	64

출처: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내부자료

□ **개인소유물 시설 내 개방화장실 수급 변화추이 (2018-2019)**

- 아래의 표는 2018년 개인소유물 시설 내 개방형 화장실 변화추이를 나타낸 표로서, 2018년 9월 기준 개인소유물 시설 내 개방형 화장실은 총 2,286개소가 설치되었음
- 대전이 448개로 가장 많이 설치되었으며 다음으로 서울이 352개소, 경기도가 258개소가 설치되었음. 또한 세종시의 경우는 개인소유물 시설 내 개방형화장실이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았음

[표 2-15] 개인소유물 시설 내 개방화장실 현황(2018년 9월 기준)

지역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개소	352	219	42	326	448	50	0	258
지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개소	171	87	55	2	143	44	25	64

출처: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내부자료

- 2018년에 비해 2019년의 개인소유물 시설 내 개방형 화장실은 1,603개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의 경우 2018년 대비 2019년 개인소유물 시설 내 개방화장실이 269개소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 설치되었으며 부산이 280개, 대전이 258개 순으로 나타남
- 특히 세종시의 경우 2018년 개인소유물 시설 내 개방화장실은 없었으나 2019년 39개소 설치가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개인소유물 시설 내 개방형 화장실은 모두 증가하였음

제3장

지자체 공중화장실 공급·관리체계 실태분석

제1절 공중화장실 수급에 관한 기본방침

제2절 공중화장실 적용범위별 관리현황

제3절 시사점 도출

제3장 지자체 공중화장실 공급·관리체계 실태분석

제1절 공중화장실 수급에 관한 기본방침

1. 분석대상(지자체) 선정기준

□ 선정기준

- 모든 지자체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공중화장실의 설치 또는 개방화장실의 지정 등 화장실 수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근거에 따라서 관련된 수급계획을 마련해야 함
- 본 연구는 분석대상(지자체)은 이용현황 및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가장 최근에 [공중화장실 수급계획 및 관리방안 대한 연구용역]을 완료한 지역을 선도 지자체로 선정
 - 공중화장실 관련 정책의 수립 시 고려할 수 있는 정책 목표 및 전략의 설정, 법적 제도적 지원방안에 관련된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지자체를 선도 지역으로 설정하고 이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함

□ 분석대상 선정

-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2018년 [2023 공중화장실 수급 계획 및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완료한 광명시, 용인시, 화성시를 공중화장실 운영·관리에 대한 선도지자체로 선정하여 분석대상으로 설정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에 관련된 사업 현황 및 관리운영에 관련된 소관부처의 조직체계 실태를 분석하여 선도지자체의 수준을 진단하고, 이를 통해 공중화장실의 수급확대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의 추진방향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지자체 공중화장실 수급에 관한 기본방침

1) 광명시

□ 광명시 기본방침

- 광명시는 공원, 관광지, 문화공간 등에 공중화장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에 주력
 - 광명시는 도덕산, 구름산, 안양천 등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공중화장실 집중 설치 및 관리에 집중
- 유동인구 밀집지역 중심으로 개방화장실 공급지정 확대에 주력
 - 공중화장실을 지속적으로 신축 보급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유동인구 밀집지역에 개방화장실 지정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지원을 통해 이용자의 편리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주력
- 공중화장실 청결성 유지에 집중
 -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수하고, 휴지통 없는 화장실 등의 정책 사업을 홍보하여 쾌적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에 집중

□ 광명시 공중화장실 등의 수급에 관한 장기전망

- 수도권 관광도시의 품격에 맞는 선진문화 화장실로서의 이미지 제고 강화
 - 공중화장실의 친환경적 웰빙화, 고급화 추세
 - 휴식과 사색의 공간이 있는 문화 화장실로 변화 전망
- 여가활동 인구의 증가 및 주민 의식 수준의 변화에 따른 공중화장실의 양적 질적 확대
- 성별에 따른 이용자 수요욕구 변화를 파악하고, 만족도 조사를 통해 시민 의견을 반영한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2) 용인시

□ 용인시 기본방침

- 공중화장실 등의 적시적소 공급 및 노후·불편 시설의 개선
 - 주5일 근무의 정착에 따른 여가활동 인구의 증가와 주민 의식 수준의 향상에 걸맞은 공중화장실의 양적 질적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공원, 산책로, 기타 문화 공간 등에 고품격 공중화장실 설치 및 노후 화장실 시설 개선
 - 공중화장실 관리기준 준수하여 쾌적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유지
- 안전 확보와 청결 유지 관리를 통해 100만 대도시 용인시의 품격제고
 - 버스·택시 정류장·환승장 이용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유동인구 밀집지역 주변으로 개방화장실 지정확대 및 지속적인 예산지원
 - 공중화장실 이용 불안 해소를 위한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확대와 방범시설 확충
-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선진 화장실 문화 정착에 기여
 - 매년 시민만족도 조사를 통해 이용자들의 건의 개선요구 사항을 수렴하고 홍보활동을 통해 시민의식 향상

□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수급에 관한 장기전망

- 유동인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개방화장실을 확충
 - 공중화장실 부족량은 2019년 기준 64개소에서 2023년 123개로 증가가 예상되지만 향후 공공시설물의 공중화장실만으로는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여 유동인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개방화장실 확충 계획
 - 수급 계획상 매년 10개소의 개방화장실 지정을 목표로 운영
 - 예산지원을 통하여 민간화장실 소유자에 대한 적극적인 화장실 개방화 유도 및 지속적인 개방화장실 운영 유지
- 도시공원, 산책로 등에 공중화장실 추가 설치를 계획하고 있음

3) 화성시

□ 화성시 기본방침

- 서해안을 중심으로 제부도, 전곡항, 궁평항, 화성방조제 등의 관광지가 조성되어 있는 곳을 중심으로 고품격 문화 화장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에 주력
 - 뿐만 아니라 용인릉, 공룡알화석산지, 용주사 제암리 등 많은 관광지가 조성되어 있는 지역의 공중화장실 수급확대에 주력
 - 노후 화장실을 중심으로 개선사업 추진하며 특히 재래시장 위주의 노후 화장실 개선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
- 공중화장실을 지속적으로 신축 보급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유동인구 밀집지역의 상가 및 건물에 개방화장실 지정확대 및 지속적인 예산지원으로 개방화장실을 공급으로 이용자에 대한 편리성 확보
 - 인구밀집도가 높은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개방화장실을 중점적으로 확충
 - 도심지의 빌딩을 활용한 개방화장실 지정확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
-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수하고, 휴지통 없는 화장실 등의 정책사업 홍보를 실시하여 쾌적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에 힘써 아름다운 문화 정착에 기여

□ 화성시 공중화장실 등의 수급에 관한 장기전망

- 선진문화 화장실로서의 이미지 제고 강화
 - 공중화장실의 친환경적 웰빙화, 고급화 추세
 - 휴식과 사색의 공간이 있는 문화 화장실로 변화 전망
- 여가활동 인구의 증가 및 주민 의식 수준의 변화에 따른 공중화장실의 양적 질적 확대
 - 2021년 15개에서 2023년 86개의 공중화장실의 누적부족분이 예상됨
 - 생활권별로 다른 방식으로의 접근을 토대로 공중화장실 수급계획 수립

제2절 공중화장실 적용범위별 관리현황

1.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현황분석

1) 광명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개요

- 「광명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는 2004년 12월 30일에 제정되었으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 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
- 「광명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는 광명시청 환경수도사업소 자원순환과에서 담당

【표 3-1】 광명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근거규정	적용범위 및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및 제

근거규정	적용범위 및 내용	
		4항의 규정과 같은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제2장 시설의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기준)	<p>「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 안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6.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에는 시민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응급용 경고음 발생기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예산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위탁관리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 (관리인의교육)	① 시장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

근거규정	적용범위 및 내용	
		<p>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p>
	<p>제8조 (편의용품의 비치·제공)</p>	<p>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p>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p>	<p>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p>
<p>제3장 개방화장실 지정·운영</p>	<p>제11조 (화장실의 개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p>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시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 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p>제13조 (편의·위생용품 등의 지원)</p>	<p>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4장 이동화장실 설치·관리</p>	<p>제14조 (이동화장실의 설치)</p>	<p>시장은 관할 구역안에서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p>

근거규정	적용범위 및 내용	
		<p>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p>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서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p>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p>
제5장 유료화장실 신고	제16조 (유료화장실의 신고)	<p>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p>

근거규정	적용범위 및 내용	
		<p>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22></p> <p>③ 시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제17조 (준수사항)	<p>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기타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6장 과태료의 부과	제1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센터(<http://www.law.go.kr/>)

□ 내용분석

- 광명시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아래의 조건을 검토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를 결정함

[표 3-2] 광명시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안)

구분	내용
접근성	<p>통행량이 많고 찾기 쉬우며 접근이 용이한 곳</p> <p>유동인구가 많은 지역</p> <p>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신체가 불편한 사람이 이용하기 쉬운 위치</p>

구분	내용
개발성	등산로 문화재지역 등: 전기시설 등의 인입, 오수처리시설 설치 도심지역: 상하수도관 등의 지하매설
보전성	주변 시설물이나 자연환경의 훼손 정도
주변 환경성	도보권(500m)이내 주택가, 정류장, 근린시설 등의 입지
복합기능	휴식공간, 공익시설 등을 접목시켜 활성화된 역할 부여
토지 확보성	사유지 국유지여부
경제성	개발비용의 적정성 유지관리비의 적정성
민원 수용성	민원발생 횟수가 높은 지역
지역 균형성	인근 3km 이내에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등의 시설의 설치여부
관리 용이성	청소 등의 유지관리가 용이할 것 관리인 및 차량진입이 용이할 것

출처: 광명시 공중화장실 수급계획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

- 공중화장실 신축의 기본은 통행량이 많고 찾기 쉬우며 접근하기 용이한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공중화장실이 신축될 장소의 주변 환경을 파악하고 그 주변 환경과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 주위경관 및 기존 건물이미지를 깨뜨리지 않도록 설치하고 있음
- 자연환경에 영향을 받는 등산로 공원 문화재 지역은 상하수도관 및 전기시설 등의 인입에 대비한 주변 현황 파악과 함께 화장실 특성상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를 감안하고 도심지의 경우 상하수도관 통신관 가스관 지하철구조물 등 지하매설물의 현황 파악을 중요시 함
- 해당 토지가 사유지나 국유지일 경우 토지확보가 용이하며 토지수용을 포함한 개발비용의 적정성을 따져 경제성을 검토하고 있음
- 여러 기준에서 적합하지 않더라도 민원발생이 높은 지역이거나 인근에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이 전무하여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서 떨어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민원에 대한 수용과 지역별 균형의 측면에서 설치를 고려하고 있음

- 화장실의 역할 뿐만 아니라 위치에 따라 관광안내소 만남의 장소 등의 공익시설을 접목 시킨 복합기능을 하는 화장실 설치를 고려하고 있음

2) 용인시

□ 개요

- 「용인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는 2005년 10월 5일에 제정되었으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
 - 「용인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는 용인시청 하수도 사업소 하수시 설과에서 담당

[표 3-3] 용인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근거규정	적용범위 및 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하며, 최적의 시설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대상 관광지 등)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 이란 총면적 1만9천제곱미터 이상인 관광지와 총면적 50만제곱미터 이상인 관광단지 및 그 지원시설을 말한다.
제4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비고 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중화장실등을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청소·관리차량 등의 접근이 유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중화장실등 안에 청소·관리용품 보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3. 점검사항을 나타내는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근거규정	적용범위 및 내용
	4. 위치 안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식표시장치 및 안내선·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5. 위급상황 대비 또는 범죄예방을 위하여 호출기(비상벨) 등 안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3년마다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시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고 제공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손세정제
제7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시설현황과 유지·관리상황 등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화장실의 개방)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등은 항상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 가능한 시간으로 개방 시간을 한정할 수 있다. 1. 옥외에 설치한 공중화장실로서 동절기 수도 등 시설에 동파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사진·동영상 촬영, 기물파손·도난·방화 등 반사회적 사건이 잦은 경우 3. 청소년 탈선 및 노숙인 기거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옥내에 설치한 공중화장실로서 시설물의 보안 또는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에 해당하거나 수리·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폐쇄할 수 있다.
제9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영으로 정한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화장실을 해당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상 1층에 위치하며 청소년유해업소와 근접하지 않을 것 2. 출입구는 남자용과 여자용이 따로 설치되어 있을 것 3. 영업장 또는 매장을 통하지 않고 출입 가능할 것 4. 여성화장실의 변기 수가 2개 이상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협의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개방화장실 협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개방화장실 협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 화장실을 평가한 후 개방화장실 지정여부 등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근거규정	적용범위 및 내용
	<p>④ 시장은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p>
제10조(개방화장실의 지정 취소)	<p>시장은 제9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급 받은 편의용품을 갖추어 놓지 않거나 화장실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을 경우 2. 고의로 개방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개방화장실 표지를 철거한 경우 3. 휴·폐업 또는 해당 화장실을 철거한 경우 4. 시설물 소유자나 관리자의 지정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제11조(편의용품 등 지원)	<p>①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의 소유·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편의용품·청소용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휴지걸이, 옷걸이, 손건조기, 소지품 선반, 방향제 분사기 등 2. 화장지, 손세정제 등 3. 청소용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소독약품, 종량제봉투 등 <p>② 시장은 개방화장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편의용품 및 청소용품의 수량을 가감하거나 품목을 변경하여 지급할 수 있다.</p>
제12조(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p>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인원수와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하여 남성·여성화장실을 적합한 수와 비율로 설치할 것 2. 남성용과 여성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3. 악취를 원활히 배출하기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5.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 <p>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결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 2. 청소, 환기, 소독, 제초·예초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할 것 3. 분뇨는 기온, 저장용량 등을 고려하여 적기에 수집·운반할 것 4. 행사 등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화장실을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복구할 것
제13조(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p>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은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준용한다.</p>
제14조(유료화장실의 신고)	<p>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근거규정	적용범위 및 내용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 설치·운영을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상호(명칭)·대표자 및 사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날의 15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적합한지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5조(금지행위)	법 제14조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금지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중화장실등 안에서 숙식을 하는 행위 2. 공중화장실등 안에서 세탁 또는 세척을 하는 행위 3. 변기를 고의적으로 막히게 하거나 더럽히는 행위 4. 공중화장실등에 분변·토사물 등 오물을 방치하는 행위 5. 전기나 수도를 공중화장실등의 이용 목적 외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제16조(공중화장실등 관리업무 위탁)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등의 관리업무를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용인도시공사 2.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 등의 청결유지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자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내용분석

- 용인시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아래의 조건을 검토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를 결정함

【표 3-4】 용인시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안)

구분	내용	
수요	화장실 사용자가 100명/1일 이상 예상되는 곳	
입지	개발가능	건축행위가 가능한 국공유지로 유실 범람으로부터 안전한 곳
	접근성	장애인 노이 임산부 등 신체가 불편한 사람이 이용하기 쉬운 위치

구분	내용	
	환경영향	주변 시설물이나 자연환경의 훼손 정도
	지역균형	도보기준 인근 0.5km 이내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설치여부
	유지관리	청소 등 유지관리가 용이한 위치
	안전성	청소년 탈선의 우려가 없는곳
	수세식화장실	전기 상하수도 시설 가능 여부
규모	종류	도시지역의 경우 공중화장실 설치 고려
		등산로 산책로 문화재지역 등은 간이화장실 설치 고려
	변기 수	여자용 대변기 최소 2개 이상
		예상 이용자가 100명/1일 증가할 때마다 여성변기 1개 추가
장애인변기	남녀구분(필수), 간이화장실(선택)	
경제성	개발(설치)비용 및 유지관리비의 적정 여부	

출처: 용인시 공중화장실 수급계획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

- 공중화장실은 통행량이 많고 찾기가 쉬우며 접근하기 용이한 곳에 위치하여야 하고 공중화장실이 신축될 장소의 주변 환경을 파악하여 그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할 수 있는 디자인 설계 권장
- 대상지 주변 도보권 이내 주택가 정류장 근린시설 휴식 공간 등을 고려하여 화장실의 역할뿐만 아니라 만남의 장소 등 복합기능을 하는 화장실이 되도록 디자인 선정에 신중
- 해당 토지가 사유지인 경우 토지사용승낙 또는 토지수용을 포함한 개발비용의 적정성을 따져 검토 실시함
- 여러 기준에서 적합하지 않더라도 민원발생이 높은 지역이거나 인근에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이 전무한 지역에 대해서는 민원해소와 지역균형의 측면에서 설치를 고려하고 있음

3) 화성시

□ 개요

-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는 2005년 2월 11일에 제정되었으며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는 화성시청 맑은물사업소 하수과에서 담당

[표 3-5]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근거규정	적용범위 및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① 삭제 (2017. 8. 4)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중 시·군 또는 군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관광진흥법」제50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12. 11. 15) ③ 법 제3조제9호에서 “「항만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의 여객이용시설등으로서 시·군 또는 구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 11. 15)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근거규정	적용범위 및 내용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4. 항만중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제2장 시설의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위생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6. 3. 18)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6.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화장실 내부에 비상 호출기를 설치하거나 화장실 밖에 CCTV를 설치 할 수 있다.
	제6조(위탁관리 등)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 (관리인의교육)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6조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7)	

근거규정	적용범위 및 내용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8조의2(여성위생용품의 비치·제공 등)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기관이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중화장실에 여성위생용품을 비치하여 공중화장실 이용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화성시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화성시 산하 지방공기업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성시 산하기관 ②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위치한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그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여성위생용품 및 이를 제공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대중교통시설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이용 시설물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유동인구, 지역균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근거규정	적용범위 및 내용	
		4. 청소 등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 입구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이용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 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 상황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3장 개방화장실 지정·운영	제11조 (화장실의 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시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미만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면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3조 (편의·위생용품 등의 지원)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의2(거점형 개방화장실의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개방화장실 중, 지역균형 및 인근의 공중화장실 수요 등을 고려하여 거점형 개방화장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개방화장실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거점형 개방화장실을 직접 관리·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관리·운영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4장 이동화장실 설치·관리	제14조 (이동화장실의 설치)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근거규정	적용범위 및 내용	
		<p>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p>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p>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p>
제5장 유료화장실 신고	제16조 (유료화장실의 신고)	<p>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p>

근거규정	적용범위 및 내용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장 과태료의 부과	제1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장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 1호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센터(<http://www.law.go.kr/>)

□ 내용분석

- 화성시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등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아래의 조건을 검토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를 결정함

[표 3-6]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안)

구분	내용
접근성	통행량이 많고 찾기 쉬우며 접근이 용이한 곳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신체가 불편한 사람이 이용하기 쉬운 위치
개방성	등산로 문화재재역 등: 전기시설 등의 인입, 오수처리시설 설치 도심지역: 상하수도관 등의 지하매설
보전성	주변 시설물이나 자연환경의 훼손 정도
주변 환경성	도보권(500m)이내 주택가, 정류장, 근린시설 등의 입지
복합기능	휴식공간, 공익시설 등을 접목시켜 활성화된 역할 부여
토지 확보성	사유지 국유지역부
경제성	개발비용의 적정성 유지관리비의 적정성
민원 수용성	민원발생 횟수가 높은 지역
지역 균형성	인근 3km 이내에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등의 시설의 설치여부
관리 용이성	청소 등의 유지관리가 용이할 것 관리인 및 차량진입이 용이할 것

출처: 화성시 공중화장실 수급계획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

- 공중화장실 신축의 기본은 통행량이 많고 찾기 쉬우며 접근하기 용이한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공중화장실이 신축될 장소의 주변 환경을 파악하고 그 주변 환경과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 주위경관 및 기존 건물이미지를 깨뜨리지 않는 적정선에서 공중화장실 설치를 권장하고 있음

2. 공중화장실 관리 조직체계 현황분석

1) 광명시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허가·설치·관리 관련 조직체계

- 공중화장실에 관련된 허가·설치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공중화장실 관리는 건축물 용도별 개별법을 담당하는 소관부서에 의해 각각 운영되어짐
 - 예를 들어, 공원 내 공중화장실 설치는 「자연공원법 제2조」에 근거한 적용범위를 따르고 있으며 자연공원법을 담당하는 광명시 '공원녹지과'에서 공원 내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련된 모든 업무 수행
- 개방화장실에 대한 통합적인 시설관리 및 운영은 환경수도사업소 자원순환과 자원시설팀에서 총괄
 - 자원시설팀에서는 공중화장실 수급계획 수립 및 시행, 개방화장실 지정 및 지도점검, 청소 대행업체 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
 - 담당인력: 환경수도사업소 자원순환과 자원시설팀은 팀장 1명 주무관 3명으로 구성되어 개방화장실 지정 및 관리에 관련된 업무수행
 - 타부서에서 공중화장실 설치에 관련된 업무협조 요청 시 관련업무 수행
- 공중화장실 건축물 용도별 개별법에 적용받지 않은 시설인 재래시장 내 공중화장실, 산책로 내 공중화장실 등은 기업경제과에서 담당하며, 공중화장실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파악 관련 업무는 재해방재과에서 담당

□ 공중화장실 관리현황

- 광명시의 경우 공중화장실 관리업무는 다수의 실·과, 주민센터, 기타공공기관에서 담당시설의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음
 - 대부분 직접관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위탁관리¹⁾ 되는 사례도 존재

[표 3-7] 광명시 공중화장실 관리현황

구분	화장실수	관리방법	비고		
시청	회계과	1	직접관리	시설(시청)포함	
	시민보건과	1	직접관리	시설(시청)포함	
	평생학습원	1	직접관리	시설(평생학습원)포함	
	글로벌관광과	4	직접관리	시설(광명동굴)포함	
	기업경제과	4	직접관리	시설(재래시장)포함	
	사회복지과	6	직접관리	시설(복지관 및 요양센터) 포함	
	공원녹지과	31	위탁관리	공원	시설(공원)포함
				산책로 등	시설 미포함
재해방재과	7	위탁관리	하천변 시설 미포함		

2) 용인시

□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허가·설치·관리 관련 조직체계

- 공중화장실에 관련된 허가·설치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공중화장실 관리는 건축물 용도별 개별법을 담당하는 소관부서에 의해 각각 관리·운영되어짐
 - 용인시의 공중화장실은 주로 하수시설과, 공원녹지과, 체육진흥과 농업기술센터 및 각 구청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음
- 개방화장실에 대한 통합적인 시설관리 및 운영은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과에서 총괄

1) 우리나라 지방자치법 제 104조 제3항은 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업무 가운데서 일부를 사인인 법인이거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 용인시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과에서는 공중화장실 수급계획 수립 및 시행, 개방화장실 지정 및 지도점검, 청소 대행업체 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
-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과의 담당인력은 팀장 1명 주무관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방화장실 지정 및 관리에 관련된 총괄 업무수행
- 타부서에서 공중화장실 설치에 관련된 업무협조 요청 시 관련업무 수행

□ 공중화장실 관리현황

- 용인시의 공중화장실 관리방식은 위탁 및 직영으로 상이하고 대부분의 시설에서 화장실 관리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시설관리 업무에 화장실 관리가 포함되어 있는 상황

[표 3-8] 용인시 공중화장실 관리현황

구분		관리개수	관리방법	비고
용인시청	하수시설과	41개소	용인도시공사 위탁	-
	공원녹지과	47개소	직영	-
	체육진흥과	8개소	직영	-
	농업기술센터	10개소	직영	-
처인구청	자치행정과	5개소	직영	상황에 따라 시에서 공공근로 지원
기흥구청	자치행정과	5개소	직영	상황에 따라 시에서 공공근로 지원
	산업환경과	1개소	직영	-
수지구청	자치행정과	5개소	직영	상황에 따라 시에서 공공근로 지원
	산업환경과	1개소	직영	-

3) 화성시

□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허가·설치·관리 관련 조직체계

- 공중화장실에 관련된 허가·설치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공중화장실 관리는 건축물 용도별 개별법을 담당하는 소

관부서에 의해 각각 관리·운영되어짐

- 화성시 공중화장실은 총 706개(616개소)로 화성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은 241개이고, 시를 포함하여 공공에서 관리하는 물량은 331개, 민간에서 관리하는 물량은 375개로 나타남

○ 개방화장실에 대한 통합적인 시설관리 및 운영은 맑은물사업소 하수과에서 총괄

□ 공중화장실 관리현황

○ 화성시의 공중화장실 청소관리업무는 화성도시공사에 의해 위탁·관리되어짐

[표 3-9] 화성시 공중화장실 관리현황

구 분		화장실수	
공공	화성시	하수과	28
		공원과	48
		해양수산과	12
		관광진흥과	9
		문화예술과	1
		산림녹지과	2
		농정과	1
		체육진흥과	1
		자원순환과	1
		맑은물운영과	3
		지역개발과	2
		회계과	5
		여성가족재단	3
		도서관	39
		읍면사무소, 주민센터	46
	화성도시공사	40	
	소계	241	
	보건소	29	
	우체국	18	
	경찰서, 파출소	16	
소방서	21		
기타공공시설	6		
중 계	331		

구 분		화장실수
민간	역, 터미널	2
	휴게소	6
	기타	367
	중 계	375
합 계		706

※ 기타에는 주유소, 병원, 대형건물, 마트 등이 포함

3.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사업 현황 분석

1) 광명시

가. 민간 개방화장실 지정확대 사업

추진목적과 추진절차

- 도심지 내 부족한 공중화장실 수요 충족 및 화장실 이용자에 대한 접근 편리성 제공을 위하여 민간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 운영
- 민간화장실 소유자(관리자)에 대한 적극적인 화장실 개방화 유도 및 지속적인 개방화장실 관리·운영유지 필요

[표 3-10] 광명시 민간 개방화장실 지정확대 사업 추진절차

구분	내용	비고
모집홍보 및 신청 접수	- 광명시 홈페이지 홍보 - 개방화장실 지정 신청서 접수	연말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 지정대상 적격여부 확인 - 평가항목에 근거하여 평가	연말
선정	- 신청서 및 평가서 제출 - 개방화장실 지정 통지	연말
운영	- 매월 편의용품 지급 - 개방화장실 안내표지판 부착	연중
지도점검, 관리	- 매년 1회 등급평가 및 정기점검 - 2회 이상 지적사항 발생 시 개방화장실 지정취소	연1회

□ 지정요건

○ 법적 지정요건

-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업무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업무시설이 있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건축법에 의한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광명시 지정요건

- 개방화장실 지정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법적지정요건보다 완화하여 지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나 시설이 우수한 개방화장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등급에 따른 차등지원을 원칙으로 함
- 최근 정부의 정책트렌드(남녀화장실 분리 국민캠페인)에 따라 남녀화장실이 분리된 곳을 지정
- 영업장 또는 매장을 통과해야 이용 가능한 화장실 및 건물의 지하층 또는 2층 이상에 위치한 화장실은 제외함
- 건축연도가 짧고 노후하지 않아 범죄의 가능성이 낮은 건물

□ 지원방안

○ 물품지원

- 타 자치단체들에 비해 광명시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물품지원을 하고 있음
- 매년 1회 등급평가를 시행해 결과(우수, 양호, 보통)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금 결정
-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 부산시는 등급별로 서울시 10만원, 8만원, 6만원 부산시 8만원 만원, 6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도권에 비해 지원 금액이 낮음

- 시흥시의 경우 특이사례로 물품지원이 아닌 상하수도요금(70%) 을 지원하고 있음

[표 3-11] 광명시 개방화장실 지원사례

구분	우수	양호	보통
광명시	200,000원	150,000원	100,000원

출처: 조례 및 광명시 홈페이지

2) 용인시

가. 민간 개방화장실 지정확대 사업

추진목적과 추진절차

- 도심지 내 부족한 공중화장실 수요 충족 및 화장실 이용자에 대한 접근 편리성 제공을 위하여 민간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 운영
- 민간화장실 소유자(관리자)에 대한 적극적인 화장실 개방화 유도 및 지속적인 개방화장실 관리·운영유지 필요

[표 3-12] 용인시 민간 개방화장실 지정확대 사업 추진절차

구분	내용	비고
모집홍보 및 신청 접수	- 용인시 홈페이지 홍보 - 개방화장실 지정 신청서 접수	연말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 지정대상 적격여부 확인 - 평가항목에 근거하여 평가	연말
선정	- 신청서 및 평가서 제출 - 개방화장실 지정 통지	연말
운영	- 매월 편의용품 지급 - 개방화장실 안내표지판 부착	연중
지도점검, 관리	- 매년 1회 등급평가 및 정기점검 - 2회 이상 지적사항 발생 시 개방화장실 지정취소	연1회

□ 지정요건

○ 법적 지정요건

-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업무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업무시설이 있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건축법에 의한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용인시 지정요건

- 최근 정부의 정책트렌드(남녀화장실 분리 국민캠페인)에 따라 남녀화장실이 분리된 곳을 지정
- 영업장 또는 매장을 통과해야 이용 가능한 화장실 및 건물의 지하층 또는 2층 이상에 위치한 화장실은 제외함

□ 지원방안

○ 물품지원

- 용인시의 경우 등급별로 15만원, 10만원 5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고 있음

[표 3-13] 용인시 개방화장실 지원사례

구분	우수	양호	보통
용인시	150,000원	100,000원	50,000원

출처: 조례 및 용인시 홈페이지

3) 화성시

가. 민간 개방화장실 지정확대 사업

□ 추진목적과 추진절차

- 도심지 내 부족한 공중화장실 수요 충족 및 화장실 이용자에 대한 접근 편리성 제공을 위하여 민간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 운영
- 민간화장실 소유자(관리자)에 대한 적극적인 화장실 개방화 유도 및 지속적인 개방화장실 관리·운영유지 필요

[표 3-14] 화성시 민간 개방화장실 지정확대 사업 추진절차

구분	내용	비고
모집홍보 및 신청 접수	- 화성시 홈페이지 홍보 - 개방화장실 지정 신청서 접수	연말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 지정대상 적격여부 확인 - 평가항목에 근거하여 평가	연말
선정	- 신청서 및 평가서 제출 - 개방화장실 지정 통지	연말
운영	- 매월 편의용품 지급 - 개방화장실 안내표지판 부착	연중
지도점검, 관리	- 매년 1회 등급평가 및 정기점검 - 2회 이상 지적사항 발생 시 개방화장실 지정취소	연1회

□ 지정요건

- 법적 지정요건
 -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업무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업무시설이 있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건축법에 의한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화성시 지정요건

- 개방화장실 지정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법적지정요건보다 완화하여 지정하는 방향으로 추진
- 최근 정부의 정책트렌드(남녀화장실 분리 국민캠페인)에 따라 남녀화장실이 분리된 곳을 지정
- 영업장 또는 매장을 통과해야 이용 가능한 화장실 및 건물의 지하층 또는 2층 이상에 위치한 화장실은 제외함
- 건축연도가 짧고 노후하지 않아 범죄의 가능성이 낮은 건물 우선지정

□ 지원방안

○ 물품지원

- 화성시의 경우 등급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120,000원 지원

[표 3-15] 화성시 개방화장실 지원사례

구분	우수	양호	보통
화성시		120,000원	

출처: 조례 및 화성시 홈페이지

제3절 시사점 도출

1. 공급·관리측면

1)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현황 분석

- 정기적인 현황 및 실태조사에 기반한 지역맞춤형 공중화장실 공급계획 부재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공중화장실 등의 수급계획)」에 따라서 지자체에서는 5년마다 정기적 실태조사를 토대로 공중화장실에 대한 수급 계획을 마련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예산과 인력의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해 수급계획 및 정기적 실태조사가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는 시설의 설치기준 및 유지 관리, 개방화장실 지정 운영, 이동화장실의 설치 관리, 유료화장실의 신고에 대한 법규상의 규정 및 가이드라인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항목들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별 맞춤형 공중화장실 공급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표 3-16]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분석

조례	조항	광명시	용인시	화성시
제1장 총칙	목적	○	○	○
	정의	○	○	○
	적용범위	○	○	○
	설치 관리자의 책무	○	○	○
제2장 시설의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	설치기준	○	○	○
	위탁관리	○	○	○
	관리인의 교육	○	○	○
	편의용품의 비치 제공	○	○	○
	공중화장실의 유지 관리	○	○	○
	관리대장의 비치	X	○	○

조례	조항	광명시	용인시	화성시
제3장 개방화장실 지정운영	화장실 개방	○	○	○
	화장실 지정	○	○	○
	편의 위생용품 등의 지원	○	○	○
제4장 이동화장실 설치관리	이동화장실 설치	○	○	○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	○	○
	이동 간이화장실 철거	X	○	X
제5장 유료화장실 신고	유료화장실의 신고	○	○	○
	준수사항	○	○	○
	금지사항	X	○	X
	과태료의 부과	○	○	○

□ 공중화장실 시설(변기수) 최소설치기준 삭제에 따른 대응 조례 마련 부재

- 개정된 공중화장실 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 미반영
 - 2019년 9월부터 최소변기 설치기준(예: 대변기 7개(남성용 2개 여성용 5개)) 삭제
 - 지역의 현실이 반영된 공중화장실 세부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있어야 하지만 지역의 환경, 이용자의 특성 등이 반영된 적절한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에 관련된 지자체 기준이 조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실정
- 공중화장실법 적용범위에 대한 세부 설치기준(안)을 건축물 용도별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중화장실법 적용범위 상 세부 건축물 용도별 위생기구 설치기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실제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공중화장실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토대로 지자체가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공중화장실 수급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해야 할 필요성 강조

□ 공중화장실 자문위원회 구성 미흡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5」에 따르면 지자체에서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지정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게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지자체단위에서 관련된 규정은 부재되어 있거나 또는 미흡한 상태

- 지자체단위에서는 자문위원회를 둬으로써, 지역 내 공중화장실 조성 사업 및 개방화장실 수급확대에 관련된 자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2) 지자체 공중화장실 담당 조직체계 현황 분석

□ 이원화된 업무구조

- 공중화장실 시설설치부서와 관리부서는 각각의 이원화 된 조직체계 하에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
 - 광명시, 용인시, 화성시의 경우 공중화장실에 관련된 총괄적인 업무는 환경수도사업소-자원순환과, 하수도사업소-하수시설과, 맑은물사업소-하수과에서 각각 담당하지만, 공중화장실 설치에 관련된 업무는 개별시설물 관리자가 담당하고 있어 이원화된 업무구조 보임

[표 3-17] 지자체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관련 소관부처

지자체	국명	과
광명시	환경수도사업소	자원순환과
용인시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과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하수과

□ 공중화장실 관리 전문성 확보 측면

- 공중화장실 설치에 있어 부지사용 협의 및 건축허가를 득함에 있어 소유주, 토지용도 등에 따라 까다롭고 복잡한 협의 절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설치부서 및 관리부서의 이원화된 업무구조로 인해 전문성 떨어지며 정책 우선순위도 낮은 것으로 파악
 - 설치와 관리가 이원화된 조직구조상의 특성으로 담당자 업무 이해도가 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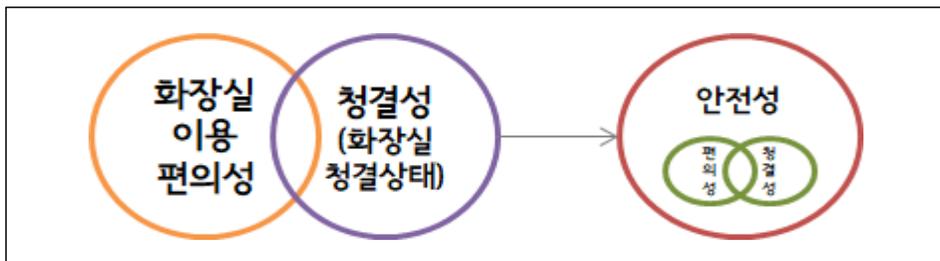
- 어지며 민원 발생시 책임행정 불가능한 업무구조
- 담당인력과 예산의 부족으로 공중화장실 조직을 일원화하여 운영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역부족한 상황
 - 화장실 관련 전담부서의 부재로 지속가능하며 장기적인 측면에서 체계적인 종합관리방안, 새로운 정책도입 및 추진 어려운 실정

2. 안전성 확보 측면

□ 외진 곳에 위치한 공중화장실의 안전성 확보에 중점

- 그동안 공중화장실은 편의성과 청결성 위주로 관리 해오면서 안전성 측면의 정책 마련은 주로 소외되는 경향이었으나 최근 선도 지자체에서는 공중화장실의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관리방안 마련에 중점
 - 외진 곳을 우선으로 화장실의 비상벨 설치, CCTV 설치, 몰카 방지, 조명 시설 개선 등 보안시설 강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마련 구체화 중
 - 안전등급제 도입을 통한 효율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 중

[그림 3-1] 공중화장실 관리 패러다임 변화



□ 지자체 차원에서 안전성 확보 위한 관련 조례 부재

- 최근 공중화장실의 범죄 발생 추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광명시, 용인시의 현행 지자체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에는 안전한 화장실로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항이 포함 되어 있지 않은 실정으로 나타남

- 공중화장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자체 조례 정비 필요
- 선도 사례로서 「광주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안전장치 설치에 관련된 조항을 2017년 신설하여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안전성 확보에 관련된 조항을 마련하고 있음
- 민간시설 소유자 또는 시설 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등을 자체적으로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 장비 등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조항 검토 필요
- 지자체에 위치한 공중화장실 내 안전시설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장소에 대한 검토 역시 필요

[표 3-18] 「광주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5조(설치기준)

제5조(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조 및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6. 9.>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 (종이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4. 9.>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7. 6. 9.>
6.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용 경고음 발생기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9.>

출처: <http://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381904>

안전한 화장실 설치 및 관리업무 담당 부서 부재

- 안전한 화장실 설치 및 관리업무 전담부서 부재
 -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관련해서 안전한 화장실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

- 부서는 부재하고 있는 실정이며, 다른 부서 또는 다른 기관(경찰서 등)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광명시의 경우 안전한 화장실에 관련된 제품 설치(비상벨, CCTV 등) 및 물품관리에 관련된 업무는 재산관리관이 담당하고 있지만, 안전예방에 필요한 시책개발 및 시책관리에 관련해서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와 관련된 조례는 부재한 것으로 나타남
 - 용인시의 경우는 안전한 화장실에 관련된 제품 설치(비상벨, CCTV 등) 및 관리에 관련된 업무. 안전예방에 필요한 시책개발 및 시책관리에 관련한 업무는 복지여성국-여성가족과에서 담당하고 있어 공중화장실 허가 및 설치를 담당하는 부서인 하수도사업소-하수시설과와 이원화된 조직체계 하에서 공중화장실 업무가 수행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전한 화장실 확보 위한 조례 또한 부재인 상태
 - 화성시의 경우 안전한 화장실에 관련된 시책개발 및 관리에 관련된 업무와 공중화장실 허가 및 설치를 담당하는 업무가 일원화된 조직체계하에서 (맑은물사업소-하수과)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안전한 화장실 확보를 위한 조례 역시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 설치된 CCTV에 대한 관리가 안되고 있는 실정임

[표 3-19] 안전한 화장실 관리업무 전담부서 존재유무 현황

지자체	안전한 화장실 확보위한 조례제정 유무	국명	과
광명시	관련조례 없음	-	재산관리관별 담당
용인시	관련조례 없음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안전한 화장실 확보위한 조례 포함 ²⁾	맑은물사업소	하수과

2)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화장실 내부에 비상 호출기를 설치하거나 화장실 밖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다(제2장제5조)

3. 개방화장실 수급관리 측면

- 도심지역에 공중화장실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따르므로 도심지 내의 빌딩을 활용해 민간 개방화장실로 지정확대 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도시화 지역 또는 재개발된 지역의 경우 도심지의 빌딩(민간 개인 소유 시설물)을 활용하여 개방화장실을 지정·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초점
 - 읍면 생활권의 경우 관광지, 산책로, 재래시장 위주로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선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지자체 개방화장실 사업 현황종합
 - 「민간 개방화장실 지정확대 사업」 지원방안 실태
 - 현재 개방화장실 사업을 운영 중인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약 10만원 내외의 지원물품 또는 지원금을 보조해주는 방식으로 해당사업을 운영 중에 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건물의 소유주가 화장실을 개방하게 만드는 유인책으로 작용하기 어려운 실정
 - 개방화장실의 지정이 반드시 필요한 입지(예: 유동인구가 많은 역주변, 또는 관광시설 주변 등)를 대상으로 개방화장실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3-20] 지자체 개방화장실 지원사례 종합

구분		우수	양호	보통
광역	서울시	100,000원	80,000원	60,000원
	부산시	80,000원	60,000원	50,000원
지자체 (시)	광명시	200,000원	150,000원	100,000원
	화성시	120,000원	120,000원	120,000원
	시흥시	매월 상하수도 요금의 70%(최소5만원~최대20만원) 지급		
	용인시	150,000원	100,000원	50,000원

출처: 조례 및 각 지자체 홈페이지

□ 지자체 민간 개방화장실 수급 확대 위한 혁신적인 유도책 부재

- 유동인구 고려하여 차등화하여 지원하는 방안 부재
 - 유동인구, 민간 개방화장실의 이용률, 개방시간, 변기수 등에 따라 차등화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필요시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하수도 요금의 할인 및 면제를 고려할 수 있으며 다양한 물품(종량제봉투, 비누, 청소용품 등)을 차등적으로 지원해주는 방안마련 또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비예산지원의 측면에서 청소인력을 지원해주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개방화장실이 위치한 건물의 소유주 혹은 관리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 중 가장 큰 부분이 시설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해 야기되는 위생상태 악화로 볼 수 있어 지자체에서는 해당 화장실에 대한 유지관리 청소인력을 지원해주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제4장

공중화장실 공급관리 측면에서의 의견조사

제1절 지자체 공중화장실 담당공무원 의견조사

제2절 지자체 개방화장실 수급주체(건물주) 의견조사

제3절 시사점 도출

제4장 공중화장실 공급관리 측면에서의 의견조사

제1절 지자체 공중화장실 담당공무원 의견조사

1. 조사개요

□ 설문조사개요

-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운영 관리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본 연구는 각 지자체의 공중화장실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진행
 - 설문조사는 2020년 4월 6일부터 2020년 4월 26일까지 약20일 동안 진행되었으며, email을 통해 지자체 공무원에게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
- 설문문항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총 28개의 문항으로 구성
 - 구체적으로 설문문항은 ① 공중화장실 공급·관리체계 측면, ② 안전성 확보 측면, ③ 개방화장실 수급확대 측면에서 개선된 운영 관리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

□ 설문응답자의 기본정보

- 응답자의 소속지역
 - 설문지에 응답한 지방자치 단체 소속 공무원은 총 382명으로 경기도가 13.09%로 가장 높았으며 전남과 경북이 12.04%, 11.78%로 많음
 - 가장 낮은 응답자의 소속 지방자치 단체는 세종시였으며 인천이 응답수 9명으로 2.36% 이어 대구가 응답자 수 11명 2.88%로 낮음
 - 서울시는 응답자수 22명, 비율은 5.76%로 부산과 동일한 응답자수를 나타냄. 광주와 대전은 응답자수 12명 3.14%로 확인됨

- 강원외의 경우 응답자수 37명 비율 9.69%이며 충북은 4.97%를 나타냄. 충남은 응답자 수 28명 7.33% 이고 전북은 응답자수 23명 6.02%, 경남은 9.16%를 차지함

[표 4-1] 응답자의 소속 지방 자치 단체(광역)

구분	응답수	비율
서울	22	5.76
부산	22	5.76
대구	11	2.88
인천	9	2.36
광주	12	3.14
대전	12	3.14
울산	9	2.36
세종	2	0.52
경기	50	13.09
강원	37	9.69
충북	19	4.97
충남	28	7.33
전북	23	6.02
경북	45	11.78
전남	46	12.04
경남	35	9.16
총합	382	100.00

○ 응답자의 성별 및 연령

- 설문외의 무응답자 5명을 제외한 응답자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이 240명으로 63.66%, 여성 응답자가 137명 36.34%로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더 높음
- 연령은 51~60세가 134명 35.36%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31~40세가 96명 25.33%, 41~50세 95명 25.07%로 큰 차이는 없었으나 2, 3 순위로 나타남

[표 4-2] 응답자의 성별 및 연령

성별	응답수	비율
남성	240	63.66
여성	137	36.34
무응답	5	1.31
총합	382	100.00
연령	응답수	비율
20세 이하	2	0.53
21~30세	52	13.72
31~40세	96	25.33
41~50세	95	25.07
51~60세	134	35.36
61세 이상	0	0.00
무응답	3	0.79
총합	382	100.00

- 응답자의 직급 및 공중화장실 관련 업무 수행기간
 - 응답자의 직급은 6급 178명 46.60%로 가장 높은 비중 차지함
 - 2순위로 8~9급이 118명 30.89%이며 7급 19.11%이고 가장 낮은 직급은 5급 이상으로 11명 2.88%를 나타냈음
 - 공중화장실 관련 업무 수행기간의 경우 1년 이하의 공무원의 비율이 52.88%로 가장 높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경험을 가진 공무원은 31.94%로 나타남
 - 3년 이상 4년 미만의 공중화장실 관련 업무를 경험한 공무원은 8.12% 5년 이상은 6.28% 로 나타남

[표 4-3] 응답자의 직급 및 공중화장실 관련 업무 수행기간

직급	응답수	비율
8~9급	118	30.89
7급	73	19.11
6급	178	46.60
5급 이상	11	2.88
무응답	2	0.52
총합	382	100.00
업무 수행기간	응답수	비율
1년 이하	202	52.88
1~2년	122	31.94
3~4년	31	8.12
5년 이상	24	6.28
무응답	3	0.79
총합	382	100.00

2. 공급·관리체계 측면에서의 설문분석 결과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 현황 (설문문항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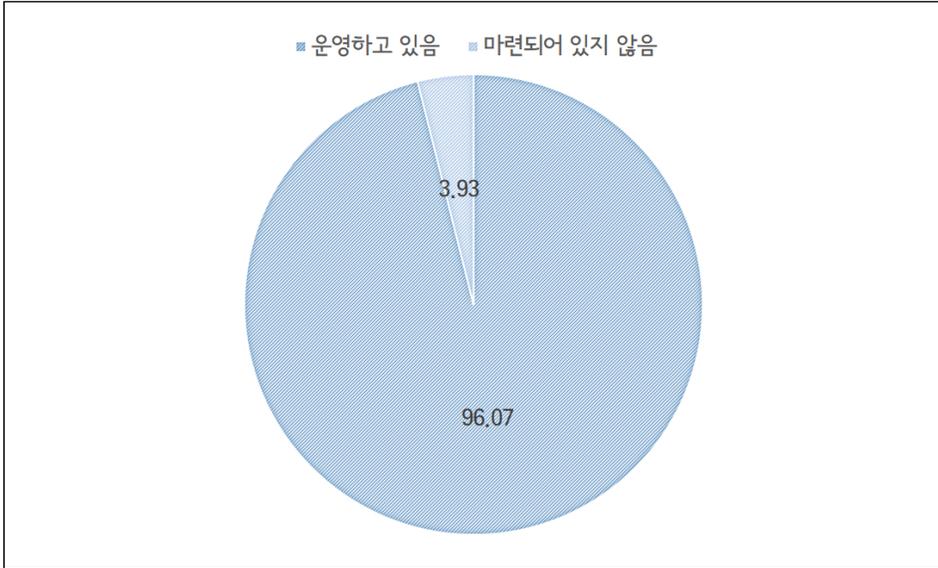
-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등 관련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계십니까?
에 대한 설문의 응답은 운영하고 있다가 96.07%로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냈으며 마련되어있지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3.93%로 나타남

[표 4-4]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 여부

구분	응답수	비율
운영하고 있음	367	96.07
마련되어 있지 않음	15	3.93
총합	382	100.00

[그림 4-1]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 여부

(단위: %)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상 항목이 실제로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 (설문문항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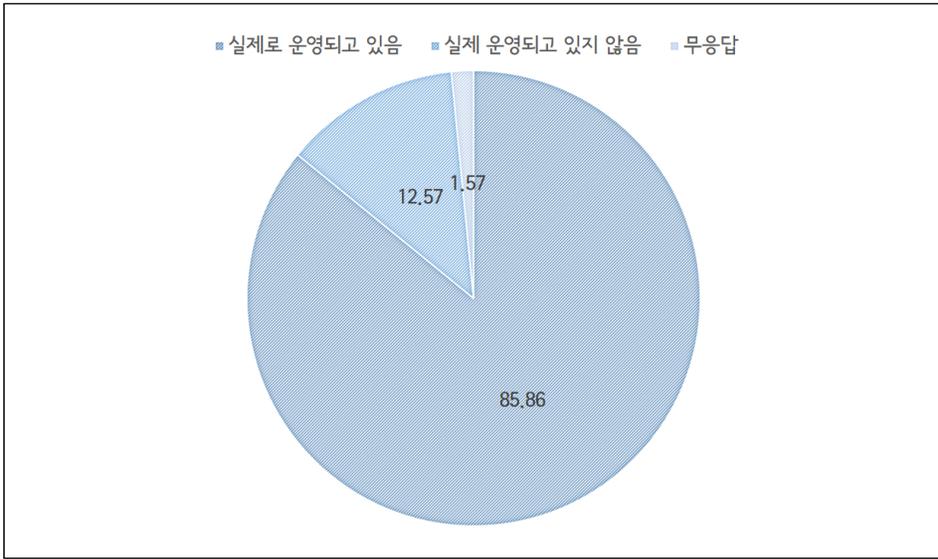
- 공중화장실 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와 범규상 항목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설문문항에 대해 실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응답자 비율이 85.86%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실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수는 12.57%로 나타남

[표 4-5] 관련 법규의 항목이 실제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구분	응답수	비율
실제로 운영되고 있음	328	85.86
실제 운영되고 있지 않음	48	12.57
무응답	6	1.57
총합	382	100.00

[그림 4-2]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실제 운영 여부

(단위: %)



□ 법규상 항목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이유 (설문문항 2-1)

- ‘법규상 항목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이유’로 일부 법규가 현실에서 실제 적용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
 -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에 따라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두지 아니할 것’ 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의 특성상 대변기가 수시로 막히는 등 피해사례가 증가하여 휴지통을 없애는 것에 대하여 불편 호소
- ‘법규상 항목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이유’로 담당자들은 공중화장실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된 모든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해석하고 있어 공중화장실의 광범위한 범위설정으로 실제 관리감독에 한계점이 존재한다고 지적
 -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설치 대상 건축물 구분의 구체화가 필요하며, 민간화장실 범위 또한 너무 광범위하여 관리의 사각지대 존재

- 법규상 항목이 실제로 운영되려면 전담인력이 상시 관리할 수 있는 체계 마련 필요
- 조직체계상의 공중화장실 전담부서 부재
 - 공중화장실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부서에서 설치하는 경우와 사업추진부서에서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설치부서와 관리부서의 이원화로 혼란 발생
 - 공중화장실 관리부서가 일원화 되어 있지 않아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개방화장실 지정은 관련 조례가 있지만 실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거의 없는 실정
- 기타사유
 - 기타사유로는 화장실 용어가 복잡하고 시설 노후 등으로 인한 공중화장실이 많이 존재한다고 응답

【표 4-6】 관련 법규가 운영되지 않는 이유

구분	세부내용
현실 반영 어려운 법규 제정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에 따라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두지 아니할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의 특성상 대변기가 수시로 막히는 등 피해사례가 증가하여 휴지통을 없애는 것에 대하여 불편 호소.
	개방화장실의 경우 대변기 칸막이 안에 휴지통을 두지 않는 조항 준수 어려움
	화장실 설치 및 관리 체계 부족
공중화장실의 광범위한 범위설정으로 인한 관리감독 한계	공중화장실 시설 설치 대상이 개인 소유인 경우, 해당 시설이 공중화장실이라는 소유자(관리자)의 인식 부족, 사유시설을 공중에 의무 제공하는 것에 대한 반감 등으로 인해 법규상 항목의 실제 적용과 운영이 힘들.
	법규상 항목이 실제로 운영되려면 전담인력이 상시 관리하여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음
	공중화장실법 제2조는 "공중화장실"이란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로 정의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같은법 제3조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된 모든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해석하고 있어 공중화장실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법규상의 항목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음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설치 대상 건축물 구분, 구체화 필요

구분	세부내용
	공중화장실법 제3조 적용대상 민간화장실 범위가 너무 넓고 많음. 관리 사각지대에 있음
	개방화장실 유지관리가 잘되지 않고 있음
	대변기 칸막이 안에 휴지통을 두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배관 막힘 등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휴지통을 없애지 못한 곳이 있음
	운영 수요가 적음
	부지의 협소
	공중화장실 적용범위가 광범위
전담부서 부재	공중화장실 설치는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부서에서 설치하는 경우와 사업추진부서에서 설치하는 경우가 있음
	개방화장실 자립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에서 민간에 협조를 받아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음
	공중화장실 관리부서가 일원화 되어 있지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개방화장실 지정은 관련 조례가 있지만 실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거의 없는 실정임.
기타의견	화장실 용어가 복잡
	시설 노후 등으로 인한 공중화장실이 많이 존재
	과거부터 설치해왔던 화장실이 대다수로 존재

□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의 총괄 담당부서 현황 (설문문항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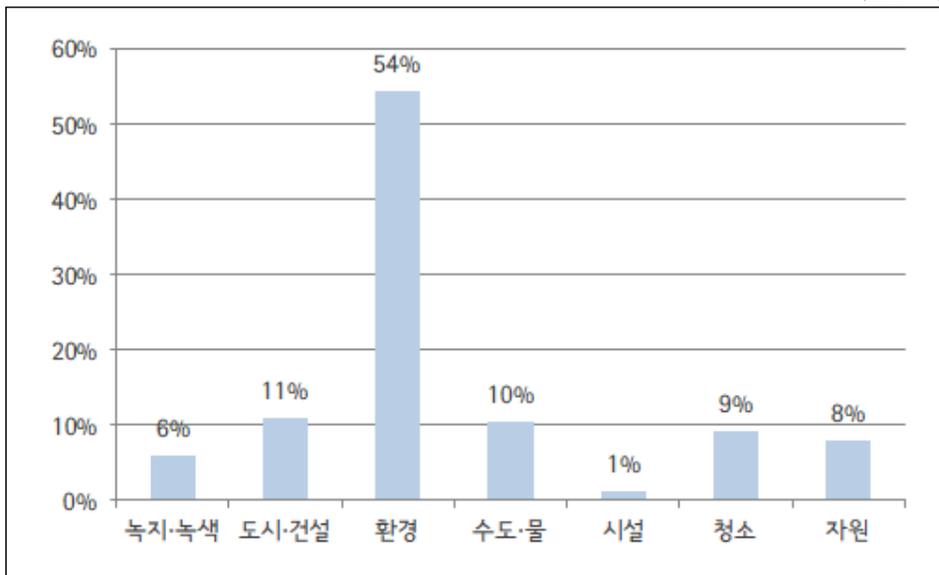
-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에 대해 총괄적으로 관리 담당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라는 질문에 환경과 관련된 조직에서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4.39%로 가장 많았음
 - 구체적으로 경제문화국-환경보호과, 경제개발국-환경보호과, 교통환경국-환경위생과, 복지생활국-환경위생과 등에서 관련업무 담당
 - 다음으로 청소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에서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율이 9.21%, 자원에 관련된 조직에서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율이 7.95%로 나타남
 - 주로 생활복지국-청소행정과, 생활환경국-청소과 일자리복지국-자원순환과, 안전도시국-자원순환과 등에서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업무 수행

[표 4-7]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총괄 관리 담당부서의 주요 명칭 구분

주요명칭 구분	빈도	비율
녹지·녹색	14	6
도시·건설	26	11
환경	130	54
수도·물	25	10
시설	3	1
청소	22	9
자원	19	8
총계	239	100.00

[그림 4-3]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총괄 관리 담당부서의 주요 명칭 구분

(단위: %)



협조부서 여부 (설문문항 4)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규 제3조」에 의하여 공중화장실 허가, 설치 관리 등에 대하여 협조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의 질문에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67.28%, ‘없다’는 31.94% 였으며 무응답은 0.79%로 나타남

[표 4-8] 협조부서 여부

구분	응답수	비율
있다	257	67.28
없다	122	31.94
무응답	3	0.79
총합	382	100.00

협조부서 현황 (설문문항 4-1)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규 제3조의 적용범위에 의하여 공중화장실 허가, 설치 관리 등에 대하여 협조하는 부서를 묻는 질문에 경제과, 경제산업과, 시장경제과, 지역경제과와의 협조가 존재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건축과, 건축허가과, 건축지적과 등과 같이 건축물 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와의 협조가 존재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13%로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 이밖에 관광(예:관광과, 관광문화과, 관광문화체육과, 관광시설사업소, 관광정책과), 도시(예: 도시과, 도시새마을과,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등)에 관련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협조가 존재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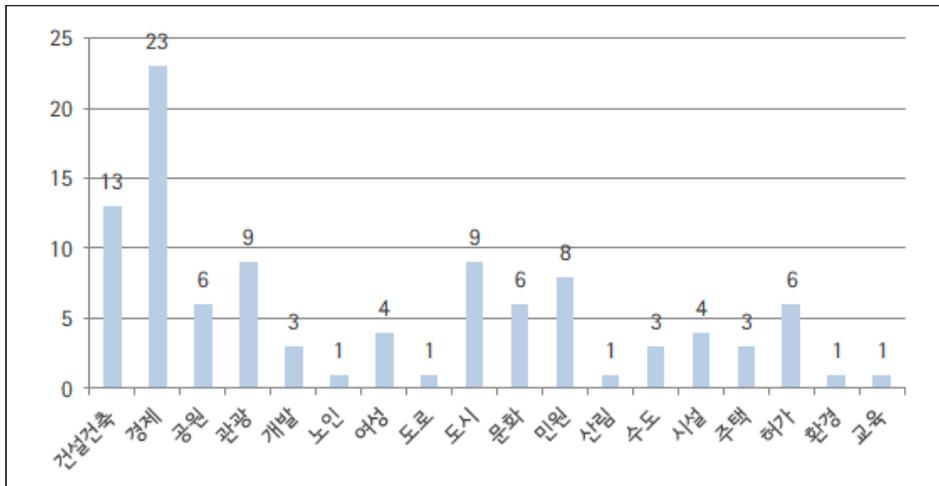
[표 4-9]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관리 협조 부서 주요 명칭 구분

구분	빈도	비율
건설·건축	10	13%
경제	18	23%

구분	빈도	비율
공원	5	6%
관광	7	9%
개발	2	3%
노인	1	1%
여성	3	4%
도로	1	1%
도시	7	9%
문화	5	6%
민원	6	8%
산림	1	1%
수도	2	3%
시설	3	4%
주택	2	3%
허가	5	6%
환경	1	1%
교육	1	1%

[그림 4-4]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관리 협조부서 주요 명칭 구분

(단위: %)



□ 업무 담당 부서에서 화장실 비상벨, CCTV 설치 등 안전한 화장실 설치 및 관리 업무도 수행하는지 여부 (설문문항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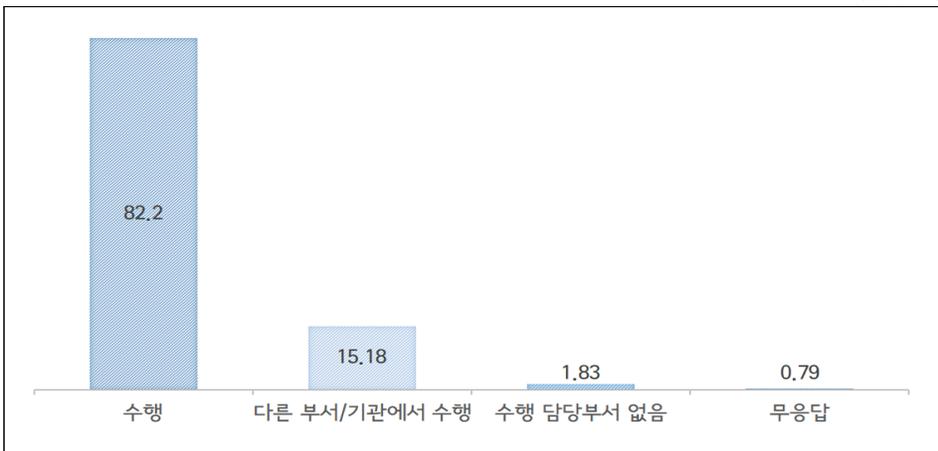
-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안전한 화장실 설치 및 관리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지에 대한 설문문항에 대해 ‘함께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2.2%로 매우 높게 나타남
- ‘다른 부서 혹은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5.18%, 수행 담당부서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1.83%로 나타났음

[표 4-10] 안전 화장실 설치 및 관리 업무 수행 여부

구분	응답수	비율
수행	314	82.2
다른 부서/기관에서 수행	58	15.18
수행 담당부서 없음	7	1.83
무응답	3	0.79
총합	382	100

[그림 4-5] 안전 화장실 설치 및 관리 업무 수행 여부

(단위: %)



□ **안전한 화장실 관련 담당조직(부서) (설문문항5-1)**

- 화장실 비상벨, CCTV 설치 등 안전한 화장실 설치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서로는 생활안전교통과, 건설도시국-안전재난과, 안전건설과, 안전건설교통국-안전총괄과, 안전건설국-안전도시과 등으로 응답
- 반면에 가족행복과, 경제녹지과, 경제산업과, 산림과, 자치행정국_행정지원과로 응답한 비율도 존재해 안전한 화장실 설치 및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조직)의 부재와 관련업무의 체계성 및 전문성 부족을 확인 할 수 있음

[표 4-11] 안전 화장실 설치 및 관리 업무 수행 부서

안전 화장실 설치 및 관리업무 수행 부서
가족행복과
건설과
건설도시국_안전재난과
경제녹지과
경제문화국_여성청소년과
경제산업과
공원녹지과
관광경제국_관광시설사업소
도시과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국_문화재과
문화관광복지국_여성청소년가족과
문화교육국_청년여성가족과
문화복지국_여성가족과
복지국_여성청소년과
복지문화국_여성보육과
복지여성국_여성가족과
복지행정국_여성가족과
복지환경국_가족행복과
산림과
생활안전계
생활안전교통과

안전 화장실 설치 및 관리업무 수행 부서
생활안전국_생활안전과
스마트도시담당관
시민친화국_공원녹지과
아동청소년과
안전건설과
안전건설교통국_안전총괄과
안전건설국_안전도시과
안전건설국_환경과
안전건설도시국_안전재난관리과
안전도시국_안전총괄과
안전생활국_공원녹지과
안전재난과
안전총괄과
일자리경제과
자치행정국_민원정보과
자치행정국_정보통신과
자치행정국_행정지원과
재난안전실_안전정책과
재산관리관별담당함
정보통신과
주민복지국_문화관광과
주민자치국_혁신교육과
주민행복과
천만그루정원도시과
총무국_사회복지과
하수도담당
해당실과
행정국_관광과
행정복지경제국_주민복지과
행정복지국_주민복지과
행정지원국
화장실설치부서(기관)
환경과

□ 허가/설치와 관리의 이원화된 업무구조에 대한 의견 (설문문항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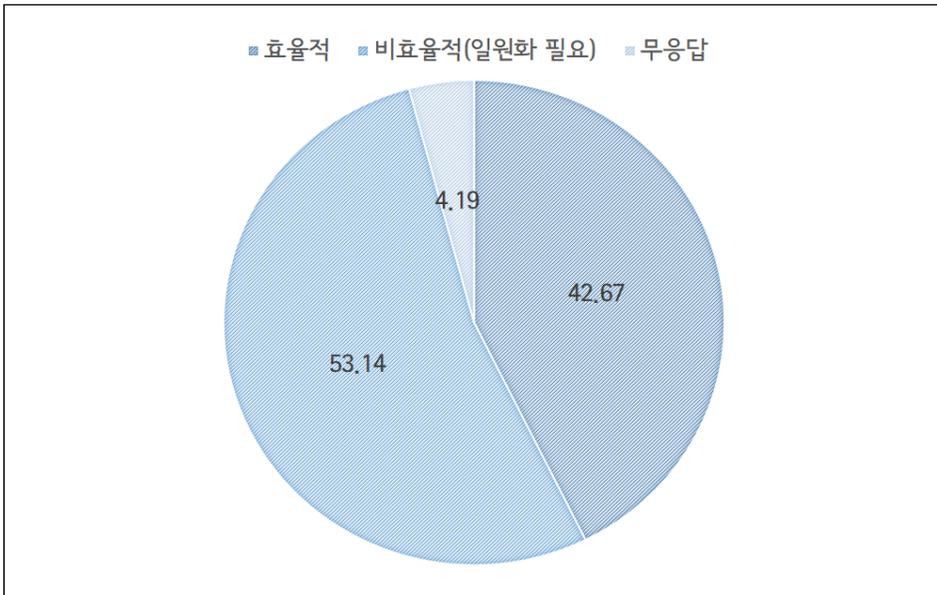
- 허가 및 설치와 관리 측면이 이원화된 업무구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 질문에 ‘비효율적이며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3.14%로
‘이원화가 효율적’이라고 응답한 42.67%보다 다소 높은 비율을 차지함

[표 4-12] 이원 업무구조에 대한 의견

구분	응답수	비율
효율적	163	42.67
비효율적(일원화 필요)	203	53.14
무응답	16	4.19
총합	382	100

[그림 4-6] 허가·설치와 관리의 이원화된 업무구조에 대한 의견

(단위:%)



□ 허가/설치와 관리의 이원화된 업무구조에 대한 자유의견 (설문문항 6-1)

- ‘이원화된 조직체계 하에서 운영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는 의견에 대한 주된 이유로는 관리부서의 전문성을 고려해 공중화장실의 적용범위에 따라 해당시설물의 담당부서(예: 공원녹지과에서 공원내 공중화장실 전담)에서 이원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응답이 대다수
 - 일원화된 하나의 전담부서에서 공중화장실에 관련된 업무를 일괄적으로 관리 및 처리하기에는 지역내 공중화장실 수가 너무 많으며,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리를 일원화된 조직 구조 하에서 운영할 경우, 인력, 예산 등이 낭비될 수 있음
 - 또한 담당자의 업무가 가중되어 관리의 어려움이 예상됨
- ‘일원화된 조직체계 하에서 운영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는 의견에 대한 주된 이유로는 허가과 관리가 분리되면 중복관리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부서 간 원활하지 못한 협업이 발생하여 업무 추진 어려움이 따르며 공중화장실의 설치부서와 관리부서를 분리하여 운영할 경우 민원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
 - 이원화된 업무는 의견통합이 어려운 반면 일원화 업무는 민원사항이 즉시 처리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이원화 조직으로 공중화장실 관리 진행될 경우 분쟁 발생시 책임회피 문제 발생하여 책임행정 불가능
 -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관련 일원화된 조직체계 하에서 운영은 공중화장실에 대한 사후 관리 등이 용이하며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사업 추진 가능
 - 새로운 정책 도입 및 시설 개선 등 공중화장실의 합리적인 관리가 가능해지며 전문성 또한 확보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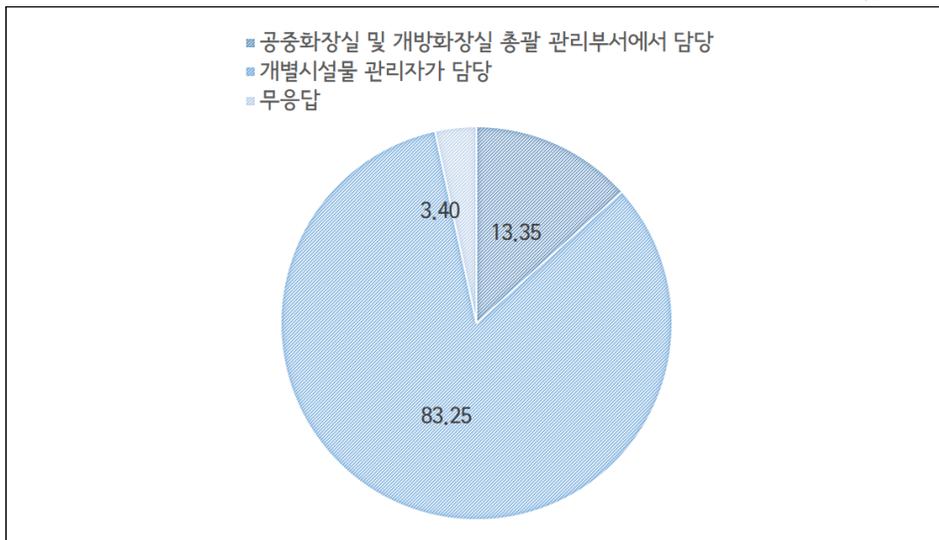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규 제3조의 적용범위에 적용받지 않는 시설물 내의 공중화장실 관리 방식 (설문문항 7)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규 제 3조에 적용받지 않은 시설물 내의 공중화장실의 경우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83.25%로 개별 시설물 관리자가 담당한다고 응답함
- 나머지 13.35%는 총괄 관리부서가 담당한다고 응답

[표 4-13] 법규 제3조 외 시설물 내의 공중화장실 관리방식

구분	응답수	비율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총괄 관리부서에서 담당	51	13.35
개별시설물 관리자가 담당	318	83.25
무응답	13	3.40
총합	382	100.00

[그림 4-7]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규 제3조의 적용범위에 적용받지 않은 시설물 관리방식

(단위: %)



□ **지자체의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방식(복수응답) (설문문항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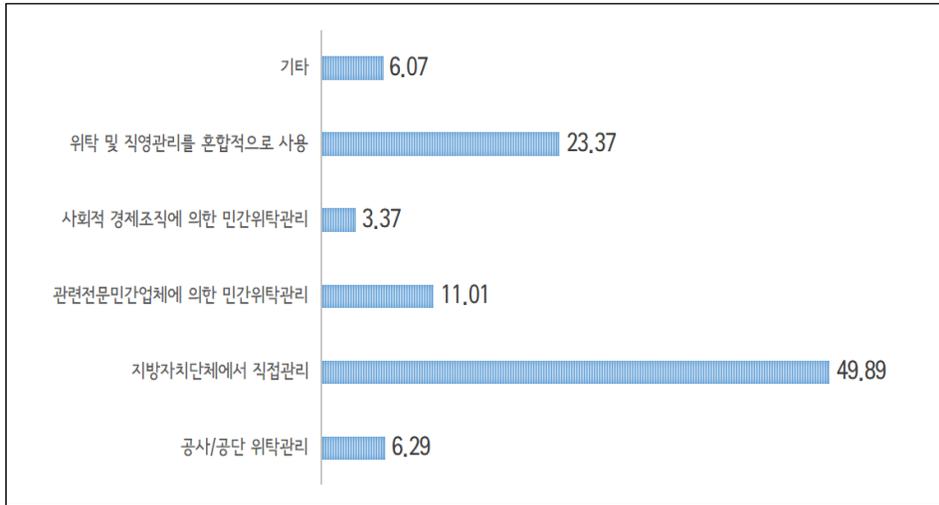
- 근무하고 계신 지자체의 공중화장실은 어떻게 유지·관리 되어지고 있습니까?
의 설문문항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9.8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2순위로 위탁 및 직영관리를 혼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공무원이 23.37%로 나타남
- 민간위탁의 경우 관련전문민간업체에 의한 민간위탁이 11.01%로 사회적 경제 조직에 의한 민간위탁 3.37%으로 높았음
- 공사 및 공단 위탁관리는 6.29%로 나타남

[표 4-14] 지자체의 공중화장실 유지 및 관리 방식(복수응답)

구분	응답수	비율
공사/공단 위탁관리	28	6.29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관리	222	49.89
관련전문민간업체에 의한 민간위탁관리	49	11.01
사회적 경제조직에 의한 민간위탁관리	15	3.37
위탁 및 직영관리를 혼합적으로 사용	104	23.37
기타	27	6.07
총합	445	100

[그림 4-8] 지자체의 공중화장실 유지 및 관리방식

(단위: %)

**[표 4-15]** 지자체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를 위한 외부위탁업체 명

사회적경제조직	일반민간업체
(합)동화위생공사	(주)국애
(합)문막원성위생공사	(주)씨앤에스
(합)원주위생공사	(주)그린위생공사
(합)환경위생공사	(주)상록위드인
(합)동화위생공사	(주)새날
(합)문막원성위생공사	(주)씨앤에스
(합)원주위생공사	(주)클린현대
(합)환경위생공사	(주)피케이
나라사랑 사회적협동조합	청소반장주식회사
(유) 참진	크린에이스
해주재 화장실(재단법인)	다산클린
광주도시관리공사	대진공영
	(주)서로

사회적경제조직	일반민간업체
김해 가야 시니어클럽 (재단법인 복지시설)	-
바람개비 화장실(YMCA) 재단법인	
성실한 마을주민	
현산 보통 청년회	
화순지역재활센터	
양산 시니어 클럽	

□ **현 유지관리 방식의 문제점 (설문문항 9)**

- 현재 유지관리 방식의 문제점에 대한 자유의견으로는 ① 청소관리인력의 확보 어려움 ② 15개 관련법에 따라 설치된 화장실은 모두 관리주체(민간, 국가, 기초, 광역)가 다르므로 통계, 지원, 관리주체 정의, 시설점검, 시설 규정 등 각종 일관된 정책, 확장, 관리가 어려움 ③ 개별설치 및 관리에 따라 관리부서의 강제성 없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고 전문성 또한 부재 ④ 공중화장실 개소수가 너무 많아 총괄부서에서 관리 어렵고 읍면에서 비협조적이어서 불편 ⑤ 공중화장실 개수는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관리도 엄격해짐으로 인해 공중화장실 관리부서의 업무과다 발생 ⑥ 신규시설 요청에 따른 예산 및 운영비 확보 어려움
- 노후 시설 등이 많이 존재함으로 인한 고장, 수리건 자주 발생. 그로 인해 유지보수비 부족
- 담당인력의 부족으로 적기, 적시 민원해결 지연
- 위탁관리 예산부족에 따른 민원발생
- 전문적인 교육이 없어서 청소 관리인에 따라 관리상태가 상이하며 대부분 민간위탁에 의존하고 있지만 전문성 결여

□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정기적 교육 수행 여부 (설문문항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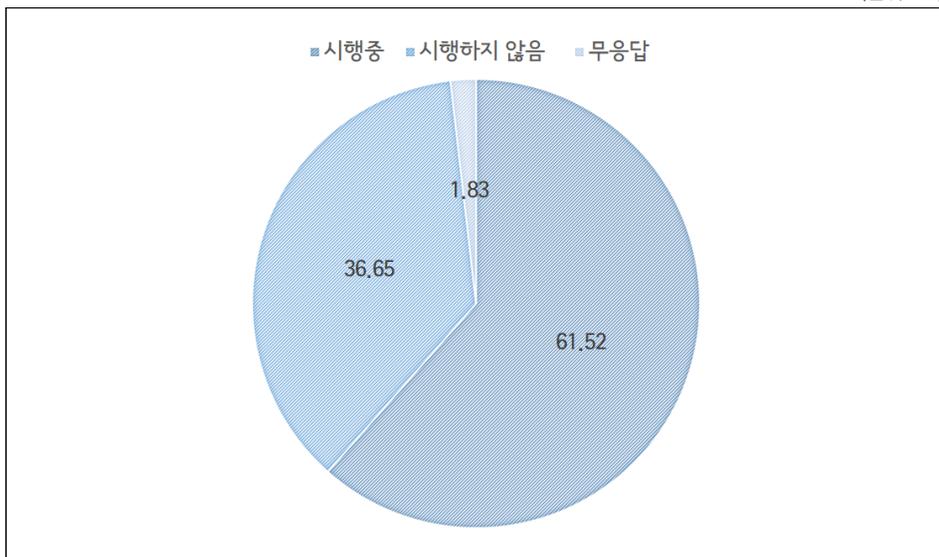
-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계십니까?의 설문 문항에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응답한 공무원은 61.52%로 높게 나타났으며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공무원은 36.62%, 무응답은 1.83%로 나타남

[표 4-16] 관리인에 대한 정기적 교육 수행 여부

구분	응답수	비율
시행중	235	61.52
시행하지 않음	140	36.65
무응답	7	1.83
총합	382	100.00

[그림 4-9] 관리인에 대한 정기적 교육 수행 여부

(단위: %)



□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정기적 교육 수행 시 교육 담당기관 (설문문항 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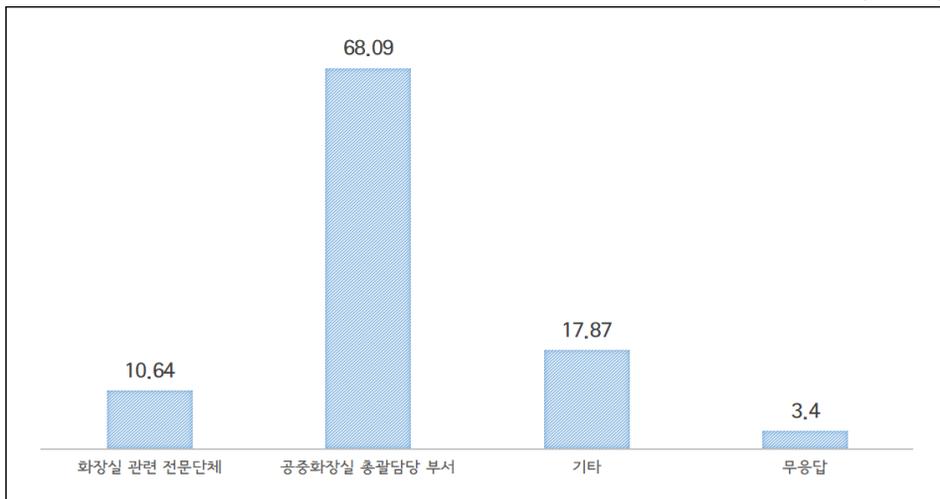
-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이 실시 중이라면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의 질문에 가장 높은 비율은 공중화장실 총괄담당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응답 총 수 235명 중 160명인 68.09%로 나타남
- 기타 응답이 17.87%로 그 다음으로 높았으며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라고 응답한 비율은 10.64%로 나타남

[표 4-17] 교육 담당 기관(교육 수행 시만 응답)

구분	응답수	비율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	25	10.64
공중화장실 총괄담당 부서	160	68.09
기타	42	17.87
무응답	8	3.4
총합	235	100

[그림 4-10] 관리인에 대한 교육 담당 기관

(단위: %)



□ 공중화장실 관리대장 기록 여부 (설문문항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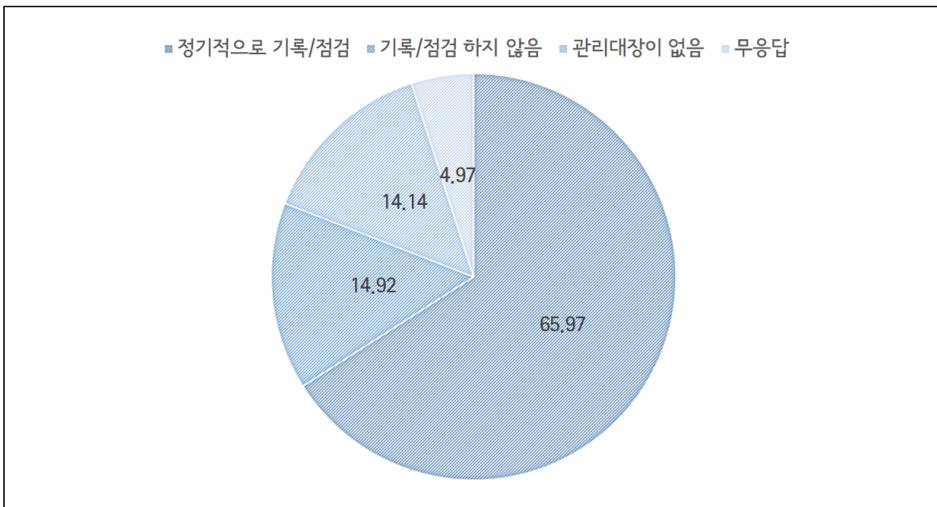
- 시설의 유지 관리 상황 및 정비 상황 등에 대한 공중화장실 관리대장을 기록하고 계십니까? 의 문항에 정기적으로 기록하고 점검하고 있다고 응답한 공무원은 65.97%로 과반 이상이 응답함
- 기록 및 점검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14.92%, 관리 대장이 없다고 응답이 14.14%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표 4-18] 공중화장실 관리대장 기록 여부

구분	응답수	비율
정기적으로 기록/점검	252	65.97
기록/점검 하지 않음	57	14.92
관리대장이 없음	54	14.14
무응답	19	4.97
총합	382	100.00

[그림 4-11] 공중화장실 관리대장 기록 여부

(단위: %)



□ 공중화장실 관련 업무 효율성 증진 위한 개선 필요영역 (문항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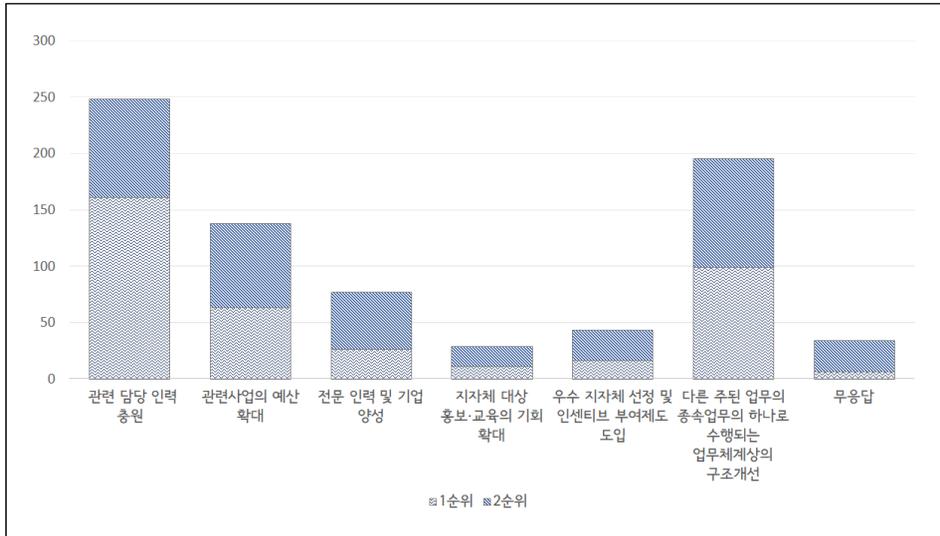
- 공중화장실 관련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점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에 대한 질문에 1순위는 '관련담당 인력 충원'이 42.15%로 가장 높았으며 2순위는 '업무체계상의 구조개선'이 25.13%로 가장 높은 비율 보임
- 공중화장실 업무 개선 필요 영역에 대한 응답 1순위는 관련 담당 인력 충원으로 전체의 42.15% 차지, 그 다음으로 업무체계상의 구조개선이 25.92% 순으로 높게 나타남. 그 외 관련사업의 예산 확대가 16.49%, 전문 인력 및 기업 양성이 6.81%, 우수 지자체 선정 및 인센티브 부여 제도 도입이 4.19%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자체의 홍보 및 교육 기회 확대가 2.88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공중화장실 업무 개선 필요 영역 2순위 응답을 살펴보면 업무체계상의 구조 개선이 25.1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관련 담당 인력 충원이 22.77%로 높게 나타남
- 따라서 공중화장실 업무 개선은 관련 담당 인력의 충원과 업무체계상의 구조개선, 관련사업의 예산 확대 순임을 확인함

[표 4-19] 공중화장실 업무 개선 필요 영역

구분	1순위		2순위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관련 담당 인력 충원	161	42.15	87	22.77
관련사업의 예산 확대	63	16.49	75	19.63
전문 인력 및 기업 양성	26	6.81	51	13.35
지자체 대상 홍보·교육의 기회 확대	11	2.88	18	4.71
우수 지자체 선정 및 인센티브 부여제도 도입	16	4.19	27	7.07
다른 주된 업무의 종속업무의 하나로 수행되는 업무체계상의 구조개선	99	25.92	96	25.13
무응답	6	1.57	28	7.33
총합	382	100.00	382	100.00

[그림 4-12] 공중화장실 관리대장 기록 여부

(단위: %)



[표 4-20] 업무 개선 영역에 대한 기타 의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계획에 대해 국비, 도비 지원 확대 필요

공중화장실 전담 인력 총원

공중화장실법 제3조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시설 중 공중화장실로 설치되지 않고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공중화장실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실제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집중 관리하여 행정력 낭비를 줄일 필요가 있음.

공중화장실은 현재 행안부 담당 업무로 공중화장실 신축 등 건축관련 업무가 주된 업무로 생각되며 유지관리는 각읍면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공중화장실 업무는 사실직이 담당 하는게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그리고 공중화장실 업무 뿐 아니라 다른 업무가 많아 중점 관리가 되고 있지 않는게 현실적임

업무의 특성상 중요도에서 떨어져 있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생각됨

전담 인력 총원 후 전담부서 업무 일원화 필요

전문성있는 인력으로 청소 및 시설관리가 되어야 함

화장실 소과부서는 여러 부서이며 업무의 관심도가 떨어져서 총괄부서에서 업무의 취합 및 사업의 진행이 어려움

3.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의 설문분석 결과

범죄발생 등으로부터 안전한 이용환경 확보 위한 조례 제정 여부 (설문문항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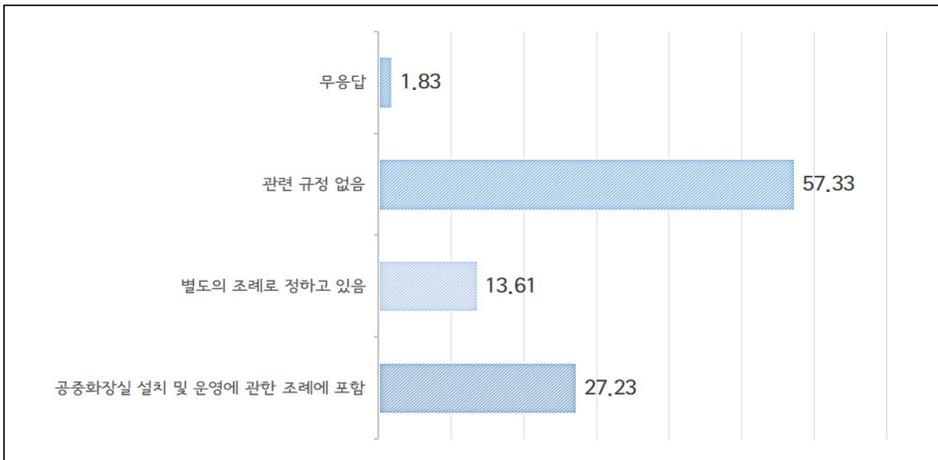
- 공중화장실의 안전한 이용환경 확보를 위한 조례가 재정 되었는지를 묻는 설문문항에 대해서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응답이 57.33%로 가장 높았음. 따라서 관련 규정의 재정이 시급하다는 것을 시사함
 - 다음으로 공중화장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포함되어있다는 응답이 27.23%, 별도의 조례로 정하고 있다는 응답이 13.61%로 나타남

[표 4-21] 안전한 이용환경 확보 위한 조례제정 여부

구분	응답수	비율
공중화장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포함	104	27.23
별도의 조례로 정하고 있음	52	13.61
관련 규정 없음	219	57.33
무응답	7	1.83
총합	382	100

[그림 4-13] 안전한 이용환경 확보 위한 조례제정 여부

(단위: %)



□ **범죄발생 등으로부터 안전한 이용환경 확보 위한 시책 마련 여부 (설문문항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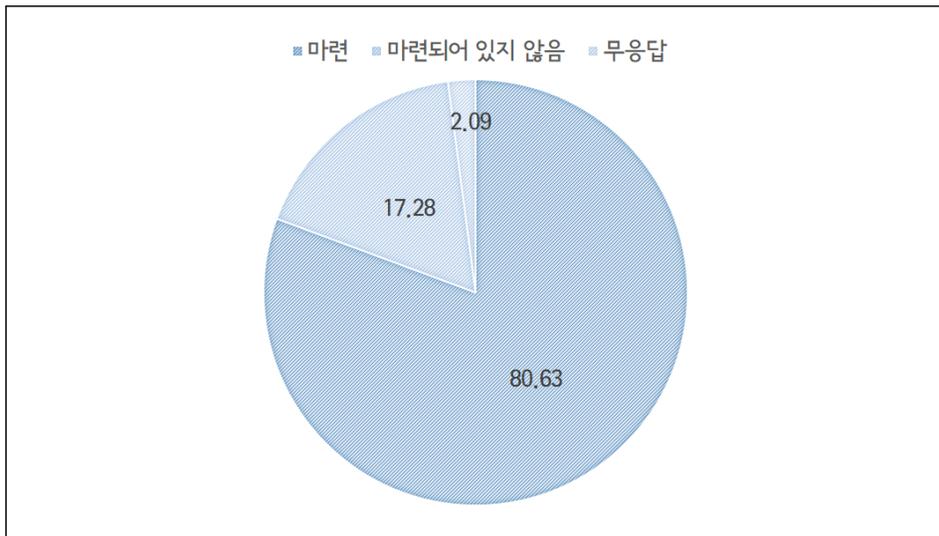
-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등 범죄발생으로부터 안전한 이용 환경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의 질문에 마련하고 있다는 응답이 80.63%로 매우 높은 비율을 나타냄
- 무응답 2.09%를 제외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응답은 17.23%로 나타남

[표 4-22] 안전한 이용환경 확보 위한 시책 여부

구분	응답수	비율
마련	308	80.63
마련되어 있지 않음	66	17.28
무응답	8	2.09
총합	382	100

[그림 4-14] 안전한 이용환경 확보 위한 시책 여부

(단위: %)



□ **안전한 이용환경 위해 시행 중인 시책(복수응답) (설문문항 1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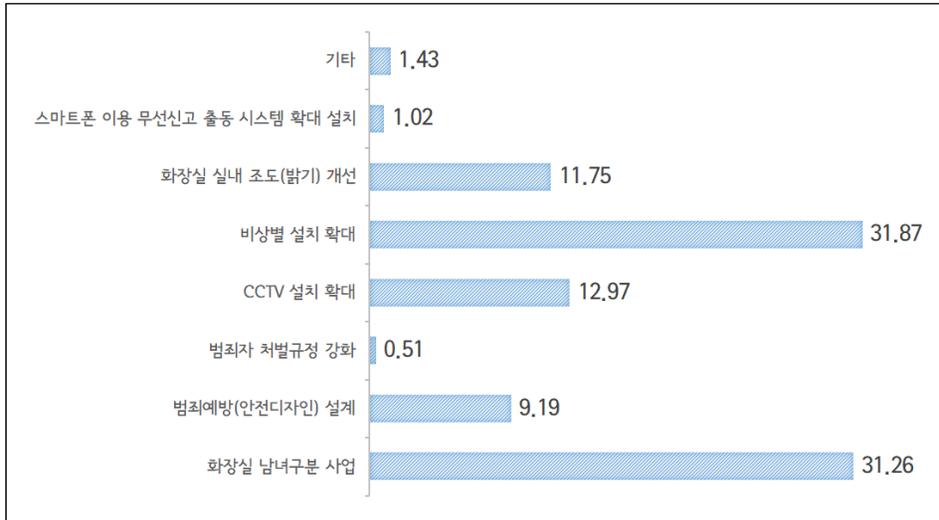
- ‘안전한 이용환경을 위해 시행중인 시책을 모두 체크 해주세요’ 의 문항에 대한 결과는 비상벨 설치 확대가 총합 979의 312명이 응답하여 31.8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화장실 남녀 구분사업이 31.26%로 높았음
- 다음으로 CCTV 설치 확대가 12.97%, 화장실 실내 조도 개선이 11.75%로 나타났으며 범죄예방 설계가 9.19% 스마트폰 이용 무선신고 출동시스템 확대 설치가 1.02%로 나타남. 가장 낮은 응답은 범죄자 처벌규정 강화가 0.51%로 가장 낮았음

[표 4-23] 안전 위한 시책 (복수응답)

구분	응답수	비율
화장실 남녀구분 사업	306	31.26
범죄예방(안전디자인) 설계	90	9.19
범죄자 처벌규정 강화	5	0.51
CCTV 설치 확대	127	12.97
비상벨 설치 확대	312	31.87
화장실 실내 조도(밝기) 개선	115	11.75
스마트폰 이용 무선신고 출동 시스템 확대 설치	10	1.02
기타	14	1.43
총합	979	100

[그림 4-15] 안전 위한 시책

(단위: %)



- 안전을 위하여 시행 중인 기타 의견으로는 경찰서와 연계하여 불법촬영카메라 합동 점검을 하고 있다는 응답이 존재
 - 대부분의 시책도 역시 불법촬영 기기 및 점검을 주로 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고 단순한 불법 촬영 장비 대여를 해준다거나 화장실 소모품을 지원한다는 응답도 존재함
 - 그 밖에 국민안심 공중화장실 선도사업을 추진하거나 취약 지구 및 개선 필요한 지구를 중심으로 개선 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 있다는 응답도 나타남
 - 화장실의 특성상 CCTV 설치가 어렵다는 의견이 존재하였으며 공중화장실 내 CCTV 및 비상벨 등 범죄 관련 업무는 경찰서로 일원화 해야한다는 의견 존재

[표 4-24] 안전 위해 시행 중인 기타 시책

경찰서와 연계하여 분기별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 합동 점검 실시
공중화장실 내 CCTV 및 비상벨 등 범죄 관련업무는 경찰서로 일원화 하도록 건의
국민안심 공중화장실 선도사업
물카알라미, 안심스크린
민간공중 및 개방화장실 소모품 지원
불법촬영 기기 점검
불법촬영 수사점검
불법촬영 여부를 경찰서 협조하에 수시로 확인하고 있음
불법촬영 장비대여
불법촬영 점검
불법촬영 점검 및 장비대여
불법촬영카메라 단속
비상벨 및 불법촬영카메라 점검
안심스크린 설치
유관기관과의 주기적 합동점검
취약 지구 및 개선필요 대상 지구 위주로 추진계획
화장실의 특성상 내부를 촬영할 수 있는 CCTV 설치가 어려워 한계가 있음

공중화장실 범죄발생으로부터의 안전확보 위해 필요한 정책 (설문문항 15)

- 공중화장실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 관련 문제 중 가장 개선이 필요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 질문에 범죄자 처벌규정 강화가 36.13%로 가장 높았음
- 다음으로 화장실 남녀구분 사업이 25.13%, CCTV 설치 확대가 14.4%로 나타남. 나머지 범죄예방 설계가 12.83%, 비상벨 설치 확대가 20%, 스마트폰 이용 무선시고 출동시스템 설치가 3.14%이며 화장실 실내 조도 개선이 0.79%로 가장 낮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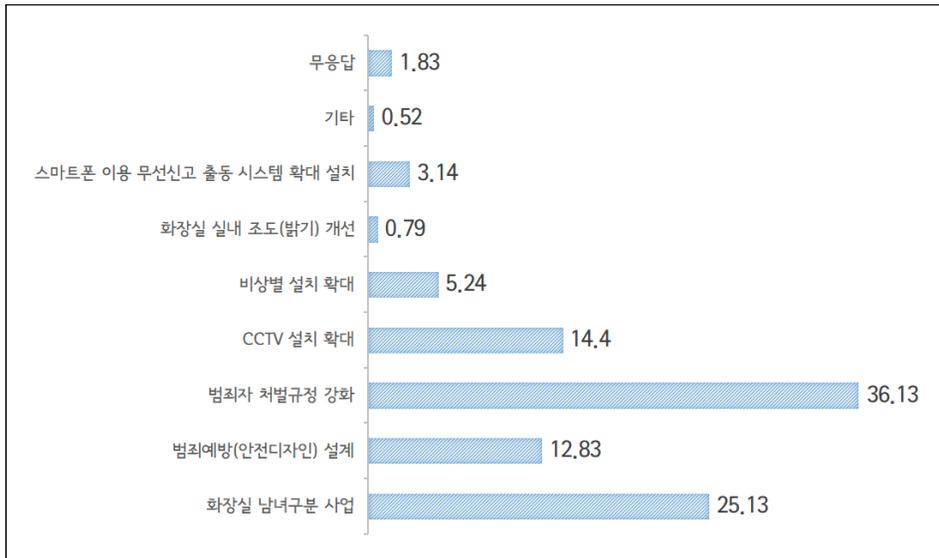
[표 4-25] 안전확보 위한 필요 정책

구분	응답수	비율
화장실 남녀구분 사업	96	25.13
범죄예방(안전디자인) 설계	49	12.83
범죄자 처벌규정 강화	138	36.13
CCTV 설치 확대	55	14.4
비상벨 설치 확대	20	5.24
화장실 실내 조도(밝기) 개선	3	0.79
스마트폰 이용 무선신고 출동 시스템 확대 설치	12	3.14
기타	2	0.52
무응답	7	1.83
총합	382	100

* 기타 필요 정책으로는 “사회적 인식확대 및 가정교육”, “시설물 건축 시 화장실 남녀구분 의무 규정 필요”, “올바른 사회가치 구현”이 있었음

[그림 4-16] 안전확보 위한 필요 정책

(단위: %)



□ 공중화장실 안전 문제 중 개선 필요 영역 (설문문항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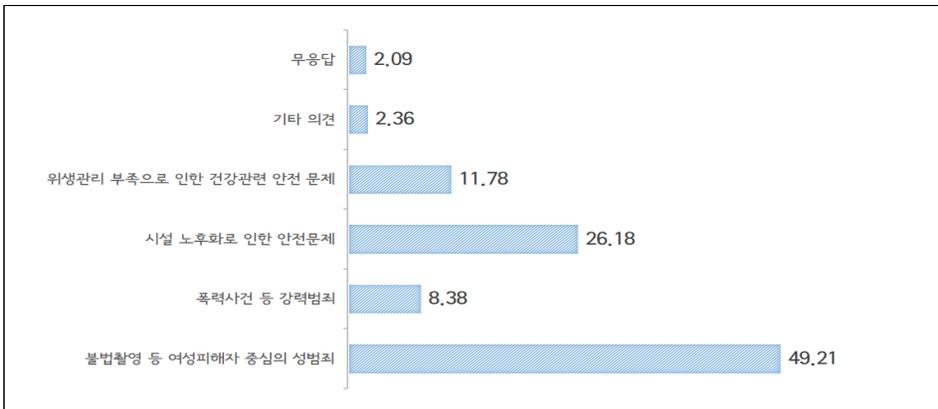
- 공중화장실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 관련 문제 중 가장 개선이 필요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의 설문문항에 대해 가장 높은 비율은 49.21%인 불법촬영 등 여성피해자 중심의 성범죄로 나타남
- 다음으로 시설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가 26.18%, 위생관리 부족으로 인한 건강관련 안전문제가 11.78%로 나타났음. 그 밖에 폭력사건 등 강력범죄 문제가 8.38%, 기타 의견은 2.36%로 나타남

[표 4-26] 공중화장실 안전 문제 중 개선 필요 영역

구분	응답수	비율
불법촬영 등 여성피해자 중심의 성범죄	188	49.21
폭력사건 등 강력범죄	32	8.38
시설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	100	26.18
위생관리 부족으로 인한 건강관련 안전 문제	45	11.78
기타 의견	9	2.36
무응답	8	2.09
총합	382	100

[그림 4-17] 공중화장실 안전 문제 중 개선 필요 영역

(단위: %)



□ **지자체 공중화장실 안전시설 설치 시 우선적인 고려가 필요한 장소 (설문문항 17)**

- 근무하고 계신 지자체에 위치한 공중화장실 내 안전시설 설치 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장소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의 질문에 공원 및 산책로라고 응답한 공무원이 52.88%로 과반수 이상이 응답하였음
- 다음으로 시장 상점가 등 내 공중화장실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2.77%, 관광단지 등 내의 공중화장실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0.47%였으며 도로 등 이동 및 교통 관련 장소라고 응답함 비율은 7.85% 역사 및 역사시설 내 공중화장실이라 응답한 비율은 3.4%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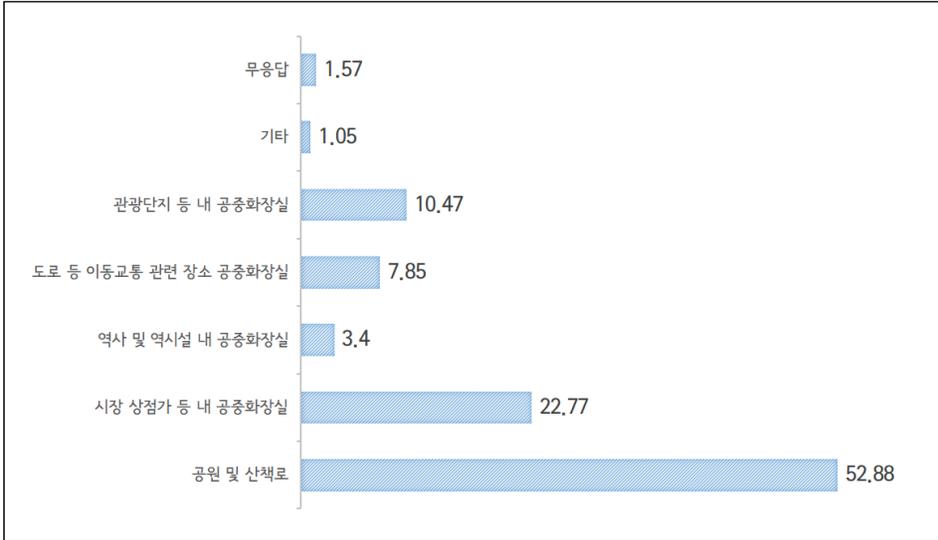
[표 4-27] 공중화장실 안전시설 설치 시 우선적인 고려가 필요한 장소

구분	응답수	비율
공원 및 산책로	202	52.88
시장 상점가 등 내 공중화장실	87	22.77
역사 및 역사시설 내 공중화장실	13	3.4
도로 등 이동교통 관련 장소 공중화장실	30	7.85
관광단지 등 내 공중화장실	40	10.47
기타	4	1.05
무응답	6	1.57
총합	382	100

* 기타 장소로는 “주유소, 휴게소 등 시설이 노후한 민간 공중화장실”, “인적이 뜸하고 외진 곳”,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보다 2000㎡이상 민간건축물 공중화장실 관리 중요”가 있었음

[그림 4-18] 공중화장실 안전시설 설치 시 우선적인 고려가 필요한 장소

(단위: %)



4. 개방화장실 수급확대 측면에서의 설문분석 결과

지자체 내 공중화장실 수급계획 및 관리방안 마련 여부 (설문문항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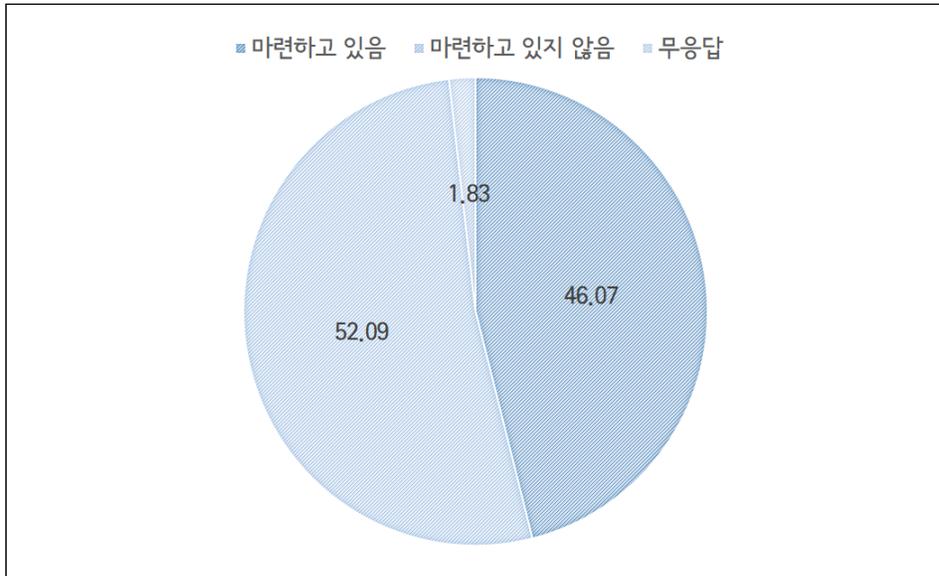
- 근무하고 계신 지자체에서 공중화장실 수급계획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라는 문항에 마련하고 있지 않다 의 응답이 52.09%로 높았음
- 마련하고 있다 의 응답수는 46.07%, 무응답은 1.83%로 큰 차이는 없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공중화장실 수급계획 및 관리방안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음
- 수급계획 및 관리방안이 최근 마련된 년도의 평균은 2017년으로 확인되었으며, 가장 빠른 곳은 2008년, 가장 늦은 곳은 2020년 마련됨

[표 4-28] 지자체 내 공중화장실 수급계획 및 관리방안 마련 여부

구분	응답수	비율
마련하고 있음	176	46.07
마련하고 있지 않음	199	52.09
무응답	7	1.83
총합	382	100

[그림 4-19] 지자체 내 공중화장실 수급계획 및 관리방안 마련 여부

(단위: %)



□ 공중화장실 수급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중 중요 분야 (설문문항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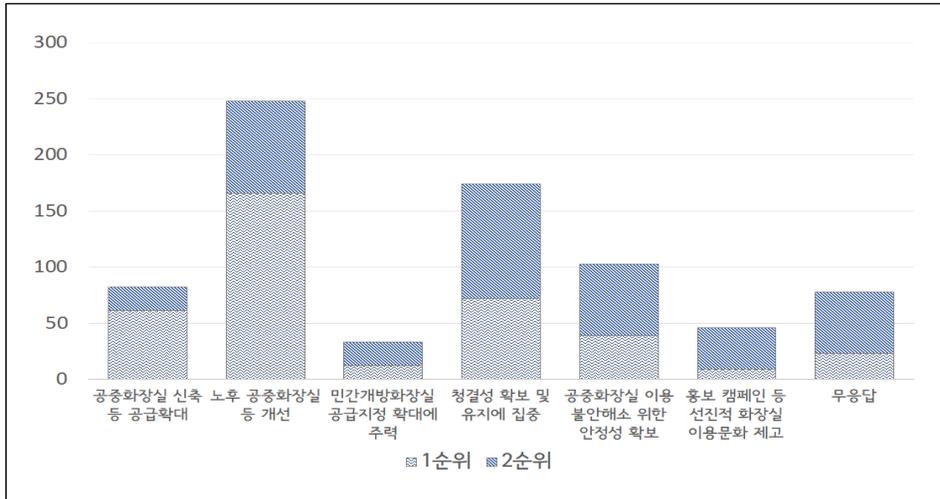
- 공중화장실 수급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를 순위로 분석한 결과 1순위와 2순위 모두 노후 공중화장실 등 개선으로 43.46%, 21.47%의 높은 비율을 나타냄
- 따라서 공중화장실 수급관리 방침으로 가장 중요한 분야는 노후 공중화장실 등 개선과 청결성 확보 및 유지라고 할 수 있음
- 1순위를 자세히 살펴보면 노후 공중화장실 등 개선이 43.46%, 다음으로 청결성 확보 및 유지 집중이 18.85%, 공중화장실 신축 등 공급확대가 15.97% 순으로 높게 나타냄
- 2순위는 노후 공중화장실 등 개선이 21.47%, 공중화장실 이용 불안해소 위한 안정성 확보가 16.75%로 높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음

[표 4-29] 공중화장실 수급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중 중요 분야

구분	1순위		2순위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공중화장실 신축 등 공급확대	61	15.97	21	5.5
노후 공중화장실 등 개선	166	43.46	82	21.47
민간개방화장실 공급지정 확대에 주력	12	3.14	21	5.5
청결성 확보 및 유지에 집중	72	18.85	102	26.7
공중화장실 이용 불안해소 위한 안정성 확보	39	10.21	64	16.75
홍보 캠페인 등 선진적 화장실 이용문화 제고	9	2.36	37	9.69
무응답	23	6.02	55	14.4
총합	382	100	382	100

[그림 4-20] 공중화장실 수급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중 중요 분야

(단위: %)



□ 현 공중화장실 공급의 수요 대비 수준 (설문문항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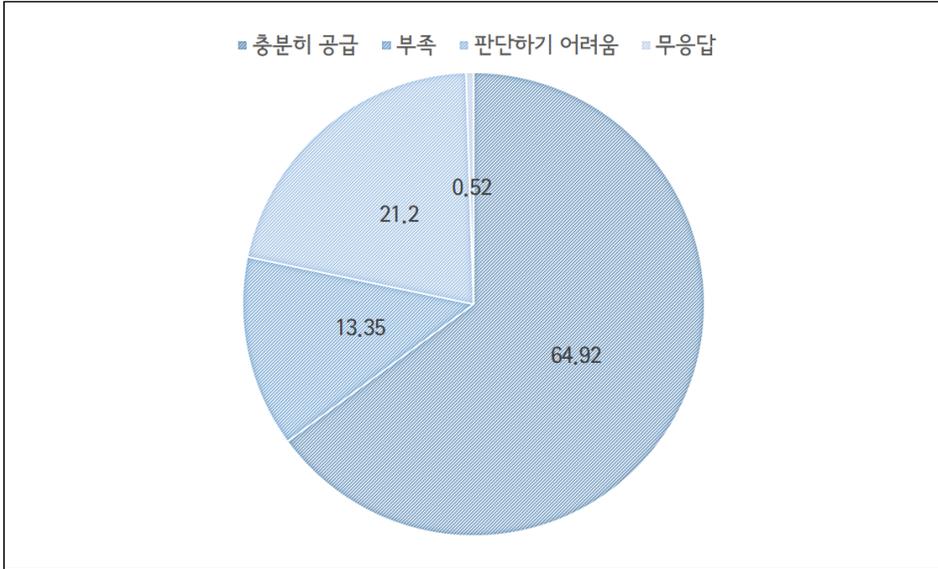
- 현재 공중화장실 공급이 수요에 비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의 질문에 설문대상 공무원의 절반을 넘는 64.92%가 충분히 공급되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 다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공무원은 21.2%로 부족하다고 응답한 공무원 13.35% 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표 4-30] 현 공중화장실 공급의 수요 대비 수준

구분	응답수	비율
충분히 공급	248	64.92
부족	51	13.35
판단하기 어려움	81	21.2
무응답	2	0.52
총합	382	100

[그림 4-21] 현 공중화장실 공급의 수요 대비 수준

(단위: %)



도심 내 공중화장실 수요 충족 위한 민간개방화장실 수급의 확대 필요 여부 (설문문항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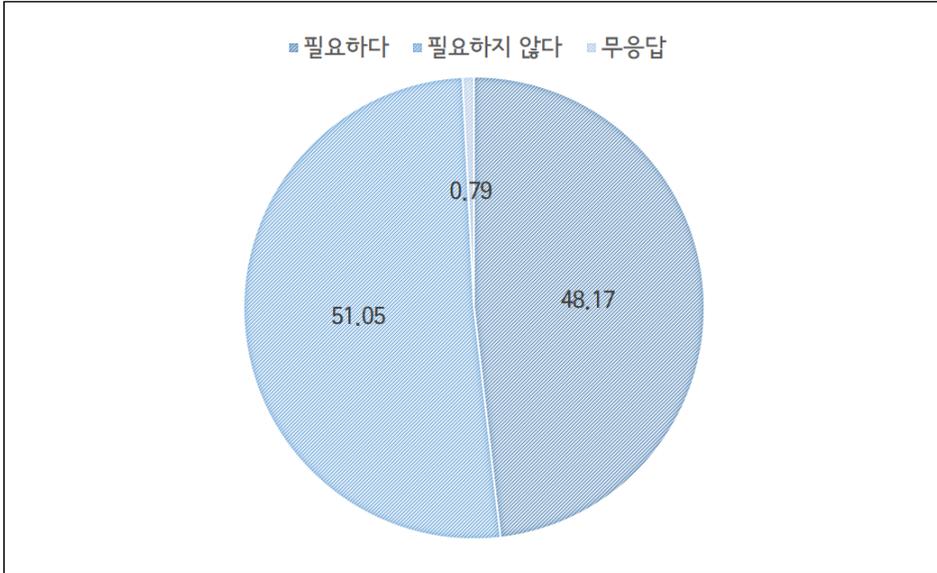
- 도심지 내 공중화장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민간개방화장실 수급 확대가 필요한지를 묻는 설문 문항에 대해서는 큰 차이는 나타내고 있지 않지만 필요하지 않다 의 응답이 51.05%로 필요하다는 응답 48.17%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났음

[표 4-31] 도심 내 공중화장실 수요 충족 위한 민간개방화장실 수급의 확대 필요 여부

구분	응답수	비율
필요하다	184	48.17
필요하지 않다	195	51.05
무응답	3	0.79
총합	382	100

[그림 4-22] 도심 내 공중화장실 수요 충족 위한 민간개방화장실 수급의 확대 필요 여부

(단위: %)



□ 민간개방화장실의 건물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관리운영비 지원 여부 (설문문항 21·설문문항 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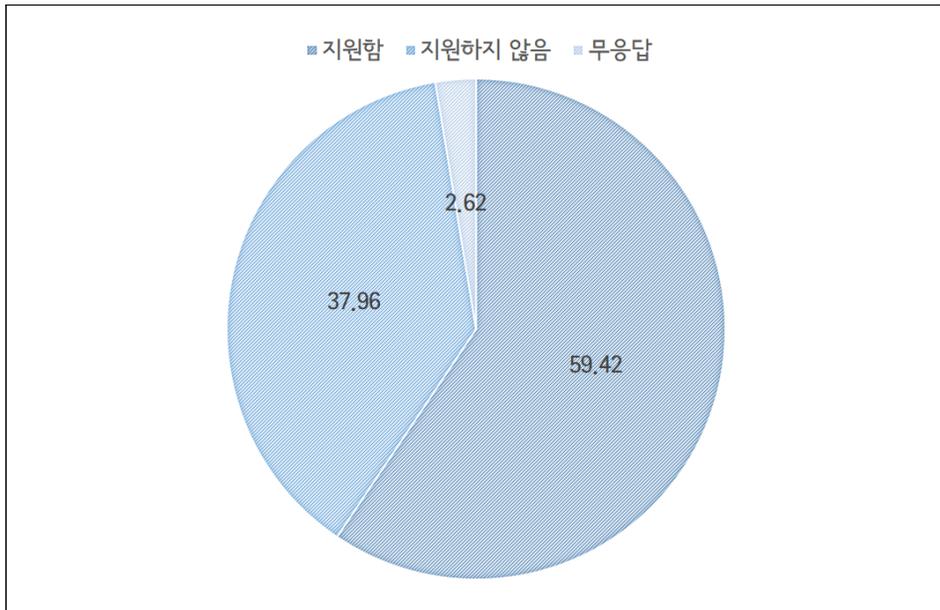
- 민간개방화장실이 위치한 건물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관리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의 설문문항에 지원하고 있다 의 응답자는 59.42%, 지원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37.96%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건물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관리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함
- 관리 운영비 지원 방식은 85.02%인 물품지원으로 85.02%로 현금 지원방식의 9.25%보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물품지원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음

[표 4-32] 민간개방화장실 소유자 대상 관리운영비 지원 여부 및 지원방식

지원여부	응답수	비율
지원함	227	59.42
지원하지 않음	145	37.96
무응답	10	2.62
총합	382	100
지원방식	응답수	비율
현금지원	21	9.25
물품지원	193	85.02
기타	11	4.85
무응답	2	0.88
총합	227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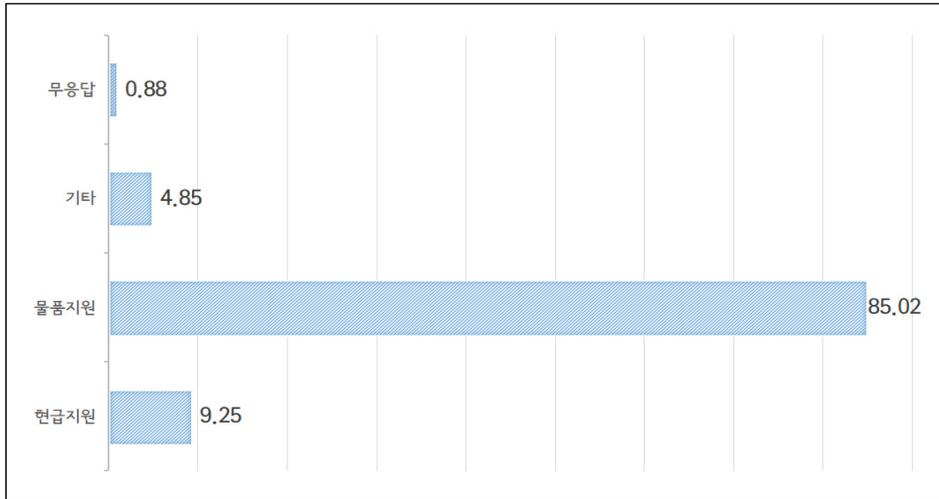
[그림 4-23] 민간개방화장실 소유자 대상 관리운영비 지원 여부

(단위: %)



[그림 4-24] 민간개방화장실 소유자 대상 관리운영비 지원 방식

(단위: %)



□ 민간화장실 대상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등의 자체점검 시 지원 여부 (설문문항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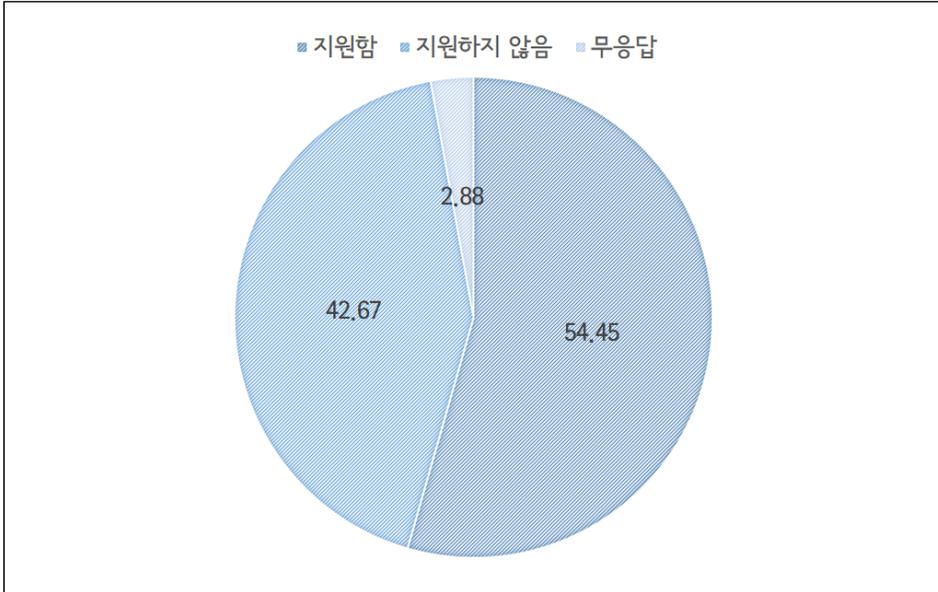
- 민간화장실 대상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등의 자체 점검을 위한 점검 장비 지원 여부를 묻는 설문문항에서는 지원하고 있다고 응답한 공무원의 수는 208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54.45%로 확인됨. 지원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수는 163명으로 42.67%를 차지
- 큰 차이는 보이고 있지 않으나 불법촬영기기 설치 자체검사 점검 장비 및 탐지기 등의 지원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조금 더 많은 것으로 해석 할 수 있음

[표 4-33] 민간 개방화장실 불법촬영기기 설치 자체검사 지원여부

구분	응답수	비율
지원함	208	54.45
지원하지 않음	163	42.67
무응답	11	2.88
총합	382	100

[그림 4-25] 민간 개방화장실 불법촬영기기 설치 자체검사 지원여부

(단위: %)



□ **현 민간개방화장실 지원 수준의 충분 여부 (설문문항 23)**

- 현재의 민간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원 수준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의 설문문항에 충분히 지원되고 있다는 응답은 52.88%,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43.46%로 설문에 응답한 공무원들 대부분은 현 지원 수준이 충분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166명의 공무원 중 지원방법은 유지하되 금액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체의 64.46%인 107명으로 확인되어, 과반 수 이상이 금액 상향 조정의견에 동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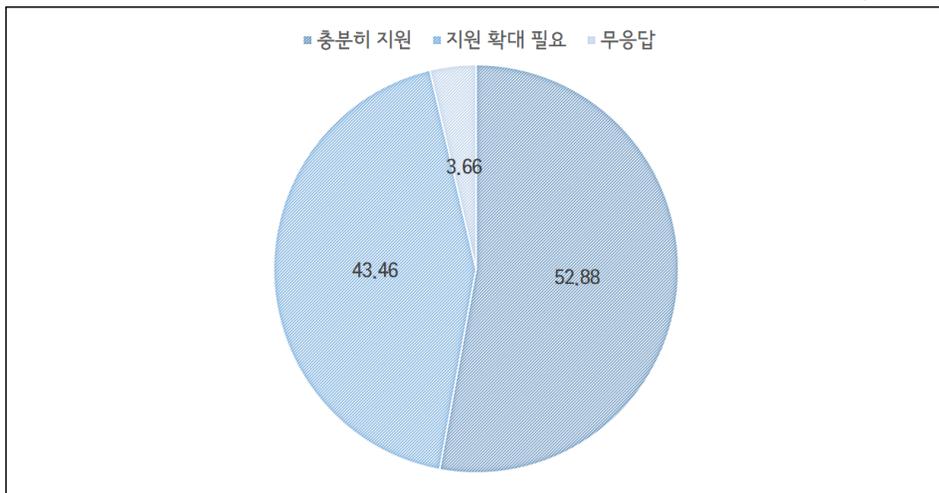
[표 4-34] 현 민간개방화장실 지원 수준의 충분 여부 및 확대필요 시 지원 방식

충분 여부	응답수	비율
충분히 지원	202	52.88
지원 확대 필요	166	43.46
무응답	14	3.66
총합	382	100
확대 시 지원방식	응답수	비율
지원방법은 유지하되 금액 상향 조정	107	64.46
기타	55	33.13
무응답	4	2.41
총합	166	100

* 지원방식 기타 의견중에는 시설유지/관리/운영 지원이 33명으로 가장 많았고, 청결관리 및 세제해택(각각 6명), 물품지원(4명), 안전시설물 지원(2명) 순이었음. 이 외에 “시행정 또는 해당부서 실적 자체를 위한 홍보(보도자료)성 지원 사업이 아니라, 지원대상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분야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또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측한 것과 달리 수요가 없어 집행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과감히 중단하고 정말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이나, “지자체별 매년 민간개방화장실을 추가로 소수를 지정하고 지정된 경우 사용빈도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수준으로 지원되어야 함(즉, 시설 리모델링, 필요물품 전체 지원, 청소인력 배치 등)”와 같은 의견이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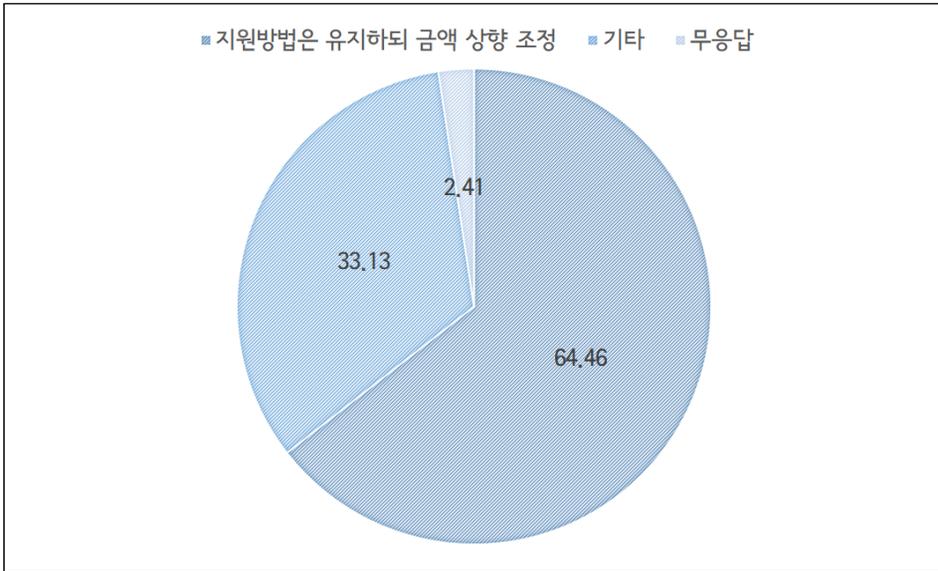
[그림 4-26] 현 민간 개방화장실 지원 수준의 충분 여부

(단위: %)



[그림 4-27] 확대시 지원방식

(단위: %)



□ 지자체의 민간개방화장실 지정확대 사업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소유주의 취소 이유에 대한 의견 (설문문항 24)

-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민간개방화장실 지정확대 사업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건물의 소유주가 왜 개방을 취소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 질문에 공무원 300명인 78.53%가 위생상태 악화, 시설파손 등으로 인한 관리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음
- 물품 및 보조금 지원의 부족이 10.47%, 화장실 개방으로 인해 성폭행, 시비, 폭력 등의 사고로부터의 안전성 확보의 어려움이 4.19%로 나타남
- 그 밖에 의견으로는 개방화장실 운영에 따른 경제적 이익 창출 효과가 미비하기 때문이라는 의견, 관리 및 유지비용에 대한 부담, 자기소유 화장실의 공공 이용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라고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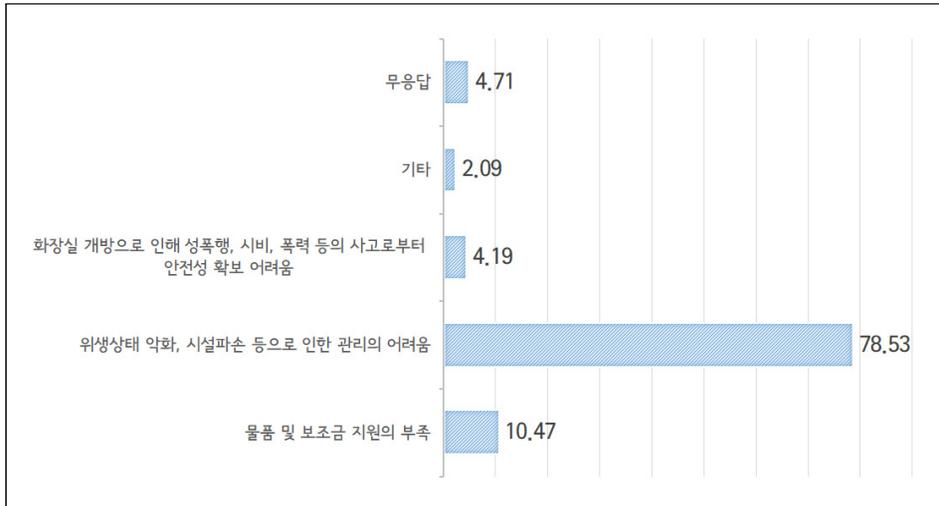
[표 4-35] 민간 개방화장실 소유주의 취소 이유

구분	응답수	비율
물품 및 보조금 지원의 부족	40	10.47
위생상태 악화, 시설파손 등으로 인한 관리의 어려움	300	78.53
화장실 개방으로 인해 성폭행, 시비, 폭력 등의 사고로부터 안전성 확보 어려움	16	4.19
기타	8	2.09
무응답	18	4.71
총합	382	100

* 기타 의견으로는 “개방화장실 운영에 따른 경제적 이익창출효과 미비”, “관리 및 유지비용에 대한 부담”, “자기소유 화장실의 공공 이용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음

[그림 4-28] 현 민간 개방화장실 지원 수준의 충분 여부

(단위: %)



□ 민간개방화장실 수급 확대 위한 필요 영역 (설문문항 25)

- 민간개방화장실 수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 설문문항에 1순위는 물품 및 보조금 지원의 확대가 47.38%로 많았으며 2순위는 관련 보조금 지원 확대로 22.77%로 확인됨. 이를 통해 민간개방화장실 수급을 위해서는 물품 및 예산 지원이 시급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음
- 자세히 살펴보면 1순위 중 물품 및 보조금 지원 확대가 47.38%, 지자체 차원에서 청소관리 인력 지원이 19.38%, 관련 보조금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공무원의 응답은 15.97%로 나타났음
- 2순위의 경우 관련 보조금 지원 확대가 22.77%, 물품 및 보조금 지원 확대가 19.37%, 지자체 차원에서 청소관리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18.59%로 나타났음
- 따라서 물품 및 보조금 지원확대, 지자체 차원에서 청소관리 인력지원, 관련 보조금 지원 확대 순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함
- 기타 의견으로는 비개방 민간화장실이라고 하더라도 시민이 사용하는 상업시설이며 명백히 공중화장실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 지원 및 관리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음

[표 4-36] 민간개방화장실 수급 확대 위한 필요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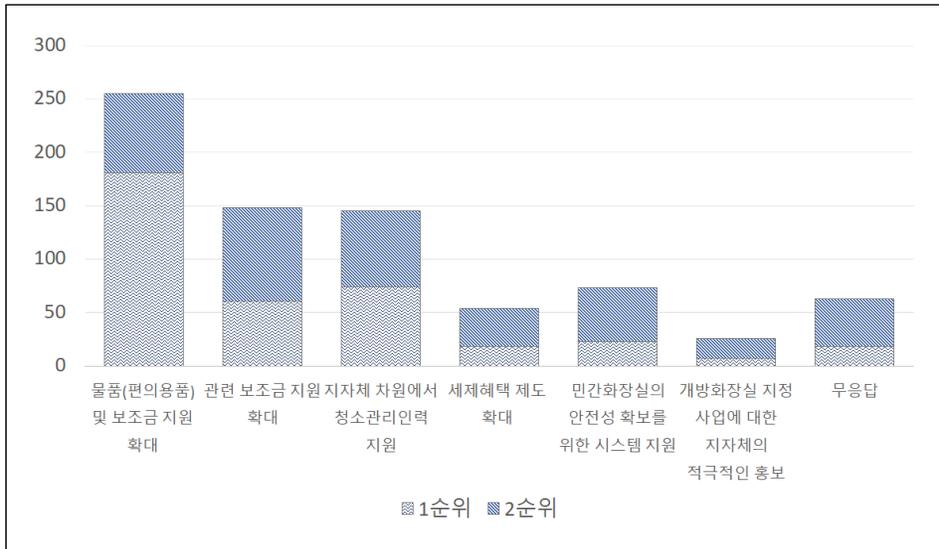
구분	1순위		2순위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물품(편의용품) 및 보조금 지원 확대	181	47.38	74	19.37
관련 보조금 지원 확대	61	15.97	87	22.77
지자체 차원에서 청소관리인력 지원	74	19.37	71	18.59
세제혜택 제도 확대	18	4.71	36	9.42

구분	1순위		2순위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민간화장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지원	23	6.02	50	13.09
개방화장실 지정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	7	1.83	19	4.97
무응답	18	4.71	45	11.78
총합	382	100	382	100

* 기타 의견으로는 “순수 민간영역의 대부분이 화장실을 개방하고 싶어 하지 않는 현실을 직시하고, 비개방 민간화장실이라고 하더라도 시민이 사용하는 상업시설이며 명백히 공중화장실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청결(비품구비, 소독 청소 등)하고 안전한 화장실(비상벨 설치 등)이 되기 위한 정책(점검과 지원의 근거)이 마련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이 있었음

[그림 4-29] 현 민간 개방화장실 지원 수준의 충분 여부

(단위: %)



□ 민간 개방화장실 지정확대 사업 홍보 방식 (설문문항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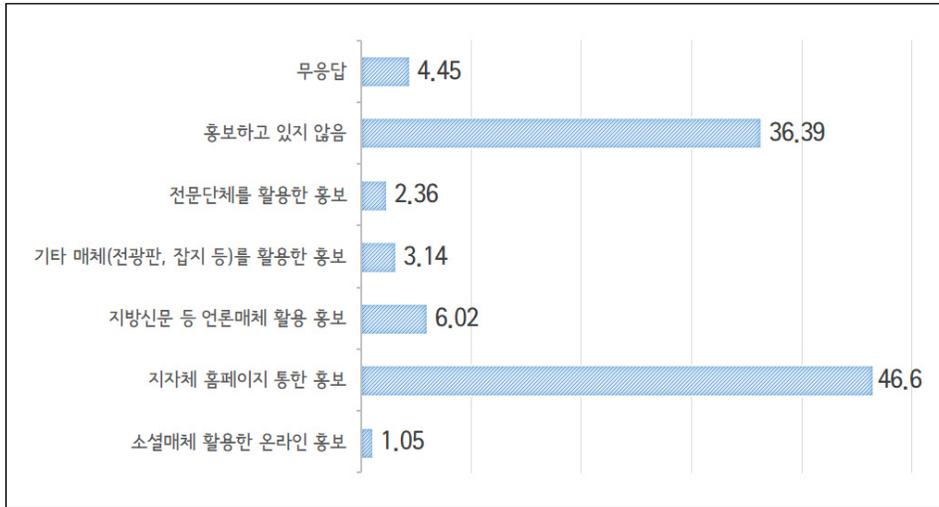
- 민간개방화장실의 개인 소유 시설물(건물주)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를 묻는 설문 문항에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고 응답한 공무원은 46.6%로 가장 많았음
- 홍보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공무원 수가 139명인 36.39%로 홍보를 하고 있다는 응답 다음으로 높았음. 따라서 민간 개방화장실 지정확대 사업의 홍보에 대한 의지와 방법의 다양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홈페이지 홍보 외에 지방신문 등 언론매체 활용 홍보가 6.02%, 기타 매체를 활용한 홍보가 2.36%로 나타남

[표 4-37] 민간 개방화장실 지정확대 사업 홍보 방식

구분	응답수	비율
소셜매체 활용한 온라인 홍보	4	1.05
지자체 홈페이지 통한 홍보	178	46.6
지방신문 등 언론매체 활용 홍보	23	6.02
기타 매체(전광판, 잡지 등)를 활용한 홍보	12	3.14
전문단체를 활용한 홍보	9	2.36
홍보하고 있지 않음	139	36.39
무응답	17	4.45
총합	382	100

[그림 4-30] 현 민간 개방화장실 지원 수준의 충분 여부

(단위: %)



공중화장실 관리 및 점검 위한 상시적 협력체계 구축 여부 (설문문항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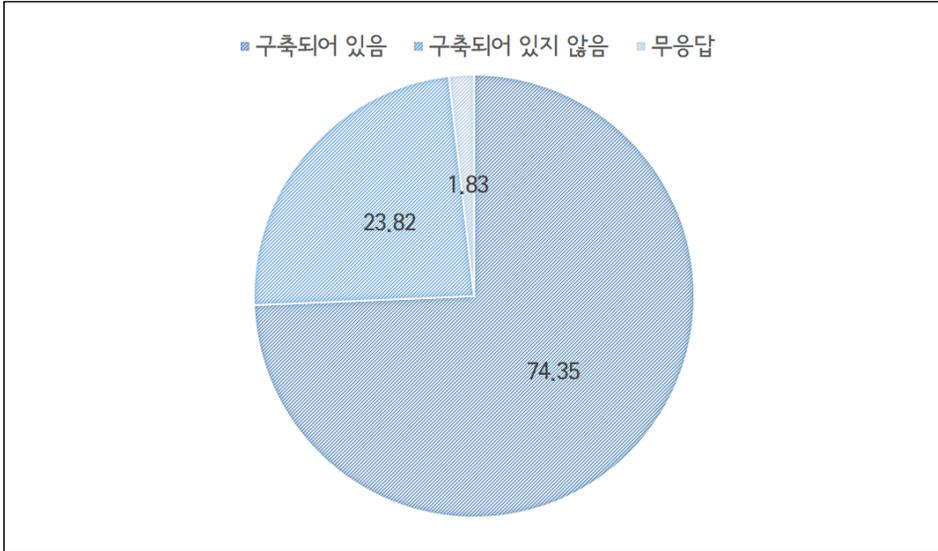
- 공중화장실 관리 및 점검을 위한 지자체, 경찰서, 관련 단체 등과의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까? 의 설문문항에 구축되어 있다고 응답한 공무원은 74.35%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협력체계 구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구축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한 공무원도 23.82%로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한 지자체도 존재함

[표 4-38] 공중화장실 관리 및 점검 위한 상시적 협력체계 구축 여부

구분	응답수	비율
구축되어 있음	284	74.35
구축되어 있지 않음	91	23.82
무응답	7	1.83
총합	382	100

[그림 4-31] 공중화장실 관리 및 점검 위한 상시적 협력체계 구축 여부

(단위: %)



□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 여부 (설문문항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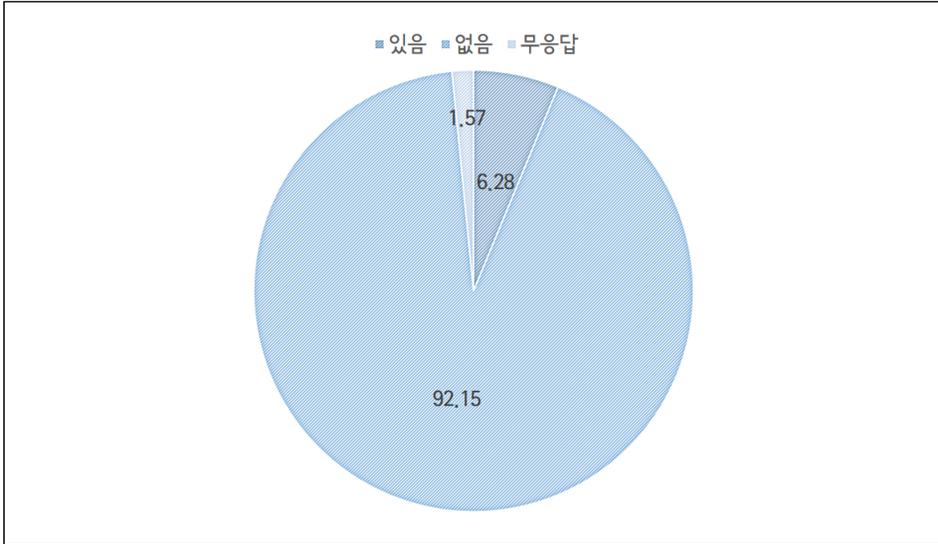
-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지정 관리를 위해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를 두고 있습니까? 의 질문에 92.15%의 공무원들이 없다고 응답함
- 공중화장실 운영자문회가 있다고 응답한 공무원은 6.28%로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음

[표 4-39]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 여부

구분	응답수	비율
있음	24	6.28
없음	352	92.15
무응답	6	1.57
총합	382	100

[그림 4-32]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 여부

(단위: %)



제2절 지자체 개방화장실 수급주체(건물주) 의견조사

1. 심층인터뷰(Focused on In-depth Interview) 조사개요

□ 조사목적

- 「개방화장실 지정운영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한 경험이 있는 수급주체를 대상으로 민간 개방화장실 수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조사 시행
 - 민간개방화장실 공급 관리 측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애로사항, 참여 동기,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의견조사 후 제도개선방안 도출

□ 조사방법 및 조사대상

- 조사방법
 - 동질성(「민간 개방화장실 지정운영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했던 이력이 있는 민간 개방화장실 수급주체)을 보이는 관계자를 직접 찾아가 의견을 청취하는 기법인 심층인터뷰(Focused on In-depth Interview) 시행
 - 2020년 5월 20일~21일까지 관계자를 직접 찾아가 심층인터뷰 실시하였으며 구조화된 질문지를 인터뷰 대상자들에게 사전에 전달 후 심층인터뷰 진행
- 조사(인터뷰)대상자 선정방법
 - 인터뷰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의도적 표집방법(purposive sampling) 사용
 - 본 분석은 비확률적 표집 중 하나인 의도적 표집방법(purposive sampling)을 적용하여 「민간 개방화장실 지정운영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했던 이력을 가진 사람을 수소문하여 최종 3명의 인터뷰 대상자 선정
 - 의도적 표집방법(purposive sampling)은 탐색적인 연구를 수행하는데 적합하며, 특정 연구주체에 대한 연구 분석결과가 결여되어 있는 상황일 경

우 확률적 표집방법보다 의도적 표집방법이 더 효과적으로 분석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음(전석호, 1991)

○ 조사(인터뷰)대상자 특징

- 인터뷰 대상자1은 지자체에서 지정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문화의집 건물에 위치한 개방화장실 운영 사례로서 유동인구가 많은 재래시장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개방화장실 개방시간은 오전 9:30~오후 20:00으로 운영
- 인터뷰 대상자2은 「민간 개방화장실 지정운영 사업」에 참여했다가 현재는 참여를 철회한 관계자로서 공공기관 및 상가지역이 밀집한 신도시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특히 점심시간 및 저녁시간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개방화장실 지정 운영 당시 24시간 개방하여 운영함
- 인터뷰 대상자3은 아파트가 밀집한 주거지역의 식당내에 위치한 개방화장실 사례로, 인터뷰 대상자가 운영 중인 식당이 모범업소로 지정받을 당시 지자체의 권유로 「민간 개방화장실 지정운영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현재 까지 참여 중

[표 4-40] 인터뷰 대상자 특징

인터뷰 대상자	연령	성별	인접 범위	개방 시간	건물의 연면적	현재 참여여부	참여 계기	참여 기간
인터뷰 대상자1	51세~60세	여성	재래시장 내위치	9:30-20:00	415m ²	참여중	공익 기여	5년이상
인터뷰 대상자2	31세-40세	남성	상가지역내 위치	24시간 개방	450m ²	참여 철회	청소유지 관리비용 절약	1년이하
인터뷰 대상자3	31세-40세	남성	주거지역내 위치	11:00-22:00:	433m ²	참여중	지자체 권유	3년이상

□ 조사의 방향성

- 개방화장실 운영 관리 실태에 대한 다각도 분석을 통해서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는데 활용
 - 민간 개방화장실 수급주체인 건물주를 대상으로 민간참여자의 애로사항 및 참여 동기에 관한 의견 조사 후 개선필요사항 도출

□ 조사내용

- 개방화장실 이용자들로부터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의견조사
 - 건물의 청소 관리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고 하루에 몇 번 정도 화장실 상태를 점검하는지에 대한 실태조사
 - 「개방화장실 지정운영 사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에 대한 의견 청취
 - 「개방화장실 지정운영 사업」에 참여를 중단에 철회한 이유에 대한 의견 청취
 - 개방화장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용자로부터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한 의견조사
 - 「개방화장실 지정운영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조사
 - 「개방화장실 지정운영 사업」에 참여한 이후에 개방화장실 내 안전에 관련된 사고를 경험한 유무와 안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
- 정부지원의 측면
 - 정부에게 지원받는 용품에 대한 실태와 이것이 충분한 지원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조사
 - 개방화장실 지정을 확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조사
 - 개방화장실 지정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지자체)에게 요구하고 싶은 사항에 대한 의견청취

2. 심층인터뷰(Focused on In-depth Interview) 분석결과

1) 개방화장실 이용자로부터 발생하는 문제점 측면

□ 화장실 청소관리 실태

- 화장실 청소관리는 크게 공공관리 근로자 대행, 청소대행업체에게 위탁, 본인이 직접 수행하여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남
 -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해 시(지자체)에서 지정되어 청소년문화의집(공공) 건물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개방화장실의 경우에는 공공근로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어 주5회 청소인력의 도움으로 청소관리 유지
 - 상가 밀집지역에 위치한 (민간소유)건물 내의 개방화장실의 경우는 민간 청소업체의 대행으로 청소관리가 유지되고 있으며 비용절감 차원에서 같은 구역에 위치한 상가건물의 경우 보통 하나의 청소업체와 여러 개의 건물이 같이 계약되어 하나의 건물당 일평균 2시간 이내로 청소관리 진행되는 실정
 - 본인 소유의 건물인 식당 안에 위치하고 있는 개방화장실인 경우 본인이 직접 청소관리 수행

□ 참여계기 및 참여철회 이유

- 「개방화장실 지정운영 사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공익기여, 청소관리비용절감, 지자체의 권유인 것으로 나타남
 - 시(지자체)에서 지정되어 운영 중인 공공건물이면서 유동인구가 많은 재래시장 내에 위치하고 있는 사례의 경우 위치상 많은 사람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하는 공익기여의 차원에서 「개방화장실 지정운영 사업」에 참여
 - 민간건물주의 경우 청소관리비용 절감의 차원에서 사업에 참여했으며, 식당내에 위치하고 있는 개방화장실의 경우 모범업소로 지정받을 당시 지자체의 권유로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남
- 「개방화장실 지정운영 사업」 참여철회이유

- 상가 밀집지역에 위치한 건물내의 개방화장실의 경우는 청소대행업체의 대행으로 청소관리가 유지되고 있는 실정에서 개방화장실 참여로 인해 많은 유동인구가 화장실을 이용하는 상황의 발생으로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비용보다 더 많은 청소관리 비용부담 발생하고 상가건물의 관리비용 절감 차원에서 참여철회
- 상가건물입주자, 상가건물 이용고객(손님) 이외에 많은 유동인구가 건물내의 화장실을 수시로 사용함으로써 청결유지, 시설파손 등에 대한 불편 호소 증가로 참여 철회

[표 4-41] 참여계기 및 참여철회 이유

참여계기	참여철회 이유
시민들의 편의성 제공 측면에서 공익기여	지원비용보다 추가발생비용이 더 큼
청소관리비용 절감	시설파손 문제 존재
지자체의 권유	건물입주자들이 불편 호소

□ 이용자로부터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점 및 불편사항

○ 문제점

- 개방화장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지저분한 이용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건물 및 화장실 낙후되었기 때문에 많은 유동인구들이 화장실 사용할 경우 시설파손 및 고장의 빈도 또한 동시에 증가하여 추가관리비용 발생
- 민간건물의 개방형 화장실과 같은 경우 청소 용역 업체를 계약해서 짧은 시간에 청소 하고 다녀가는 실정인데, 24시간 개방으로 인해 수시로 청결상태 유지 위해 새로운 인력을 고용해야하는 부분이 새로운 비용문제로 직결되고, 이 경우 건물전체의 관리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건물입점 관계자들의 불편사항 증가

○ 불편사항

- 화장실 내부 난방시설 고장으로 겨울 동안 잦은 동파가 발생하고 고장난 난방기를 수리 할 경우 자부담이 되기 때문에 수리 어려운 실정이며 동시에 동파로 인해 공과금(수도요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고충
- 불편사항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개방화장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 개방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방문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실정이고 주로 식당에 방문하는 손님들이 개방화장실을 이용

[표 4-42] 문제점 및 불편사항

문제점	불편(우려)사항
지저분한 이용	겨울시즌 잦은 동파문제로 수리비용 발생
추가관리비용발생	공과금(수도요금) 부담
시설파손 문제 심각	접근성 떨어져 사용자 거의 없는 실정

□ 안전관리

- 화장실 내 불법촬영물 설치에 대해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지원 부재
 - 불법촬영물 설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를 대여해주는 방식보다는 전문가 또는 관계자가 직접 개방화장실로 방문하여 설치 유무를 정기적으로 확인해 주는 지원 필요하다는 의견
-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남녀 출입구가 분리되어 운영되어 질 수 있도록 100%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 개방화장실 내에 시설파손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파손된 시설로 인해 이용자가 찰과상과 같은 피해를 본 경우 피해보상에 관련된 책임소재 및 보상범위 불분명

[표 4-43] 문제점 및 불편사항

안전 관련된 사고	필요사항
물카설치	물카설치 유무 확인 지원 필요
남녀공용 화장실내의 안전사고	남녀 출입구 분리사업 확대 필요
기물파손을 발생한 안전사고	피해보상 관련 책임소재 및 보상범위 명확화

2) 정부지원의 측면

지원용품 현황

- 현재 쓰레기봉투(50리터)와 화장지를 분기별로 지원받고 있지만 청결한 개방화장실을 유지관리 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지원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
 - 현금지원보다는 청소용품(청소세제, 소독용품, 위생용품, 방향제 등)에 관련된 용품지원을 더 선호
 - 분기별 지원보다는 월별 지급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

지정확대 위한 필요사항

- “건물의 소유주에게 개방화장실 지정을 확대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공과금(수도세 전기세 등) 지원, 청소인력 배치, 물품지원확대로 응답함
 - 민간에서 화장실 개방을 피하는 이유가 사용자들의 지저분한 이용이니 만큼 청결한 화장실이 유지될 수 있도록 화장실 청소용품을 대폭적으로 지원 하고, 청소관리 인력을 지원해주는 사항이 필요하다는 의견 보임
 - 공과금지원혜택에 대한 의견은 필요하다는 측과 민간참여의 유도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 동시에 존재
 - 개방형 화장실 이용자들이 정확하게 물을 얼마나 쓰는지 계량하는게 어렵기 때문에 공과금 지원혜택보다는 유지관리인력지원, 안전과리 시스템 지원, 시설개선비 지원이 더 실질적으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요인

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의견 보임

- 민간 건물에 입점한 사람들의 경우 개개인의 손익 계산이 맞지 않은 경우 민간 개방형 화장실 참여 및 유도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실정을 반영해 「개방화장실 지정운영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민간의 건물주(수급주체)들에게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지원책에 대한 고민 필요

□ 기타사항

- ICT 기술접목을 통한 안전한 개방화장실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도입에 대한 민간수급주체(건물주)들의 의견
 - ICT기술 접목하여 화장실 이용자들을 인증하고 사용하는 방식이 진행 되려면 관리업체나 기술 관리와의 협업이 필요한데, 정부는 관리업체, 건물주, 사용자, 입점자들의 사이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 나타냄
 - 민간 건물의 관리인력의 경우 적은 인건비로 일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와중에 ICT 기술이 적용된 기술적 시스템이 생기면 또 다른 관리 업무가 생기는 것이 현실. 또한 새로운 시스템 도입으로 관리비가 상승하고, 그로 인해 건물 입점자들의 불만이 증가하는 등 다른 문제 역시 파생될 수 있다는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청소인력 투입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효과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는 의견 팽배
 - 민간 화장실 개방 유도보다는 공공화장실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접근이 더 효율적일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개방화장실 확대를 유도해야한다면 청소인력을 동시에 지원해주는 정책마련이 필요할 것 이라는 의견보임

제3절 시사점 도출

1. 지자체 공중화장실 담당공무원 의견조사 종합

□ 공급관리체계 측면

- 조직체계상의 공중화장실 전담부서 부재
 - 공중화장실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부서에서 설치하는 경우와 사업추진부서에서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설치부서와 관리부서의 이원화로 혼란 발생
 - 공중화장실 관리부서가 일원화 되어 있지 않아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개방화장실 지정은 관련 조례가 있지만 실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거의 없는 실정
-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에 대해 총괄적으로 관리 담당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라는 질문에 환경과 관련된 조직에서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4.39%로 가장 많았음
 - 구체적으로 경제문화국-환경보호과, 경제개발국-환경보호과, 교통환경국-환경위생과, 복지생활국-환경위생과 등에서 관련업무 담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규 제3조의 적용범위에 의하여 공중화장실 허가, 설치 관리 등에 대하여 협조하는 부서를 묻는 질문에 건축과, 건축허가과, 건축지적과 등과 같이 건축물 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와의 협조가 존재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11.25%로 가장 높음
-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안전한 화장실 설치 및 관리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지에 대한 설문문항에 대해 '함께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2.2%로 매우 높게 나타남
 - 화장실 비상벨, CCTV 설치 등 안전한 화장실 설치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서로는 생활안전교통과, 건설도시국-안전재난과, 안전건설과, 안전건설교통국-안전총괄과, 안전건설국-안전도시과 등으로 응답

- 반면에 가족행복과, 경제녹지과, 경제산업과, 산림과, 자치행정국_행정지원과로 응답한 비율도 존재해 안전한 화장실 설치 및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조직)의 부재와 관련업무의 체계성 및 전문성 부족을 예측할 수 있음
- 허가·설치와 관리의 이원화된 업무구조에 대해 비효율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3.14%로 일원화가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비율 높음
 - ‘일원화된 조직체계 하에서 운영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는 의견에 대한 주된 이유로는 허가과 관리가 분리되면 중복관리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부서 간 원활하지 못한 협업이 발생되어 업무 추진 어려움이 따르며 공중화장실의 설치부서와 관리부서를 분리하여 운영할 경우 민원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분명
 - ‘일원화된 조직체계 하에서 운영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는 의견에 대한 주된 이유로는 일원화된 하나의 전담부서에서 공중화장실에 관련된 업무를 일괄적으로 관리 처리하기에는 지역내 공중화장실 수가 너무 많으며,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리를 일원화된 조직 구조 하에서 운영할 경우, 인력, 예산 등이 낭비될 수 있다고 응답
- 지자체의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방식과 담당 공무원이 느끼는 어려움
 - 지자체의 공중화장실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되고 있으며 (49.89%) 위탁 및 직영관리를 혼합적 방법을 사용해 관리하는 지자체도 존재(23.37%)
 - 현재의 유지관리 방식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으로는 공중화장실 개수는 증가하고 이에 따른 관리도 엄격해짐으로 인해 공중화장실 관리부서의 업무 과다가 발생하고 있고, 신규시설 요청에 따른 예산 및 운영비 확보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대다수
- 공중화장실 관련 업무 효율성 증진 위한 개선 필요영역
 - 공중화장실 관련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점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에 대한 질문에 1순위는 ‘관련담당 인력 충원’이 42.15%로 가장 높았으며 2순위는 ‘업무체계상의 구조개선’이 25.13%로 가장 높은 비율 보임

□ 안전성 확보 측면

- 공중화장실의 안전한 이용환경 확보를 위한 관련 조례 부재
 - 공중화장실의 안전한 이용환경 확보를 위한 조례가 재정 되었는지를 묻는 설문문항에 대해서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응답이 57.33%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등 범죄발생으로부터 안전한 이용 환경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의 질문에 마련하고 있다는 응답이 80.63%로 매우 높은 비율 보임
 - 안전한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비상벨 설치를 시행중인 지자체도(31.87%) 있었으나 여전히 안정성 확보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은 미흡
- 안전성 확보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시책
 - 공중화장실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 관련 문제 중 가장 개선이 필요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 질문에 범죄자 처벌규정 강화가 36.13%로 가장 높았음
 - 공중화장실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 관련 문제 중 가장 개선이 필요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 설문문항에 대해 가장 높은 비율은 49.21%인 불법촬영 등 여성피해자 중심의 성범죄로 나타남
 - 근무하고 계신 지자체에 위치한 공중화장실 내 안전시설 설치 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장소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의 질문에 공원 및 산책로라고 응답한 공무원이 52.88%로 과반수 이상으로 확인됨

□ 개방화장실 수급확대 측면

- 공중화장실 수급관리 중 노후 공중화장실 개선이 가장 시급
 - 현재 공중화장실 공급이 수요에 비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의 질문에 대부분의 공무원 64.92%가 충분히 공급되고 있다고 응답
 - 공중화장실 수급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를 순위로 분석한 결과 1순위와 2순위 모두 노후 공중화장실 등 개선으로 43.46%, 21.47%의 높은 비율을 나타냄

- 도심지 내 공중화장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민간개방화장실 수급 확대는 필요하지 않다고 의견이 51.05%
 - 도심지 내 공중화장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민간개방화장실 수급 확대가 필요한지를 묻는 설문 문항에 대해서는 큰 차이는 나타내고 있지 않지만 필요하지 않다 의 응답이 51.05%, 필요하다는 응답이 48.17%로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근소하게 더 높음
 - 민간개방화장실이 위치한 건물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관리 운영비를 대부분 지원하고 있으며(59.42%) 민간화장실 대상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등의 자체 점검을 위한 점검 장비 또한 지원 중(54.45%)
- 민간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원수준
 - 현재의 민간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원 수준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의 설문문항에 충분히 지원되고 있다고 응답은 52.88%,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43.46%로 지자체 공무원들은 대부분 충분히 지원하고 있다고 인식
 -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민간개방화장실 지정확대 사업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건물의 소유주가 왜 개방을 취소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 질문에 공무원 300명인 78.53%가 위생상태 악화, 시설파손 등으로 인한 관리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음
 - 민간개방화장실 수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설문문항에 물품 및 보조금 지원의 확대 필요하다는 응답이 47.38%로 가장 많았음
 - 민간개방화장실의 개인 소유 시설물(건물주)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를 묻는 설문 문항에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고 응답한 공무원은 46.6%로 가장 많았음
-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여부
 - 공중화장실 관리 및 점검을 위한 지자체, 경찰서, 관련 단체 등과의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까? 의 설문문항에 구축되어 있다고 응답한 공무원은 74.35%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협력체계 구축되어 있지만 관련된 자문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은 실정

2. 지자체 개방화장실 수급주체(건물주) 의견조사 종합

□ 공급관리체계 측면

- 민간에서 개방화장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지저분한 사용으로 인해 화장실 관리가 어렵다는 의견이 팽배
 - 특히 유동인구가 많이 존재하는 재래시장 및 상가밀집 지역 내 화장실을 개방형 화장실로 지정하여 사용하는 경우 시설파손 및 고장의 빈도가 동시에 증가하여 추가관리비용 발생 심각
 - 24시간 개방으로 인해 수시로 청결 상태 유지위해 새로운 인력을 고용해야 하는 부분이 새로운 비용발생으로 직결되고, 그럴 경우 건물전체의 관리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건물입점 관계자들 역시 개방화장실 참여를 반대하는 실정
 - 지원받는 비용보다 더 많은 청소관리 비용부담 발생과 시설파손 등으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하여 사업 참여 철회 유발

□ 안전성 확보 측면

- 화장실 내 불법촬영물 설치에 대해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지원 부재
 - 불법촬영물 설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를 대여해주는 방식보다는 전문가 또는 관계자가 직접 개방화장실로 방문하여 설치 유무를 정기적으로 확인해 줄 수 있는 인력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팽배

□ 개방화장실 수급확대 측면

- 지정확대 위한 필요사항
 - 청결한 화장실이 유지될 수 있도록 화장실 청소용품을 대폭적으로 지원하고, 청소관리 인력을 지원해주는 사항이 필요
 - 민간 건물에 입점한 사람들의 경우 개개인의 손익 계산이 맞지 않은 경우 민간 개방형 화장실 참여 및 유도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실정을 반영해

「개방화장실 지정운영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민간 건물주(수급주체)들에게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책에 대한 고민 필요

3. 시사점 도출

□ 민간개방화장실 수급·지원에 관한 담당공무원과 수급주체(민간건물주)간 의견차이

- 민간개방화장실 수급확대의 필요성
 - 담당공무원의 응답자 51.1%가 민간개방화장실의 수급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민간 수급주체자들은 민간개방화장실 지정보다는 공중화장실의 추가 설치가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의견 보임
- 민간 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원수준
 - 담당공무원의 응답자 43.46%가 「개방화장실 지정운영 사업」에 관련된 지원이 현재 충분하다고 응답한 반면, 민간 수급주체자들은 지원이 불충분하며 지원금 이외에 추가 관리비용 발생에 대한 어려움 호소
- 민간개방화장실 지정을 취소하는 이유
 - 담당공무원 응답자의 78.53%가 위생상태 악화의 사유로 민간 수급주체자들이 사업신청을 취소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민간 수급주체자들은 이용자의 지저분한 사용과 이에 대한 관리의 어려움, 관리비용 부담 등으로 사업 참여를 취소한다고 응답
- 민간 개방화장실 수급확대 요인
 - 담당공무원 응답자의 47.38%가 민간 개방화장실 수급확대를 위해 보조금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민간 수급주체자들은 다양한 물품 및 보조금의 파격적인 지원과 청소인력 배치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

[표 4-44] 민간개방화장실 수급 및 지원에 대한 담당공무원과 수급주체간의 의견비교

주요 질문사항	담당공무원 의견	민간수급주체 의견
민간개방화장실 수급확대의 필요성	응답자의 51.1%가 민간 개방화장실 수급확대 필요하다고 응답	공중화장실 설치확대 더 필요하다고 응답
민간 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원수준	응답자의 43.46%가 현재 충분히 지원되고 있다고 응답	지원이 불충분하며 지원금 이외에 추가비용 발생에 대한 부담 호소
민간개방화장실 지정을 취소하는 이유	응답자의 78.53%가 위생상태 악화의 사유로 취소한다고 응답	이용자의 지저분한 사용과 이에 대한 관리의 어려움, 관리비용 부담 등으로 취소
민간 개방화장실 수급확대 요인	응답자의 47.38%가 보조금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	청소용품의 파격적인 지원과 청소인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응답

제5장

공중화장실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제1절 기본방향

제2절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

제5장 공중화장실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제1절 기본방향

1. 혁신적인 국비지원 필요

- 개방화장실 지정이 반드시 필요한 입지를 대상으로 혁신적인 예산지원 필요
 - 민간 개방화장실이 반드시 필요한 위치(예: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역 주변 등)를 선정해 합리적인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민간 수급자로부터의 개방화를 유도할 수 있는 합리적인 관리비용을 예측하여 혁신적인 금액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도입 필요
 -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지 및 역내 주변으로 개방화장실의 지정이 반드시 필요한 위치가 존재 하지만, 충분치 못한 지자체의 예산으로 민간으로부터의 개방화를 유도할 수 없는 현실 존재
 - 개방화장실 지정이 반드시 필요한 위치를 선발해 지자체 간 경쟁을 통하여 차등화하여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 민간개방화장실 지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입지는 지자체 담당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원 자문단구성과 선정기준의 마련을 통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 화장실 협회 및 전문가를 통해 민간수급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합리적인 관리비용의 적정수준에 대한 조사 또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지자체간 국비 확보를 위한 경쟁은 지자체 내 부족한 공중화장실의 환경 및 여건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됨

2.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한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활용 필요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중화장실의 공급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행안부, 지자체, 주민, 시민단체 등의 협력적 노력이 필요
 - 지자체 단위 공중화장실 전담 관리체계를 확충하는 것에 대한 현실적인 한계점이 따르므로 현재구조 틀에서 부서간 또는 민·관 간의 협력체계가 가동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 필요
 - 공중화장실 협력적 관리체계 위한 공중화장실 위원회 구축 및 활성화 필요
 - 민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서 「공중화장실 위원회」 활용 또한 가능
 - 민·관 간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민간 전문 교육기관의 참여를 토대로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수준 높은 교육시행 또한 가능 할 것으로 판단

3. 공중화장실의 안전성 확보방안 마련 필요

- 협업행정을 통한 공중화장실 안전관리시스템 마련 필요
 - 취약지역 중심의 상시점검 시스템 마련 필요
 - 어둡고 후미진 공원주변 등에 위치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범죄발생 또는 범죄발생에 대한 불안감이 조성될 수 있으므로 취약지역에 위치한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상시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필요
 - ※ 취약지역에 위치한 공중화장실로 지정하는 기준요건은 지자체 담당공무원과 지역 자문단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을 것임
 - 이동식 카메라 설치지원과 민간보안업체와의 협업행정을 통한 공중화장실 안전성 확보방안 마련 검토 가능
 - 범죄취약지역에 위치하면서 안전사고에 관련된 사고 발생률이 높은 공중화장실을 중심으로 이동식 카메라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주고, 민간경비업체와의 위탁계약을 통해 유지관리 될 수 있는 방안 모색 가능

제2절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

1. 공급 관리체계 측면

1) 제도개선

공중화장실 관련 중앙정부 차원의 법령정비

- 공중화장실 용어의 명확화 필요
 - 현재 공중화장실법에 적용을 받는 공중화장실의 유형은 공중화장실, 개방 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의 5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나, 명칭에 있어서는 다소 혼란이 존재
 - 예를 들면 공중화장실의 세부 유형 중 다시 공중화장실이 포함되어 있어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음
 - 따라서 향후 공중화장실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관련 용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³⁾

공중화장실 관련 지자체 조례개정 측면

- 지자체의 공중화장실 관리 및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등의 관련 항목을 개정하여 반영할 필요 있음
 - 2019년 9월부터 시행령 별표의 남녀 변기수 최소 설치기준이 삭제됨에 따라 공중화장실 과소 설치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
 - 지자체는 권고안 및 설치기준의 이행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치단체의 조례, 규칙 등에 설치기준을 반영하도록 노력 필요⁴⁾
 - 보다 구체적으로 지자체의 공중화장실 관리 및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등의 관련 항목을 개정하여 반영

3) 김상민·임태경(2019) 공중화장실 세부 설치기준 마련 및 활용방안 연구

4) [부록 5] 공중화장실 세부설치기준 참고

- 세부 설치기준은 지자체 여건을 고려하여 일부 수정하거나 또는 적절하게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거나 건축물 용도별, 사용인원별, 사용인원의 성별에 따른 상이한 사용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설치기준이 산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 기준 마련 필요
- 미국에서는 주정부 단위로 국제배관코드(IPC)⁵⁾를 채택하고 있으며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는 자체적으로 도시 특성에 맞게 특정 부분을 개정하여 IPC를 토대로 공중화장실 설치규정안 제정 하여 운영 중
 - 미국의 35개 주정부 및 지방정부가 IPC를 토대로 공중화장실 설치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미국 뉴욕시의 경우 공중화장실 설치 관련 개정은 뉴욕시 건축국 (Department of Building)이 주관하며, 국제규범위원회(International Code Council, ICC)에서 발표하는 국제배관코드(IPC) 내용을 뉴욕시 건축코드에 반영하여 「New York City Plumbing Code」 제정
 - 코드는 건축물 용도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건강 안전 복지 환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국제배관코드(IPC) 내용에 부합되지 못하는 수준으로는 건설 불가하게 설정

[표 5-1] 뉴욕 주의 「Section 403」Minimum Plumbing Facilities

분류	건물종류	변기수		세면대수		욕조 -	식수대	기타	
		남	여	남	여				
집회	A1	극장, 공연장	70명당 1개	35명당 1개	200명당 1개		-	500명당 1개	서비스싱크 1개
	A2	나이트클럽, 주정 등	75명당 1개	40명당 1개	75명당 1개		-	500명당 1개	서비스싱크 1개
	A2	레스토랑, 푸드코드 등	75명당 1개	75명당 1개	200명당 1개		-	500명당 1개	서비스싱크 1개
	A3	아쿠아리움 (좌식의자가 없는)	75명당 1개	35명당 1개	200명당 1개		-	500명당 1개	서비스싱크 1개

5) 상세내용 [부록] 참고

분류	건물종류	변기수		세면대수		욕조 -	식수대	기타	
		남	여	남	여				
	곳), 갤러리, 박물관, 전시장 등								
	A3 교통시설 터미널 등	500명당 1개	250명당 1개 ⁶⁾	750명당 1개		-	1,000명당 1개	서비스싱크 1개	
	A3 종교집회장소	150명당 1개	75명당 1개	200명당 1개		-	1,000명당 1개	서비스싱크 1개	
	A4 스케이트 링크, 수영장, 실내스포츠센터 등	75명당 1개 ⁷⁾	40명당 1개 ⁸⁾	200명당 1개	150명당 1개	-	1,000명당 1개	서비스싱크 1개	
	A5 체육관, 실외스포츠시설 등	75명당 1개 ⁹⁾	40명당 1개 ¹⁰⁾	200명당 1개	150명당 1개	-	1,000명당 1개	서비스싱크 1개	
회사	B 사무소 은행 상점 등	1~20명	1개	1~20명	1개	-	100명당 1개	서비스싱크 1개	
		21~45명	2개	21~45명	2개				
		46~70명	3개	46~70명	3개				
		71~100명	4개	71~100명	4개				
		101~140명	5개	101~140명	5개				
		141~190명	6개 ¹¹⁾	141~190명	6개 ¹²⁾				
교육	E 교육시설	50명당 1개		50명당 1개		-	100명당 1개	서비스싱크 1개	
산업	F1 F2 공장 산업단지 등	100명당 1개		100명당 1개		피부 오염에 노출될 경우 10명당 1개 ¹³⁾	400명당 1개	서비스싱크 1개	
시설	I1	치료센터 회복시설 등	10명당 1개		10명당 1개		8명당 1개	100명당 1개	서비스싱크 1개
		병원, 간호시설 등	방1개당 1개		10명당 1개		8명당 1개	100명당 1개	서비스싱크 1개
	I2	근로자 캐어시설	25명당 1개		35명당 1개		-	100명당 1개	-
		방문객 장소	75명당 1개		100명당 1개		-	500명당 1개	-
	I3	교도소	한개의 cell당 1개		한개의 cell당 1개		15명당 1개	100명당 1개	서비스싱크 1개
	I3	소년원	15명당 1개		15명당 1개		15명당 1개	100명당 1개	서비스싱크 1개
	교도소 소년원 근로직원 공간	25명당 1개		35명당 1개		-	100명당 1개	-	

분류	건물종류	변기수		세면대수		욕조 -	식수대	기타
		남	여	남	여			
	I4	어린이집 센터	15명당 1개	15명당 1개	1개	100명당 1개	서비스싱크 1개	
상점	M	상점 쇼핑센터	500명당 1개	750명당 1개	-	1,000명당 1개	서비스싱크 1개	
거주	R1	호텔 모델	Guest room 1개당 1개	Guest room 1개당 1개	Guest room 1개당 1개	-	서비스싱크 1개	
	R2	기숙사 등	10명당 1개	10명당 1개	8명당 1개	100명당 1개	서비스싱크 1개	
	R2	아파트	거주1가구당 1개	거주1가구당 1개	거주1가구당 1개	-	거주1가구당 부엌싱크 1개 20거주당 세탁싱크 1개	
	R3	게스트 룸이 5개 이하인 하우스	거주1가구당 1개	10명당 1개	주지1개당 1개	-	거주1가구당 부엌싱크 세탁싱크 각각 1개	
	R3	16명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시설	10명당 1개	10명당 1개	8명당 1개	100명당 1개	서비스싱크 1개	
창고	S1	상품보관 위한 창고형태의 구조 건물	100명당 1개	100명당 1개	피부 오염에 노출될 경우 10명당 1개 ¹⁴⁾	1,000명당 1개	서비스싱크 1개	

- 6) 2015년 IPC 권고기준 사항 개정에 따라 500명당 1개에서 250명당 1개로 변경
- 7) 1,500명이 초과하는 경우 120명당 1개
- 8) 1,500명이 초과하는 경우 60명당 1개
- 9) 1,500명이 초과하는 경우 120명당 1개
- 10) 1,520명이 초과하는 경우 60명당 1개
- 11) 190명 이상일 경우 50명당 1개씩 추가 설치
- 12) 190명 이상일 경우 50명당 1개씩 추가 설치
- 13) 권고기준 IPC Section 411에 따름
- 14) 권고기준 IPC Section 411에 따름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중화장실 공급 계획 수립 필요

- 정기적 현황 및 실태조사에 기반한 지역맞춤형 공중화장실 공급계획 수립 필요
 - 지자체 공중화장실 공급기준을 살펴보면 1)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2) 도보권(500m)이내 주택가, 정류장, 근린시설 등이 입지한 주변 3) 민원발생 횟수가 높은 지역 등에 우선적으로 공중화장실 공급을 권장하고 있지만 공중화장실 수요추정 및 이용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실태조사가 수행되고 있지 않아 유동인구 밀집지역 및 수요가 높은 입지를 분석한 지자체별 실태조사 결과가 부재한 상황
 - 지자체 공중화장실 담당공무원 의견조사에서도 “근무하고 계신 지자체에서 공중화장실 수급계획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52.09%가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
 -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공급을 계획하기 위해서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수요조사가 일차적으로 선행되는 것이 필요하며,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별 공중화장실 공급계획을 마련하는 접근 필요

□ 「민간 개방화장실 지정확대 사업」 지정요건 기준 완화 필요

- 현재 지정요건은 민간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이 아닌 제약책으로서 역할
 - 현재 민간 개방화장실 지정확대 사업의 지정요건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로서 「제3조제2항」 각 호의 건축물에 한하여 지정할 수 있게 되어있고 이밖에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여 지정요건을 정할 수 있게 되어있음
 - 「제3조제2항」에 의거하여 민간 개방화장실 지정요건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한정하고 있어 비교적 엄격한 기준요건을 제시하고 있음

[표 5-2]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제3조제2항(적용범위) ② 법 제3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11.2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 중 사무구획별로 화장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해당 사무구획에 해당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바닥면적의 합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2. 삭제 <2017.11.21>

3.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지자체에서 적용중인 민간 개방화장실 지정요건 또한 매우 제한적이어서, 참여를 원한다 할지라도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이 아닐 경우 참여 불가능
 - 광명시 용인시 화성시의 사례를 토대로 살펴봤을 때, 민간 개방화장실의 지정요건은 시설이 우수한 개방화장실을 우선적으로 지정하고 건축연도가 짧고 노후하지 않은 건물에 우선적으로 선발될 수 있는 지정요건 제시하고 있음
 - 법적 지정요건 또한 1) 바닥면적의 합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업무시설이 있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3)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연구 및 복지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만이 지정될 수 있게 규정
- 「공중화장실 법률 시행령 제8조」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토대로 법적 지정요건 완화 또는 관련 규정 삭제 검토 필요
 - 개방화장실 지정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 지정요건을 완화 또는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민간수급주체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환경을 조성할 필요 있음

[표 5-3] 민간 개방화장실 지정요건 개선(안)

구분	지자체(광명시 용인시 화성시 등)에서 적용중인 민간 개방화장실 지정요건	민간 개방화장실 지정요건 개선(안)
법적 지정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업무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업무시설이 있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건축법에 의한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 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업무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삭제) - 업무시설이 있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삭제) - 건축법에 의한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 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삭제)
지자체 지정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이 우수한 개방화장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등급에 따른 차등지원을 원칙으로 함 - 최근 정부의 정책트렌드(남녀화장실 분리 국민캠페인)에 따라 남녀화장실이 분리된 곳을 지정 - 건축연도가 짧고 노후하지 않아 범죄의 가능성이 낮은 건물 - 영업장 또는 매장을 통과해야 이용 가능한 화장실 및 건물의 지하층 또는 2층 이상에 위치한 화장실은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이 우수한 개방화장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등급에 따른 차등지원을 원칙으로 함(삭제) - 건축연도가 오래되고 노후한 건물일지라도 개인소유물 민간주체가 사업참여를 적극적으로 원할 경우 지정 가능 - 최근 정부의 정책트렌드(남녀화장실 분리 국민캠페인)에 따라 남녀화장실이 분리된 곳을 우선적으로 지정 - 영업장 또는 매장을 통과해야 이용 가능한 화장실 및 건물의 지하층 또는 2층 이상에 위치한 화장실은 제외함(삭제)

□ 인식개선을 위한 정책적 장치 마련 시급

- 공중화장실의 사용 및 개인소유물을 통한 민간개방화장실의 제공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봉사의 개념으로 인식할 수 있는 지속적인 인식개선 홍보 활동 필요
 - 시민참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지속적인 광고 및 홍보활동은 공공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욕구를 높아지게 하는 역할로 작동 될 수 있음

[표 5-4] 민간개방화장실 지정확대 사업 홍보방식 설문조사 결과

지자체 공중화장실 담당공무원 의견조사 결과
<p>지자체 공중화장실 담당공무원 의견조사에서도 “민간개방화장실의 수급주체인 개인 소유 시설물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민간개방화장실 지정확대 사업을 어떻게 홍보하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6.6%가 “지자체 홈페이지 통한 홍보”, 36.39%가 “홍보하고 있지 않음”으로 응답</p>

- 다양한 공공참여(Public Involvement)의 기법 마련 필요
 - 인식개선을 통해 시민참여를 촉진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법의 홍보활동이 지속되는 것이 필요

[표 5-5] 인식개선 및 공공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한 기법

목적		PI 기법
공공참여를 위한 정보제공 기법	실질적인 정보제공과 커뮤니케이션의 방법	메일링 서비스
		정보자료 전달(전자미디어, 뉴스레터, 홈페이지 개설, 포스터 제작 및 배포, 유튜브 제작 및 홍보 등)

출처: US. DoT, FHWA. (1996). Public Involvement Techniques for Transportation Decision

지자체 단위 공중화장실 관리 조직체계의 개선책 마련 필요

- 지자체 단위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리를 일원화된 조직체계 하에서 전담 관리조직으로 개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한계점 따름
 - 지자체 공중화장실 담당공무원 의견조사에서도 “허가 및 설치와 관리의 측면이 이원화된 업무구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53.14%가 일원화 된 업무구조가 효율적이다 라고 응답했지만, 제한된 인력과 예산을 고려할 경우 이원화된 업무구조가 효율적일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 또한 42.67%를 보여 일원화 및 이원화 조직체계를 각각 지지하는 응답의 비율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

【표 5-6】 일원화 및 이원화된 업무구조상의 장·단점 비교분석

	일원화	이원화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원화된 하나의 전담부서에서 공중화장실에 관련된 업무(설치 및 관리)를 일괄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 증대 • 민원발생 시 책임 소재 분명 • 지속적 장기적 사업추진 가능 • 전문인력 양성 가능 • 업무의 신속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의 인력과 예산을 활용하여 현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조직운영 가능 • 중복관리에 대한 행정력 낭비 막을 수 있음 • 지역내 공중화장실 수가 너무 많은 실정을 고려해 이원화된 설치 관리가 효율적일 수 있음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인력 증대 필요 • 조직구성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음(공중화장실 부서가 과 단위가 아닌 이상 일원화는 힘든 상황) • 시설관계부서에서 시설특성에 대해 더 많은 정보 보유 가능성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서간의 협조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업무추진 상 어려움 발생 • 책임행정 불가능 • 지속적·장기적 측면에서의 사업 추진 어려움 • 업무추진단계 복잡 • 업무의 신속성 확보 어려움 • 전문성 확보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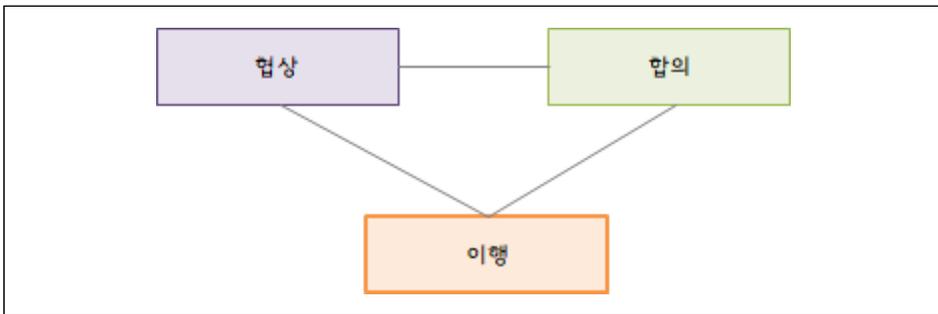
- 지자체 단위 공중화장실 전담 관리체계 확충하는 것에 현실적인 한계점이 따르므로 현재구조 틀에서 부서간의 협력체계가 가동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설정 필요
- 공중화장실 업무는 설치 및 관리 측면이 이원화된 조직체계 하에서 운영되고 있어 집합적인 업무 수행방식이 요구되는 분야이며 이는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하나의 부서가 아닌 복수의 부서가 참여함으로써 업무를 진행하는 형태를 보임

【표 5-7】 협조부서 여부 설문조사 결과

지자체 공중화장실 담당공무원 의견조사 결과
지자체 공중화장실 담당공무원 의견조사에서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공중화장실 허가, 설치 관리 등에 대하여 협조하는 부서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7.28%가 “협조하는 부서가 있다”라고 응답

- 업무수행 및 공중화장실에 관련된 서비스 전달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부서 간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며 강제적인 기제를 통해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의 업무 담당자들의 대인관계 기술 및 독자성,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상대부서에 대한 존중과 합의를 바탕으로 협력체계가 가동되는 것이 필요
- 부서 간 협업의 과정에서의 명확한 목표 설정과 규칙과 책임성의 여부를 구체화 시키는 제도적 장치, 효과적인 의사소통 채널을 마련하는 것 또한 중요

[그림 5-1] 부서간 협력의 과정



출처: Thomson & Perry (2006 재인용)

2)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활용

□ 중앙-지방의 협력적 관리체계 구축

- 중앙-지방의 협력적 관리체계를 구축 및 활성화 필요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중화장실의 공급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행안부, 지자체, 주민, 시민단체 등의 협력적 노력이 필요
 - 공중화장실 관리 운영방안을 마련해서 지자체에 권고한다고 해서 권고안이 이행되고 지자체와 주민의 참여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
 - 따라서 대부분의 공공재의 성과창출이 이를 공급하는 일방의 노력을 넘어

여기에 관계되는 주체간의 협력적 노력이 요구되듯이 행안부-지자체-시민 단체가 공동으로 노력하는 방식을 강화

- 특히 분권화시대 지역실정에 맞는 공중화장실의 공급 및 관리의 주요 주체는 각 지방자치단체이지만, 공중화장실법에 근거하여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국민 전체의 삶의 질 증진을 도모함에 있어 중앙정부(행정안전부)의 역할도 매우 중요
- 따라서 중앙-지방의 협력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공중화장실에 대한 국민의 이용 편의성을 증진하고, 나아가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해야 할 필요성 증대

○ 주체별 역할

- 중앙정부(행정안전부)는 지방분권화 강화에 부합되게 공중화장실 공급 및 관리 방안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지자체의 공중화장실의 개선을 유도하고 지원
- 이 과정에서 각 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마련하여, 공중화장실의 실제 이용 현황과 관리실태, 그리고 전문가 등의 자문의견을 수렴하여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
- 각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지역의 현황 및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적절한 공중화장실이 공급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담당
- 지자체는 중앙정부(행정안전부)가 제시하는 개선방안을 토대로 하되 지자체가 주도하여 해당 지역의 화장실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
- 지자체는 이행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거버넌스를 구축함과 동시에 이행력 강화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정기적·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
- 공중화장실의 이용환경개선방안은 결국 시민사회에 착근되어야 함을 고려하여 화장실 개선 관련 단체, 협의 등 시민단체의 인식 공유 및 확산도 중요
- 필요한 경우 시민을 대상으로 한 강의 등에서 외국의 사례, 국내의 실태, 행안부 관리방안 등이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행안부, 지자체 등은 관련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에 대해 협조

[표 5-8] 공중화장실 주체별 역할

주체	주체별 역할
중앙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행정안전부)는 지방분권화 강화에 부합되게 공중화장실 공급 및 관리 방안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지자체의 공중화장실의 개선을 유도하고 지원 • 각 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마련하여, 공중화장실의 실제 이용 현황과 관리실태, 그리고 전문가 등의 자문의견을 수렴하여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배포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지역의 현황 및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적절한 공중화장실이 공급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담당 • 지자체는 이행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거버넌스를 구축함과 동시에 이행력강화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정기적·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
시민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중화장실의 이용환경개선방안은 결국 시민사회에 착근되어야 함을 고려하여 화장실 개선 관련 단체, 협의 등 시민단체의 인식 공유 및 확산도 중요

출처: 김상민·임태경(2019) 토대로 재작성

□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공급·관리 위한 지자체 부서 간 협력적 관리체계 구축

- 공중화장실 협력적 관리체계 위한 위원회 구축 및 활성화 필요
 -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에 대해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는 존재하지
만 업무의 특성상 허가 및 설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복수의 부서가
참여하는 업무를 진행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공중화장실 업무 관련협조부
서와 다양한 전문가들의 참여와 의견을 토대로 공중화장실 공급 및 관리에
대한 개선방안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기준안 마련 및
업데이트 진행 필요
 - 지자체 공중화장실 허가, 설치 관리 등에 대하여 협조하는 부서가 어디인
지 묻는 질문에 경제과, 경제산업과, 시장경제과, 건축과, 건축허가과 등에
서 업무협조가 자주 발생하고 응답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건설건축 및 경
제, 도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관계자 및 위생설비분야, 공중화장실
관련 관계자 등을 포괄하는 다양한 참여자들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 구성
및 협조체계 마련 필요

[표 5-9]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5조(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 ① 공중화장실등의 설치·지정 또는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공중화장실등의 공급계획 수립
 2. 공중화장실의 설치 또는 개방화장실의 지정
 3. 유료화장실, 이동화장실 및 간이화장실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중화장실등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 ②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 공중화장실 자문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사례: 충청남도
 - 충청남도에서는 공중화장실자문위원회를 둬으로써, 지역 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및 설계, 관리에 관련된 자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자문위원회 구성을 살펴보면 위원회의 장은 공중화장실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충남도청 기후환경국)의 장이 담당하며,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1인(물관리정책과)과 전문가위원(학계 및 건축분야), 한국화장실 협회 소속 담당자로 구성
 - 연구기관으로는 지자체 소속 연구원이나 사설연구원 소속 연구원 이외에, 대학 교수진 역시 참여. 이때 교수들은 지역 내 대학의 공간디자인, 건축 및 기계설비 전공자들로 구성. 이러한 구성을 통해서도 자문위원회의 역할이 건축 및 설계 영역에 특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민간영역에서 건축을 담당하는 전문가가 참여. 한국화장실협회 소속 1인 역시 자문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중화장실의 특성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이 자문 과정에 고려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충청남도 공중화장실 자문위원회에서는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설계,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1) 장애인 등 이용 취약계층을 고려한 설계사항(점자블록 유도 방향 수정, 영유아 거치대의 위치 수정 등)이나 2)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사항(개방성 확대 위한 창문의 형태 수정 등), 3) 설계 기준 준수를 위한 조언

(변기 개소수 조정 등), 4) 외부 공간 활용 방안(자전거를 위한 별도 공간 마련 등), 5) 지자체의 중점 정책과의 연계(에너지 절약형 - 하이브리드 소변기 등 - 화장실 구축 모델 제안 등), 6) 기타 시설관련 자문(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설계변경 제안 등)이 구체적인 자문내용에 포함됨

【표 5-10】 충남 공중화장실 자문위원회의 구성

구분	충남도청	연구기관	민간	시민단체
인원(명)	2 ¹⁾	5 ²⁾	1 ³⁾	1 ⁴⁾

출처: 충청남도 홈페이지

- 1) 기후환경국 국장 1인(위원장) 포함
- 2) 충남연구원 소속 연구원 1인 / 사설연구원 소속 연구원 1인 / 대학교 교수 3인
- 3) 건축사
- 4) 한국화장실협회 소속

【표 5-11】 충남 공중화장실 자문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

공중화장실 자문위원회 운영사례: 충청남도 도청

충청남도에서는 공중화장실자문위원회를 둬으로써, 지역 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설계와 관련된 자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
 해당 위원회는 2005년 설치되었는데, 설치의 근거가 되는 조항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위원회는 공중화장실 신축공사와 관련, 설계에 대한 자문 역할을 담당. 이에는 1) 장애인 등 이용 취약계층을 고려한 설계사항(점자블록 유도방향 수정, 영유아 거치대의 위치 수정 등)이나 2)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사항(개방성 확대 위한 창문의 형태 수정 등), 3) 설계 기준 준수를 위한 조연(변기 개소수 조정 등), 4) 외부 공간 활용 방안(자전거를 위한 별도 공간 마련 등), 5) 지자체의 중점 정책과의 연계(에너지 절약형 - 하이브리드 소변기 등 - 화장실 구축 모델 제안 등), 6) 기타 시설관련 자문(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설계변경 제안 등)이 포함됨

공중화장실 민·관 협력체계 구축

- 민·관 간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민간 전문 교육기관의 참여를 토대로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수준 높은 교육시행 가능

- 지자체 공중화장실 담당공무원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이 공중화장실 총괄담당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는 실정
- 공중화장실 총괄담당부서에서 교육을 수행하는 것보다 민간 전문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보다 전문적일 것으로 예상

[표 5-12] 협조부서 여부 설문조사 결과

지자체 공중화장실 담당공무원 의견조사 결과

지자체 공중화장실 담당공무원 의견조사 중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이 실시 중이라면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8.09%가 “공중화장실 총괄담당 부서”라고 응답

- 민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서 「위원회」 활용 가능
 - 주민-시민단체-전문가-지자체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이를 통해 공중화장실의 홍보 및 민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의 여건과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공중화장실 공급관리의 개선안을 도출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의 효율성 증대
 - 또한 시민의 화장실 편의를 위해 공중화장실 공급관리 측면에서 노력하는 우수지자체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공중화장실의 관리체계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시스템 내에서 위원회 위원들은 참여할 수 있음

2. 공중화장실 안전성 확보 측면

1) 제도개선

공중화장실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자체 조례 정비 필요

-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안전에 관련된 조례마련 필요
 - 지자체 공중화장실 담당공무원 의견조사에서 공중화장실의 안전한 이용환경 확보를 위한 조례가 제정 되었는지를 묻는 설문문항에 대해서 관련규정

이 없다는 응답이 57.33%로 나타남

- 또한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등 범죄발생으로부터 안전한 이용 환경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응답은 17.23%로 나타남
- 지자체에 위치한 공중화장실 내 또는 공중화장실 인접지역의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근거조례 마련 필요

[표 5-13] 공중화장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정된 지자체 조례의 예

「광주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5조(설치기준)

제5조(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조 및 별표 규정에
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6. 9.>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종이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4. 9.>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7. 6. 9.>
6. 구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용 경고음 발생기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9.>

출처: <http://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381904>

취약지역 중심의 상시점검 시스템 마련

- 사회적으로 시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증대되고 있고, 특히 어둡고 후미진 공원 주변으로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범죄발생 또는 범죄발생에 대한 불안감이 조성될 수 있으므로 취약지역에 위치한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상시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필요
- 예를 들어, 어둡고 후미진 공간 내 설치된 공중화장실, 인적이 드문 공원 내 공중화장실, 시야확보가 어려운 골목길 주변에 위치한 공중화장실, 범

죄발생 우려지역 등에 위치한 공중화장실 등을 취약지역에 위치한 공중화장실로 지정하는 기준요건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며, 구체적인 지정요건에 대해서는 공중화장실 담당공무원과 지역 자문단의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을 것임

- 취약지역에 위치한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중화장실 안심환경개선 체크리스트[부록 6 참고]를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상태를 관리하는 시스템 마련 필요
- 안전성에 대한 상시적 점검이 필요한 공중화장실을 1차적으로 선별한 후 그 지역에서 시행중인 자율방범대 안전지킴이(현사업)과 연계하여 상시적으로 공중화장실의 안전성을 점검할 수 있는 정책적 방향성 검토 가능
 - 호주 멜버른 데어빈시의 사례에서도 노후 화장실의 안전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 커뮤니티 그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표 5-14] 취약지역 공중화장실의 안전문제 위해 지역커뮤니티를 활용하고 있는 호주의 사례

호주 멜버른 데어빈시 사례(공중화장실 안전지킴이)

노후 화장실의 안전문제 개선을 위한 지역 경찰, 지역 커뮤니티 그룹 활용

- 경찰서 및 지역 커뮤니티 그룹을 수립하여 노후 화장실 시설 점검 및 공공 안전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 구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Darebin Public Strategy, 2016: 21)

□ 지자체 단위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확인 전담조직 마련·운영

- 불법촬영 감시 시스템 및 전담인력 운영
 -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시행
 - 서울시의 경우 여성안심보안관 제도를 통해 「서울형 뉴딜일자리 여성안심보안관 사업」의 일환으로 1인당 연간 인건비 약 1,300만원으로서 계약직 전담인력을 선발해 서울시 전체를 1~7권역으로 나누어 6~8명씩 총 50명을 불법촬영 감시 전담 조직 운영 중

이동식 카메라 설치지원과 민간보안업체와의 협업행정을 통한 공중화장실 안전성 확보방안 마련

- 범죄발생 또는 범죄발생에 대한 불안감이 조성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이동식 카메라 설치를 지원하고 동시에 유리·관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민간보안업체와의 협업 가능성 검토
 - 취약지역에 위치하면서 안전사고에 관련된 사고 발생률이 높은 공중화장실을 중심으로 이동식 카메라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주고, 민간경비업체와의 위탁계약을 통해 유지관리 될 수 있는 방안 모색 가능
 - 경찰청 및 관제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이동식 카메라의 유지관리방식에는 인력·예산의 부족등과 같은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따르므로, 민간경비업체와의 협업행정을 통해 유지관리 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

[표 5-15] 취약지역 공중화장실의 안전문제 위해 지역커뮤니티를 활용하고 있는 호주의 사례

서울 영등포구에서 민관협력을 통해 여성안심 플랫폼 운영

서울시 영등포구에서는 여성1인가구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CCTV 및 여성안심시설물을 설치하였고, 민간통신업체와의 협업을 통하여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여성이 체감하는 범죄예방 행정서비스를 추진 중

2) 디지털기술의 활용

유료화장실의 도입 검토

- 현재 한국사회의 정서상 매우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 오래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유료화장실 시스템 도입 및 구축에 대해 관심을 갖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볼 필요 있음
 - 최근에는 각종 화장실에서의 안전사고, 범죄발생 그리고 세계적인 이슈인 코로나19로 인한 세균감염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으로 공중화장실 이용을 꺼리고 시설과 관리에 대한 불신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

- 불특정다수가 사용하는 화장실에 대한 거부감으로 일정금액을 내더라도 안정성과 위생성이 확보된 나만의 화장실을 선호하는 경향이 늘어가는 추세
 - 이러한 사회적 환경을 고려한다면 수요자 맞춤형 유료화장실 시스템 도입은 화장실산업의 신시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산업측면에서 유료화장실 산업육성이 수입과 일자리를 창출 시킬 수 있는 영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우선적으로 필요
- 유료화장실은 민간사업화로 전환하여 기본 이상의 특별한 서비스를 원하는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을 채택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표 5-16] 유료화장실 산업육성을 위한 필요사항

구분	유료화장실 산업육성을 위한 필요사항
1	유료화장실 운영에 대한 규제(화장실관련 법)는 산업 활성화를 저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규제 완화 조치가 필요
2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 맞는 IT 기술 등이 접목된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료화장실을 만들기 위한 스타트업 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예산지원, 정보제공, 기술 제공 등)이 필요
3	유료화장실 등급제 도입 등을 통해 수요자의 취사선택에 도움도 주고, 기업에도 자극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 필요
4	국민들의 공중화장실 서비스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

[표 5-17] 유료화장실 운영에 대한 이탈리아 라치오 사례

이탈리아 라치오(Lazio) 지역의 화장실의 유료화 및 사용료 표기 법안 시행

한국과 달리 미국, 유럽 등 서구의 경우 공중화장실이 많지 않다보니, 상점 등 시설 내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물품구입이나 일정액의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곳이 많이 있다.

이러한 운영방식은 개인이 소유한 화장실에 대한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정부분 받는 형태로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허용한 유료화장실은 아니다.

그러나 이태리 로마에 접해있는 라치오(Lazio) 지역에서는 유료화장실 운영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규정이 2018년도에 예산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현재 시행중에 있다. 식음료의 상업 및 관리 규정 제75조에 따르면, 일반 건물 내 화장실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일종의 '오줌세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를 대중에게 알리도록 정하고 있다.

출처: <http://www.today.it/rassegna/uso-bagni-locali-pubblici.html>(이태리 언론사)

[표 5-18] 유료화장실 운영에 대한 이탈리아 베니스 사례

이탈리아 베니스(베네치아)의 공중화장실 현황 및 유료화 서비스

수상도시로 유명한 베니스는 전 세계의 관광객이 수없이 모여드는 지역으로 공중화장실(총 변기수의 합이 336개)의 일부는 유료로 운영되고 있다.

베네치아 시로부터 공중화장실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환경미화 업체인 베리타스(Veritas)는 총 17개의 유료화장실(총 변기수 222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베니스 시의 홈페이지에서는 유료 화장실로 운영되는 화장실의 위치에 관련된 정보(위치 및 이용요금)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공중화장실이 부족하고 정부의 지원이 없는 상황 속에서 생겨난 화장실의 유료화 시스템이지만, 자치단체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나아가 관광객과 일반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준 측면에서 큰 불만없이 제도가 정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 지역(베니스) 내에 여러 민간업체가 유료 화장실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산업으로서도 가치가 있음을 의미한다 할 수 있다.

출처: <https://wctoilettevenezia.com/>

빅데이터 활용하여 공공화장실 위치 제공하는 모바일 앱(App) 개발·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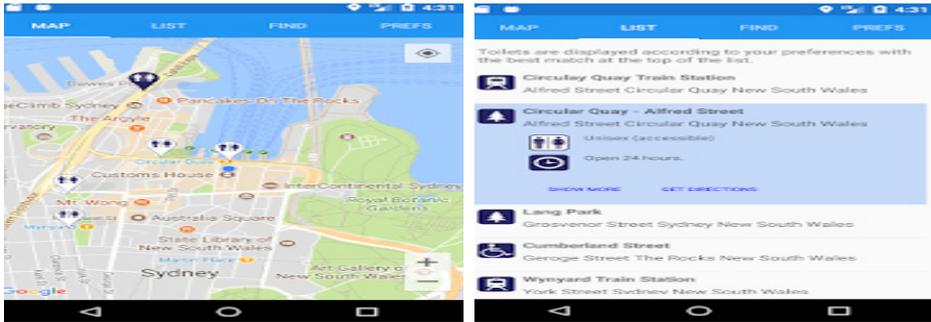
- 현재 부산광역시에서는 공중화장실 위치정보를 구군별 유형별(간이화장실, 개방화장실, 공중화장실, 일반화장실)로 구분하여 시각화된 데이터로 제공
 - 여전히 지도의 시각화 측면에서 정보의 접근성 미흡하다는 한계점 존재
 - 호주정부(Australian Government)의 경우 「National Public Toilet Map App」을 개발해 시민들에게 제공 중이며, 이 앱(App)을 통해 총 19,000개의 공중화장실의 위치를 제공하고 있음

[그림 5-2] 빅데이터 활용한 공중화장실 위치정보 시스템

부산광역시에서 제공중인 공중화장실 위치정보



호주에서 제공 중인 National Public Toilet Map App



출처: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humansolutions.toiletmap&pcampaignid=MKT-Other-global-all-co-prtnr-py-PartBadge-Mar2515-1>
부산광역시 빅데이터 포털

3. 개방화장실 수급 관리 측면

1) 예산지원측면

개방화장실 지정이 반드시 필요한 입지를 대상으로 혁신적인 국비지원 필요

- 우수관리 개방화장실 사례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개방화장실 지정이 반드시 필요한 입지를 우선적으로 선발해 합리적인 수준의 국비를 지원하는 제도 도입 필요
 - 지자체 내에서 우선적으로 개방화장실이 지정이 반드시 필요한 입지에 대한 조사와 민간수급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적정 관리비용의 수준은 전문가, 화장실 문화개선 협회, 공중화장실 자문위원회, 지자체 담당공무원 등 객관적·과학적인 조사·분석을 통해 결정 가능
 - 개방화장실의 지정이 반드시 필요한 입지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주를 설득해 개방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이며 지속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비지원으로 민간개방화장실 지정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 지자체간 국비 확보를 위한 경쟁은 지자체 내 부족한 공중화장실의 환경 및 여건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임

□ **유동인구 고려한 지원금·지원 물품 차등화 방안 마련**

- 개인소유물 개방화장실 민간 수급 주체자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개방화장실 지정확대 사업에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도개선의 방향성 설정 필요
 - 이용률, 개방시간, 변기수, 청소상태에 따른 다양한 물품 및 구입비를 차등적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는 방안 필요
 - 다양한 물품지원 확대(종량제봉투, 비누, 청소용품, 휴지 등) 뿐만 아니라 유동인구가 많은 재래시장 및 상가밀집, 관광시설 주변에 위치한 개방화장실의 경우 정화조 청소비, 또는 개·보수비를 차등적으로 추가 지원해주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있음
 - 시흥시의 경우 특이사례로 민간개방화장실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개방화장실 관리인들에게 상하수도요금 70%를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시 강남구의 사례도 차등적으로 관련물품을 지원하고 있지만 민간수급주체자의 개방화를 유도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인 것으로 판단됨

[표 5-19] 시흥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

「시흥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12조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원)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개방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리비의 일부 또는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표 5-20] 차등화 지원 사례

서울시 강남구의 민간개방화장실 지정에 따른 차등화 지원 사례
* 지원 내용 - 분기별 화장실 소모용품(화장지, 비누 등) 구입비 지원 - 개방시간, 변기수, 청소상태에 따라 차등 지원(월10~15만원) - 개방화장실 정화조 청소비 지원(연1회 최대 10만원) - 개방화장실 개보수비 지원(예산범위내 대상자 선정후 시행)

출처: <http://www.gangnam.go.kr>

□ 노후화장실 개선비용 지원

- 노후화장실 시설개선을 위한 정기적 실태조사 및 전략 마련 필요
 - 지자체 공중화장실 담당공무원 의견조사 중 공중화장실 수급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를 순위로 분석한 결과 1순위와 2순위 모두 노후 공중화장실 등 개선으로 43.46%, 21.47%의 높은 비율 보임
 - 원주시 심층인터뷰 사례를 통해서도 노후된 공중화장실의 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겨울철 동파문제)이 가장 크다고 응답
 - 공중화장실의 노후 문제는 단순히 시간의 경과에 따른 ‘낡았다’라는 개념으로 인식됨과 동시에 물리적 측면에서의 ‘노후’된 공중화장실은 공중화장실의 기능 저하문제를 발생 시킬 뿐만 아니라, 공중화장실의 안전성 문제와도 직결될 수 있음
 - 영국이나 호주 같은 유럽의 경우 새로운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정책적 방향성 보다는 기존의 노후화된 공중화장실을 도시재생측면에서 개보수하여 사용하는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는데 더 집중하고 있음
- 노후화장실 개선에 관련된 해외사례: 영국
 - 영국 런던의 경우 공중화장실의 노후에 따른 위생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자체, 이해관계자, 화장실협회, 시민협의체와 협력하여 노후 화장실 현황과 개선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 시작(London Assembly, 2006: 11)
 - 런던의 경우 공중화장실의 노후화에 현상과 원인을 밝혀내고 분석하는 업무를 시청 담당 공무원과 화장실 협의체 간의 협업을 통해 수행중이며 공중위생 및 화장실에 관련된 제도의 문제, 노후된 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한 인력과 비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마련에 집중(LondonAssembly, 2006: 14).
 - 영국은 지방정부법 (Local Government Act) 1976 Section(조항) 20의 규정에 따라 공용화장실 설치 관리, 진흥, 개보수 등의 업무를 지방정부에

위임하여 지방정부법(Local Government Act) Section(조항) 20에 따라서 지방정부는 지역의 공용 화장실에 대한 계획, 허가 및 설치, 개보수에 대한 위임된 권한을 갖으며, 공용화장실의 적절한 공급 및 관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권한을 사용할 수 있음

○ 노후화장실 개선에 관련된 해외사례: 호주

- 호주의 데어빈(Darebin)시의 경우 노후 공중화장실을 포함한 모든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한 세부계획을 「Public Toilet Strategy 2015-2025」을 토대로 시행
- 오래되어 더럽고 안전하지 못한 공중화장실 인식 개선을 위한 데어빈(Darebin)시 의회가 예산을 투입하여 낙후된 화장실 개선 사업을 착수하여 시행중
- 낙후된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 조사하고 화장실 유지를 위한 기준 등을 마련하여 이를 토대로 노후화장실 개선 전략을 해마다 계획
- 공중화장실의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의무 및 책임 사항이 시(local government)에 있음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으며 전략, 정기적인 수리, 고객 고충 처리 등을 모두 시(local government) 담당 부서에서 처리하도록 지정함(Darebin Public Strategy, 2016: 29-30)
- 시(local government)에서는 노후된 화장실 유지 보수를 위하여 적어도 연간 75,000달러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며 대부분 노후된 화장실은 공공장소에 위치해 있으며 가장 오래된 곳은 89년도 넘은 곳이기 때문에 이는 안전의 문제와 직결되는 점을 강조해 때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
- 그러나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민간과 협력한 혹은 시 자체에서는 화장실 유지 보수를 위하여 2025년까지 예산 확충을 실시할 예정

[표 5-21] 호주 멜버른 데어빈(Darebin)시의 Public Toilet Strategy

전략	세부내용
Action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uncil will undertake an annual physical condition audit of all of all its public toilet facilities. This information will be used to inform the capital works process for renovation, repair or replacement of Darebin's public toilet network. • Action 1 : 시의회는 모든 공공 화장실 시설에 대해 그 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조사가 해마다 실시되어야 하며, 이 정보는 데어빈(Darebin)시의 공중화장실 개조, 수리 또는 교체를 위한 자료로 사용되어야 한다.
Action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uncil's Project Management, Building Maintenance or Public Realm units will create business cases for toilet facilities identified that require renovation or replacement for consideration as part of the capital budgeting process each year until 2025. • Action 2: 시의 프로젝트 관리, 건물 유지 보수에 관련된 조직은 2025년 까지 매년 관련 예산을 책정하여 개조 또는 교체가 필요한 화장실 시설을 지정하고 개·보수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출처: Darebin Public Strategy, 2016: 9 직접인용

2) 비예산지원측면

청소인력지원

- 공공근로 인력 활용한 청소인력 지원 방안 검토 필요
 - 공공근로 인력을 개방형 화장실 또는 공중화장실의 청소인력으로 배치하여 활용할 수 방안 검토 필요
 - 공공근로 근무자에게는 최저임금 수준인 시간당 8,590원의 임금이 적용되며 주 40시간 이내에서 근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근로 근무자들이 공중화장실 및 개방형화장실의 청소업무 수행 기피현상을 막기 위해, 화장실 청소업무를 담당할 경우 주당 채워야 하는 노동시간을 줄여주는 등의 탄력적인 운영방안 마련가능
- 사회적경제조직을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인력으로 활용 가능
 - 지자체 공중화장실 담당공무원 의견조사 중 지자체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

를 위한 외부 위탁업체명을 조사한 결과 몇몇의 지자체에서는 사회경제조직을 활용하여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탁하고 있는 실정으로 나타남
 - 지역사회문제해결을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을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가능

[표 5-22] 사회적경제조직과 민간기업과의 비교

	사회적경제조직	민간기업
서비스범위	서비스범위 협소	서비스범위 광범위
설립의 배경	공공 서비스 대안	시장경제 지향
설립의 목적	지역주민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해결을 실천과제로 인식하여 운영하거나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운영	수익창출

- 사회적경제조직을 활용해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 해외사례: 미국¹⁵⁾
 -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 채필(Chapel Hill)지역의 경우 노후 화장실 관리를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을 활용중(Public Toilet Advocacy Toolkit, 2019: 109)
 - 사회적경제조직(혹은 비영리단체)을 활용하여 노후된 화장실의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어떤 시설이 재정비 되어야 하는지를 확인하고 직접 청소하는 업무까지 대행
 - 사회적경제조직(혹은 비영리단체)를 통해 청소를 시행하고 시에서 그들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며 사회적경제조직을 활용하여 공중화장실의 질적개선을 확대하기 위한 활동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우 안정적인 자금이 확보 되기 때문에 win-win 전략으로 평가됨
 - 또한 노후된 공중화장실이 폐쇄 될 경우 폐쇄된 공중화장실 인근의 스타벅

15) Downtown Public Toilet Facilities Project Team Recommendations Retrieved from <https://www.townofchapelhill.org/home/showdocument?id=43764>

스, 맥도날드, 혹은 지역상점에 화장실 공유 정책을 설명하고 세금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민간개방화장실을 확보하는 시책이 운영중

- 사회적경제조직을 활용해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 해외사례: 일본
 - 일본에 위치한 ‘이치방(いちばん)관 공중화장실’은 지역내에 위치하고 있는 ‘마치즈쿠리 구즈우’ 라는 사회적 경제조직을 통해서 유지관리 되고 있음
 - 단순히 청소의 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주변지역의 화단을 정비하는 업무도 함께 수행

□ 공개공지 제도

- 건축법상 「공개공지」의 개념
 - 도시에 일정한 비율의 공지(空地, Open Space)를 확보하는 것은 도시민의 휴식 등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시에는 일정한 비율의 공공공지(公共空地)가 존재
 - ‘공개공지’란 「건축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2에서 정한 바와 같이 쾌적한 지역 환경을 위해 사적인 대지 안에 조성토록 강제하는, 일반 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공적 공간(POPS, Privately Owned Public Space)을 말함¹⁶⁾
 - 「건축법」에서는 모든 건축물이 공개공지를 설치할 의무를 갖는 것은 아니며, 지역적으로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에 일정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만 공개공지 설치의무가 있고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이 포함됨
 - 「건축법」에서는 공개공지 의무 대상 건축물이거나 의무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일정 면적 등(「건축법」이나 조례가 정한 면적 및 설

16)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80586&cid=58765&categoryId=58768>
(검색일 2020.6.23.)

치기준)의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제한(「건축법」 제60조)을 각각 1.2배의 범위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상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건축법상 「공개공지」의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는 방법을 통해 개방형 화장실 설치 규정을 추가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검토 가능
 - 도심지 및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개방화장실 및 공중화장실이 부족한 실정과 민간개방화장실의 지정확대가 쉽지 않은 현실을 반영해 차선책으로서 「건축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2의 개정의 과정을 거쳐 상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에 위치하면서 일정규모 이상의 규모를 가진 건축물에 한해 개방화장실 지정을 의무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 볼 수 있음
 - 관련 법 개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한계점이 존재함

□ 홍보대행 지원

- 민·관 간의 명명권(命名權)제도 도입 검토
 - 유동인구 밀집 지역 또는 상가밀집 지역 인근 공중화장실에 명명권(命名權) 제도 도입 검토 가능
 - 일본의 도쿄도 시부야구 구립 공중화장실의 경우는 시설 명명권제도를 도입하여 명명권을 취득한 기업이 공중화장실에 자사명과 상품명을 붙일 수 있는 등의 독자적 광고게시가 가능한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면서, 지자체는 명명권 도입에서 얻은 자금으로 공중화장실유지 관리 비용을 충당하는 등의 자체 수입창출구조를 유지
 - 일본의 도쿄 시부야구 도로상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경우도 명명권 사업을 통해 공중화장실의 청소 및 유지관리 부분을 해결하고 있음
 - 명명권 취득한 기업의 경우는 자사의 상품을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받으면서 화장실 청소 등 유지관리의 책무도 동시에 제안받음

[표 5-23] 일본의 명명권제도에 대한 해외사례

공공시설 명명권 도입에 대한 일본사례

일본에서 대표적인 예로서 도쿄「아지노모토 스타디움」의 원래 이름은「도쿄 스타디움」이었으나 식품 회사 아지노모토가 명명권을 사들여 경기장에 자기 회사 이름을 붙여 버렸으며, 2002월드컵대회의 결승전이 열린 「요코하마국제종합경기장」역시 닛산자동차가 명명권을 사들여「닛산스타디움」으로 경기장 이름을 바꿔버림

출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해외행정우수사례

이용자의 자발적인 유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 도입

- 임팩트 있는 그림을 통해 이용자의 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시행 검토 가능
 - 행동경제학자 리차드 탈러(Richard H. Thaler)에 의해 소개된 넛지(nudge)는 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 이라는 뜻으로 합리적 의사결정자로서의 분석능력을 갖추고 있을 때 내릴 수 있는 선택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사람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개입들을 뜻함
 - 공중화장실의 불법촬영물 설치에 관련된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선택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는 정책으로 시행여부 검토 가능

[그림 5-3] 공중화장실 사용 관련 넛지 사례

공중화장실 사용 관련 넛지 사례



- 강철구·지우석·전소영(2017), 경기도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방안 연구, 경기연구원
 광명시(2018), 광명시 공중화장실 수급계획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 한국경제조사
 연구원
-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2017), 공중화장실 이용자 만족도 조사 보고서
- 박누리·박준민·배은재·공기석 (2018), IoT 기반의 실시간 스마트 화장실 관리 시스템
 개발.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217-2219
- 서울시(2019), 서울시 비주거용 민간화장실 실태조사 용역보고서, 화장실문화시민연대
 용인시(2018), 2023년 공중화장실 수급계획 및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보고서,
 한국경제조사연구원
- 조의현·김원철·강정태·이동국·김대홍·김설희(2008), 2008 개방화장실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정보화진흥원(2018), 사회문제 해결형 SW 정책 발전방향, 「IT & Future
 Strategy(IF Strategy)」제6호
- 행정안전부(2019), 전국 개방화장실 지원현황 조사결과 보고 자료
- 행정안전부(2019), 공중화장실 세부 설치기준 마련 및 활용방안 연구.
- 행정안전부(2020), 화장실 이용문화 개선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 자료
- 행정안전부(2020),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자료
- 화성시(2018), 화성시 공중화장실 수급계획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 한국경제조사연
 구원
- Sunarti, S., Helmi, M., Widjajanti, R., & Purwanto, A. A. (2019). Smart
 Community in Public Toilet Management in Demaan Slum
 Settlement, Jepara Regency. In IOP Conference Series: Earth and

- Environmental Science (Vol. 396, No. 1, p. 012023). IOP Publishing
- 男女共同参画会議 第10回重点方針専門調査会, 「‘女性活躍加速のための重点方針 2015’の関連施策の実施状況及び決算額等」, 男女共同参画会議, 2017
- 小林純子, 『公共トイレ改善の取組の評価と実現方策に関する研究-長期にわたる改善活動・設計・維持管理・評価に関する継続調査を通して-』, 東洋大学 博士学位論文, 2014
- 畠山輝雄, 『公共施設へのネーミングライツの導入の実態と今後のあり方』, 地方自治総合研究所, 自治総研 Vol.423, 2014. 1
- 坂本菜子編, 『公共トイレ管理者白書』, オーム社, 2005
- 국가 법령정보센터, 광명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Retrieved from <http://www.law.go.kr/> (검색일: 2020.05.20)
- 국가 법령정보센터,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Retrieved from <http://www.law.go.kr/> (검색일: 2020.05.20)
- 국가 법령정보센터, 화성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Retrieved from <http://www.law.go.kr/> (검색일: 2020.05.20.)
- 마치즈쿠리 구즈우 주식회사 홈페이지 (<https://www.tmo-kuzuu.com/>)

부록1

심층인터뷰 회의록 1

KRILA

- 인터뷰 개최 일시: 2020년 5월 20일 10:00~11:00
- 간담회 개최 장소: 원주시 청소년문화의집
- 인터뷰 대상자: 이OO

- 인터뷰대상자1: 지원은 적고, 발생 되는 비용이 너무 많다. 안전하고 깨끗한 화장실을 위한 연구를 위하신 것 같은데 개방형 민간화장실 유도를 하려는 제도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혜택이나 지원 사항이 너무 미비하다. 1층 화장실 개방을 했으나 원주문화재단이 들어오면서 그 쪽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다. 공연장 쪽 개방형 화장실이 되면서 1층 개방형 화장실 사용률이 줄었다. 그리고 누가 정확하게 관리하는지 모르지만 상가 번영회에서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인터뷰대상자1: 화장실 청소는 공공근로 어르신들이 청소를 해주신다. 2-3층 관리하면서 수시로 점검이 가능하다. 특히 1층 개방형 화장실 동파, 변기 막힘이 발생 할 때 공공근로 어르신들이 청소하러 오셨다가 그냥 돌아가신다. 화장실 비위생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 화장실 관리가 굉장히 어렵다. 건물이 오래되어서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이 많다. 화장실 내부 난방시설 고장으로 겨울에 동파가 발생한다. 고장난 난방기를 수리를 할 경우 자부담이 되기 때문에 수리하기도 어렵다. 또한 동파로 인해 공과금(수도요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고충이 크다. 청소인력보다는 공과금 지원이 가장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 인터뷰대상자1: 공공시설이다 보니깐 시에서 공공근로자 분들이 오시는 것 같다. 청소년 문화의 집이고 개방형 건물이며 시민센터도 있었기 때문에 개방형 화장실으로 자연스럽게 개방되어 왔다. 흡연 관련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 다른 개방형화장실에 비해서 깨끗한 화장실이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신다. 그리고 안전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몰카 점검을 중점적으로 해

야 할 것 같다. 작년 하반기에 점검하고 오고 오지 않았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몰카 점검이 지속적이고 수시로 시행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개방형 화장실을 만든다면 여성과 남성 출입구 위치를 다르게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원주시에서 몰카 장비를 대여하여 점검을 자체적으로 한다하더라도 만약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책임 여부가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문제다. 개방형 화장실에 이용자가 많은데 기관이 모두 책임을 갖게 되는게 문제다.

- 인터뷰대상자1: 분기별로 50리터 쓰레기 봉투 2묶음, 화장지 1박스 지원이 전부이다. 여성 청소년들을 위해 또 여성용품도 구비하고 있다. 특히 화장지가 부족하며 지원이 턱도 없이 부족하다. 현실적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화장실이 우선이 되며, 그리고 건물 관리를 위해서는 공과금 혜택, 위생 관련 물품(변기소독제, 탈취제)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민간에서 화장실을 개방하기 꺼려하는 이유는 위생적인 문제 때문이다.

부록2

심층인터뷰 회의록 2

KRILA

- 인터뷰 개최 일시: 2020년 5월 20일 14:00~15:00
- 인터뷰 개최 장소: 원주시 정우빌딩 1층
- 인터뷰 대상자: 노OO

- 인터뷰대상자2: 전에 다니던 회사가 이런 민간 화장실 개방을 하고 있었고 시에서 지원을 받는다는 말을 듣고 신청했는데 막상해보니 위생 관리가 엉망하니까 입점한 사람들의 민원 때문에 화장실을 개방하였다가 취소했다. 개방화장실 대략적으로 운영은 1년 미만이었다. 시청에서 지원받은 물품은 반기별로 화장지와 쓰레기 봉투를 지원 받았던 것 같다. 또한 특히 화장실 고장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다. 기물 파손이 될 경우 입점한 점주와 건물주가 부담해야한다. 또한 사용할수록 시설이 낙후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개방형화장실 관리하는 비용의 문제이다. 청소 용역 업체를 계약해서 청소하는데 짧은 시간에 청소 하고 다녀가는데 개방형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하고, 이렇게 되면 수시로 청결 상태 유지를 위해서 새로운 인력을 고용해야하는 부분인데 새로운 비용 문제이고 예산 사용에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다. 그러니 점주들이 개방형 화장실 유치를 취소하자고 이야기 하는 것이다. 시설개선비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공과금의 경우 개방형 화장실 이용자들이 정확하게 물을 얼마나 쓰는지 계량하는게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준을 세우는 것은 어렵다. 차라리 유지관리, 안전과리 시스템지원, 시설개선비 지원이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다. 또한 정부에서 지원금을 더 준다는 것이 민간 개방형 화장실 유도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다. 건물에 입점한 사람들의 경우 개개인의 손익 계산이 맞지 않은 경우 민간 개방형 화장실 유도는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한다. 화장실은 점점 잠귀기는 추세이다. 20~30개 집합형 상점이 있을 경

우 화장실 도어락 설치 의견 조율을 맞추기 어려워서 그런 거지 도어락 설치에 대한 의견은 많이 제기 되고 있다. ICT기술 접목하여 화장실 이용자들을 인증하고 사용하는 방식이 진행될려면 관리업체나 기술 관리와의 협업이 필요하다. 정부는 관리업체, 건물주, 사용자, 입점자들의 사이의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수도권지 고장 날 경우 관리사무실 입장과 관리업체 입장이 서로 난감 해진다. 관리소장님들의 경우 적은 인건비로 일하고 계신다. 많은 시설물들을 관리하고 계신다. 그런 와중에 이런 기술적 시스템이 생기면 또 다른 관리 일거리가 생기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일하기가 힘들어지고 이 돈 받고 이런 일 하지 않으려는 심리가 발생하게 된다. 그럼 이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 관리비가 오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입점자들은 관리가 오르면서까지 이게 왜 필요한지 이해를 하지 못하는 입장이 발생하는 한다. 민간 화장실 개방 유도보다는 공공화장실을 설치하고 일자리 창출을 꾀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지원해준다면 부담이 경감될 것 같다. 줄음 쉼터 운영의 경우도 청소 문제, 시설물 파손문제 때문에 힘들어서 취소했다고 한다. 줄음 쉼터 화장실도 외주로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부록3

심층인터뷰 회의록 3

KRILA

- 인터뷰 개최 일시: 2020년 5월 21일 14:00~15:00
- 인터뷰 개최 장소: 원주시 치악고교길 인근
- 인터뷰 대상자: 이OO

- 인터뷰대상자3: 참여해달라는 말이 나왔고 이에 대한 지원도 될 것이다, 이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개방형 화장실 하게 된 거다. 개방형 화장실 한 지는 몇 년 됐다. 2년은 넘은 것 같다. 433 제곱미터이다. 사실 아버지께서 하신 걸 이어받은 건데 아버지 때 받은거라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다.
- 연구진: 위생과에서 지정한 건가?
- 인터뷰대상자3: 그렇다. 위생과에서 했다. 그런데 여기는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나가질 않는다. 그래서 이 지역은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하루 평균 0명이다. 보통 손님은 당연히 사용하는 건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사용한다는 개념에서는 한달에 한번? 여기는 주거지역이다보니까...
- 연구진: 그럼 왜 지정이 됐지? 라고 궁금했는데, 모범업소여서 된건가?
- 인터뷰대상자3: 그렇게 알고 있다. 모범업소여서 지정합니다, 라고 안내받았고 모범업소들은 다 지정이 된 줄 알고 있었다.
- 연구진: 개방형 화장실이 어떤 건지 정확한게, 그러니까 지정에 따른 혜택이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생각안하고 해야 한다고 하니까 한건가?
- 인터뷰대상자3: 거의 그렇다. 모범업소니까 하는 줄 알았고 혜택도 좋다 나쁘다 수준이 아니라 비슷한 수준이니...그리고 이 지역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라면 잠재적, 예비적 손님이기 때문에 한 거다.

- 연구진: 소비자를 위한?
- 인터뷰대상자3: 그렇다. 그래서 거부감은 없었다. 애매하긴 했다. 처음에 지정된다고 했을 때 지저분하게 쓰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무례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은 했지만 서비스를 위해서는…그리고 해야 한다고 하니까 했는데 지정된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 한 건 아니다.
- 연구진: 지정된 시기는?
- 인터뷰대상자3: 2~3년 전쯤이다. 정확하진 않다. 안내 받으신지 오래되진 않았다.
- 연구진: 건물이 화장실 청소관리를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하다.
- 인터뷰대상자3: 1층 가게 안만 개방형 화장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한다. 개인이 화장실 이용을 원할 땐 가게 안의 화장실을 사용하면 된다.
- 연구진: 지금 조사하는 이유가 개방형으로 지정된 이후 방치되거나 이런 문제 때문인데, 가게 손님 이용하는 화장실이어서 그때그때 관리하는 건가?
- 인터뷰대상자3: 그렇다. 방치가 될 수 없다. 음식점 서비스 문제이기 때문에…
- 연구진: 주거지역보다는 사실 상업지구 쪽 개방 화장실이 있는데, 잠가놓지 않고 열어만 주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게 일반적인 개방형 화장실 개념이다. 그렇다보니 더럽게 사용하고 분란도 있고 훼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그런데 여기는 가게 안이어서 그런 문제점과는 상관이 별로 없을 것 같다.
- 인터뷰대상자3: 그렇다. 개방형 화장실이니까 시민 입장에서는 자기가 쓸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 이용하는 것인데 음식점 안에 있다 보니 오시는 분들이 쭈뼛쭈뼛 들어오신다. 그런 문제만 있다.
- 연구진: 파손이나, 안전, 이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대신 이용률이 저조해서…접근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을 것 같다. 가게 내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접근성의 문제. 개방형 화장실을 지정하면 휴지나 이런 것들도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원받나?
- 인터뷰대상자3: 주민센터에서 수령 하기도 하고, 쓰레기봉투는 직접 가서 수령을 하고 화장지는 갖다 준다. 시청인지 어디서 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전화가 와서 안내해주고, 그 다음 수령을 하러 가거나 갖다주는 걸 받는다.
- 연구진: 주민센터도 사실 개방형 화장실이다. 공공이어서 개방형이라고 표현

을 안할 뿐인데, 이 근처에 개방형이 또 있나?

- 인터뷰대상자3: 아니다. 본 적은 없다. 이쪽은 주거지역이어서 지정사례가 별로 없는 것 같다. 늘 그렇듯, 화장실 이용하러 누군가 올 때 꺼림칙함이라는 게 있기는 하다. 발생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 그 정도까지만이지 그 외에는 큰 문제가 없다.
- 연구진: 바쁠 때 오거나 하면?
- 인터뷰대상자3: 안내 한 마디면 되는거니...서로 쭈뼛한다. 정도가 맞는 것 같다. 그 정도의 불편만 있다.
- 연구진: 시설이 파손되거나 하는 경험은?
- 인터뷰대상자3: 아직은 없다.
- 연구진: 안전에 관련된 사고가 개방형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개방형 지정 이후에 안전 관련 문제가 있었는지도 궁금하다.
- 인터뷰대상자3: 그것도 없다. 화장실이 안에 있고, 남녀도 구분되어 있다.
- 인터뷰대상자3: 마지막 질문이다. 건물의 소유주가 민간에게 화장실을 개방해야 할 때, 건물주의 입장에서 어떤 혜택이 있으면 개방형 화장실 운영을 할 것 같다고 보는지?
- 인터뷰대상자3: 혜택이라는 게 어지간한 수준이어서는 안하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한다면, 유지관리 인력 지원 정도가 중요한 것 같다. 누군가 화장실을 사용했을 때 사용하고 나서 깔끔하지 않은 문제를, 이게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몫인데 그걸 도와주는 거니까...그리고 중요한 것은 돈에 관련된 혜택도 중요한 것 같다. 세제혜택이든 공과금이든 금전적 개념이니까 어차피 이들은 비슷한 유형인 것 같다. 두 가지가 필요하다면 유지관리(청소) 인력 지원과 금전적 혜택이 필요할 것 같다.
- 연구진: 물품으로 받고 있다고 했는데, 다른 지자체는 현금 지급도 있다.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받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나?
- 인터뷰대상자3: 여기 사례처럼 사용 인원이 적으면, 이용객 수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게 된다. 그런데 반대로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라면 또 턱없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을 제공하는 게 낫냐의 개념이라기보다 이용객에

맞게 제공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다.

- 연구진: 모범업소의 혜택은?
- 인터뷰대상자3: 모범업소라고 홍보해준다. 그리고 위생관리도 또 철저히 진행된다. 아까 얘기했던 쓰레기봉투도 모범업소한테 주는 걸 거다. 시에서 위생이나 아니면 관련된 몇 가지 물품을 제공해 주기도 한다.
- 연구진: 개방형 화장실이 건물주나 가게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사실 정부가 무언가를 떠넘기는 상황이 되는 건데, 월드컵때나 올림픽때는 외국분들이 많이 오니까 그때 개방하라고 하고 했는데, 지금 와서 개방형 화장실을 요구하는 정책, 그걸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연구하고 있다. 불편은 최소화하면서 인센티브를 어떻게 주면 개방형 화장실을 늘릴 수 있는지의 연구인데, 결국은 이게 시 위생과하고 관련된 일이어서 가게나 건물주나 민간 입장에서 시에 협조하는 차원으로 하지 않을까,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었다. 민관이 협력하는 차원에서 정부에선 모범업소로 지정해주고, 공공의 입장에서 혜택을 주고...그런 생각도 언뜻 들었다.
- 인터뷰대상자3: 저희에겐 화장실을 개방하는 게, 모범업소에 대한 의무조항 같은 느낌이었다.
- 연구진: 그 당시 화장실 개소 확보를 위해 모범업소에게 화장실도 같이 개방하라고 지정한 게 아닌가 싶은데...화장지라도 받으려고 개방형 화장실 신청한 분도 있고 그렇다. 유동인구가 화장실을 어찌되었든 이용하게 되고, 그럴 거 휴지라도 받고 하자 해서 개방형 화장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받고 보니까 너무 일이 많아져서 혜택보다 비용이 더 크니 철회하는 분들도 있다.
- 인터뷰대상자3: 애매한 게, 저희같은 경우는 개방해야 할 의지도 못 느끼겠지만 반대로 안 할 필요성도 못 느끼는 편이다. 사용인구가 별로 없어서 불편한 게 별로 없다보니...
- 연구진: 모범업소에 대한 의무지정도 확대의 방안은 될 거는 같다. 모범업소는 관리를 잘 해주시니까...
- 인터뷰대상자3: 그런데 유동인구 많은 곳이라면 문제가 있을 거다. 늘 그렇듯 시설 이용 문제는 금전적 계산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 같아서, 금전

적 문제가 될 거다.

- 연구진: 모범업소도 취소가 되나?
- 인터뷰대상자3: 취소될 수도 있다. 자격이 박탈당하는 거다. 그런데 아직 그런 경고는 받은 적은 없다.
- 연구진: 모범업소는 신청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정하는 건가?
- 인터뷰대상자3: 선정되는 걸로 알고 있다

부록4

IPC Minimum Plumbing Facilities

KRILA

분류	건물종류	변기수		세면대수		욕조 -	식수대	기타	
		남	여	남	여				
집 회	A1	극장, 공연장	125명당 1개	65명당 1개	200명당 1개		-	500명당 1개	서비스싱크 1개
	A2	나이트클럽, 주정 등	40명당 1개	20명당 1개 ¹⁷⁾	75명당 1개		-	500명당 1개	서비스싱크 1개
	A3	레스토랑, 푸드코트 등	75명당 1개	38명당 1개 ¹⁸⁾	200명당 1개		-	500명당 1개	서비스싱크 1개
		아쿠아리움 (좌식의자가 없는곳), 갤러리, 박물관, 전시장 등	125명당 1개	65명당 1개	200명당 1개		-	500명당 1개	서비스싱크 1개
		교통시설 터미널 등	500명당 1개	250명당 1개 ¹⁹⁾	750명당 1개		-	1,000명당 1개	서비스싱크 1개
		종교집회장소	150명당 1개	75명당 1개	200명당 1개		-	1,000명당 1개	서비스싱크 1개
		A4	스케이트 링크, 수영장, 실내스포츠 센터 등	75명당 1개 ²⁰⁾	40명당 1개 ²¹⁾	200명 당 1개	150 명당 1개	-	1,000명당 1개
	A5	체육관 실외스포츠시 설 등	75명당 1개 ²²⁾	40명당 1개 ²³⁾	200명 당 1개	150 명당 1개	-	1,000명당 1개	서비스싱크 1개
회 사	B	사무소 은행 상점 등	25명당 1개 ²⁴⁾		40명당 1개 ²⁵⁾		-	100명당 1개	서비스싱크 1개
교 육	E	교육시설	50명당 1개		50명당 1개		-	100명당 1개	서비스싱크 1개

분류	건물종류	변기수		세면대수		욕조 -	식수대	기타
		남	여	남	여			
산업	F1	공장 산업단지 등	100명당 1개	100명당 1개	피부 오염에 노출될 경우 10명당 1개 ²⁶⁾	400명당 1개	서비스싱크 1개	
	F2							
시설	I1	치료센터 회복시설 등	10명당 1개	10명당 1개	8명당 1개	100명당 1개	서비스싱크 1개	
	I2	병원, 간호시설 등	방1개당 1개	10명당1개	8명당 1개	100명당 1개	서비스싱크 1개	
		근로자 케어시설	25명당 1개	35명당 1개	-	100명당 1개	-	
		방문객 장소	75명당 1개	100명당 1개	-	500명당 1개	-	
	I3	교도소	한개의 cell당 1개	한개의 cell당 1개	15명당 1개	100명당 1개	서비스싱크 1개	
	I3	소년원	15명당 1개	15명당 1개	15명당 1개	100명당 1개	서비스싱크 1개	
		교도소 소년원 근로직원 공간	25명당 1개	35명당 1개	-	100명당 1개	-	
I4	어린이집 센터	15명당 1개	15명당 1개	1개	100명당 1개	서비스싱크 1개		
상점	M	상점 쇼핑센터	500명당 1개	750명당 1개	-	1,000명당 1개	서비스싱크 1개	
거주	R1	호텔 모델	Sleeping unit1당 1개	Sleeping unit1당 1개	Sleeping unit1당 1개	-	서비스싱크 1개	
	R2	기숙사 등	10명당 1개	10명당 1개	8명당 1개	100명당 1개	서비스싱크 1개	
	R2	아파트	거주1가구당 1개	거주1가구당 1개	거주1가 구당 1개	-	거주1가구당 부엌싱크 1개 20거주당 세탁싱크1개	

분류	건물종류	변기수		세면대수		욕조 -	식수대	기타
		남	여	남	여			
	R3	게스트 룸이 5개 이하인 하우스 거주1가구당 1개		10명당 1개		주지 1개당 1개	-	거주1가구당 부엌싱크 세탁싱크 각각1개
	R3	16명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시설 10명당 1개		10명당 1개		8명당 1개	100명당 1개	서비스싱크 1개
집 회	R	추가적인 게입지역 ²⁷⁾	100명당 1개 ²⁸⁾	50명당 1개 ²⁹⁾	250명당 1개 ³⁰⁾	-	1,000명당 1개	서비스싱크 1개

- 17) 2015년 IPC 권고기준 사항 개정에 따라 40명당 1개에서 20명당 1개로 변경
- 18) 2015년 IPC 권고기준 사항 개정에 따라 40명당 1개에서 38명당 1개로 변경
- 19) 2015년 IPC 권고기준 사항 개정에 따라 500명당 1개에서 250명당 1개로 변경
- 20) 1,500명이 초과하는 경우 120명당 1개
- 21) 1,520명이 초과하는 경우 60명당 1개
- 22) 1,500명이 초과하는 경우 120명당 1개
- 23) 1,520명이 초과하는 경우 60명당 1개
- 24) 50명이 초과하는 경우 50명당 1개
- 25) 80명이 초과하는 경우 80명당 1개
- 26) 권고기준 IPC Section 411에 따름
- 27) 2018년 IPC 권고기준 개정에 따라 새롭게 추가
- 28) 400명이 초과하는 경우 250명당 1개
- 29) 400명이 초과하는 경우 150명당 1개
- 30) 750명이 초과하는 경우 500명당 1개

공중화장실법 제3조(적용범위)		시행령 제3조 (적용범위)	공중화장실법		국가건설기준		공중화장실 세부 설치 기준(안)	
			(행정안전부)		위생기구설계기준 (KDS311010:2016,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	
			면적 or 이용자 수 기준	비율기준 (최소설치 기준)	변기 수		변기수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 자연공원법	자연공원	-	·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 인 시설	② 남자 : 여자 = 1:1.5 이상			5/500*	8/500*
							3/500*	5/500*
2. 관광진흥법	관광지, 관광단지 등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	-	·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 인 시설				5/500*	8/500*
							3/500*	5/500*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터미널	-	-	① 남자 : 여자 = 1:1 이상	1/500	1/500	1/500	1/500
4. 유통산업 발전법	대규모점포, 임시시장, 상점가, 전문상가단	-	-		1/500	1/500	1/500	1/500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	·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 인 시설	② 남자 : 여자 = 1:1.5 이상			5/500*	8/500*
							3/500*	5/500*
6. 도로법	휴게시설(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	연평균 1일 편도 교통량 5만대 이상인 고속도로 휴 게소				5/500*	8/500*
							3/500*	5/500*

공중화장실법 제3조(적용범위)		시행령 제3조 (적용범위)	공중화장실법		국가건설기준		공중화장실 세부 설치 기준(안)	
			(행정안전부)		위생기구설계기준 (KDS311010:2016, 국도교통부)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	
			면적 or 이용자 수 기준	비율기준 (최소설치 기준)	변기 수		변기수	
남자	여자	남자			여자			
7.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철도시설 중 역사설	-	-	① 남자 : 여자 = 1:1 이상	1/500	1/500	1/500	1/500
8. 도시철도법	역사 및 역사설	-	-		1/500	1/500	1/500	1/500
9. 항만법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시설	-	-		1/500	1/500	1/500	1/500
10. 유선 및 도선사업법	유선장 및 도선장	-	-		1/500	1/500	1/500	1/500
11. 석유 및 석유대체연 료 사업법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	-		1/500(판매시 설)	1/500(판매시 설)	1/500	1/500
12. 액화석유 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	-		1/500(판매시 설)	1/500(판매시 설)	1/500	1/500
13.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	-	-		1,500명까지 1/75, 1,500명 초과 1/120	1,520명까지 1/40, 1,520명 초과 1/60	1,500명까지 1/75, 1,500명 초과 1/120	1,520명까지 1/40, 1,520명초과 1/60
14. 공항시설법	공항시설	-	-		1/500	1/500	1/500	1/500

공중화장실법 제3조(적용범위)		시행령 제3조 (적용범위)	공중화장실법		국가건설기준		공중화장실 세부 설치 기준(안)	
			(행정안전부)		위생기구설계기준 (KDS311010:2016,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	
			면적 or 이용자 수 기준	비율기준 (최소설치 기준)	변기 수		변기 수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5. 공연법	공연장(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 목적의 시설)	-	-	② 남자 : 여자 = 1:1.5 이상	1/125	1/65	1/125	1/65
1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	-	① 남자 : 여자 = 1:1 이상	50명까지 1/25 50명초과 1/50	50명까지 1/25 50명초과 1/50	50명까지 1/25 50명초과 1/50	50명까지 1/25 50명초과 1/50
	2. 문화 및 집회시설	-	-	② 남자 : 여자 = 1:1.5 이상	1/125	1/65	1/125	1/65
	3. 의료시설: 병원, 격리병원	-	-	① 남자 : 여자 = 1:1 이상	· 병동 : 1/10	· 병동 : 1/10	· 병동 : 1/10	· 병동 : 1/10
					· 외래병동 1/실	· 외래병동 1/실	· 외래병동 1/실	· 외래병동 1/실
					· 병동 외 직원 : 1/25	· 병동외 직원 : 1/25	· 병동 외 직원 : 1/25	· 병동 외 직원 : 1/25
					· 병동 외 방문자 : 1/75	· 병동 외 방문자 : 1/75	· 병동 외 방문자 : 1/75	· 병동 외 방문자 : 1/75
	4. 교육연구시설	-	-	-	1/50	1/50	1/50	1/50
5. 노유자시설	-	-	-	1/15	1/15	1/15	1/15	
6. 수련시설	-	-	-	1/10	1/10	1/10	1/10	

공중화장실법 제3조(적용범위)	시행령 제3조(적용범위)	공중화장실법		국가건설기준		공중화장실 세부 설치 기준(안)	
		(행정안전부)		위생기구설계기준 (KDS311010:2016,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	
		면적 or 이용자 수 기준	비율기준 (최소설치 기준)	변기 수		변기수	
				남자	여자	남자	여자
6. 묘지관련 시설	-					1/100	1/100
7. 장례시설	-					1/100	1/100
17. 그밖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규모 이상의 시설	1. 문화 및 집회시설	· 바닥면적의 합이 1천 제곱미터 이상 ·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② 남자 : 여자 = 1:1.5 이상	1/125	1/65	1/125	1/65
	2. 의료시설: 병원/격리병원	바닥 면적의 합이 1천 제곱미터 이상	① 남자 : 여자 = 1:1 이상	· 병동 : 1/10	· 병동 : 1/10	· 병동 : 1/10	· 병동 : 1/10
				· 외래병동 1/실	· 외래병동 1/실	· 외래병동 1/실	· 외래병동 1/실
				· 병동 외 직원 : 1/25	· 병동 외 직원 : 1/25	· 병동 외 직원 : 1/25	· 병동 외 직원 : 1/25
				· 병동 외 방문자 : 1/75	· 병동 외 방문자 : 1/75	· 병동 외 방문자 : 1/75	· 병동 외 방문자 : 1/75
	3. 교육연구시설			1/50	1/50	1/50	1/50
	4. 노유자시설			1/15	1/15	1/15	1/15
5. 수련시설			1/10	1/10	1/10	1/10	

공중화장실법 제3조(적용범위)	시행령 제3조 (적용범위)	공중화장실법		국가건설기준		공중화장실 세부 설치 기준(안)	
		(행정안전부)		위생기구설계기준 (KDS311010:2016,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	
		면적 or 이용자 수 기준	비율기준 (최소설치 기준)	변기 수		변기수	
				남자	여자	남자	여자
6. 묘지관련 시설						1/100	1/100
7. 장례시설						1/100	1/100
8.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바닥 면적 의 합이 2천 제 곱미터 이상	① 남자 : 여자 = 1:1 이상	1/500	1/500	1/500	1/500	1/500
9.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바닥 면적 의 합이 2천 제 곱미터 이상	① 남자 : 여자 = 1:1 이상	1/500	1/500	1/500	1/500	1/500
10. 업무시설	바닥 면적 의 합이 2천 제 곱미터 이상	① 남자 : 여자 = 1:1 이상	50명까지 1/25 50명초과 1/50	50명까지 1/25 50명초과 1/50	50명까지 1/25 50명초과 1/50	50명까지 1/25 50명초과 1/50	50명까지 1/25 50명초과 1/50

주: 1. 자연공원법, 2. 관광진흥법, 5.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6. 도로법에 따른 시설의 경우(*표 표시), 성수기 주 1일 평균 이용자수를 기준으로 하되 단체 버스 이용이 많은 경우와 적은 경우로 구분, 단체버스 이용이 많은 시설의 경우 남자 5/500, 여자 8/500, 단체버스 이용이 적은 시설의 경우에는 남: 3/500, 여: 5/500를 설치 기준으로 적용

자료: 행정안전부(2019) 공중화장실 세부 설치기준 마련 및 활용방안 연구

부록6

공중화장실 안심환경개선 체크리스트

구분	항목	점검사항	비고
화장실 외부 환경	조명	1 일정한 간격의 가로등으로 균일한 조도를 확보한다.	
		2 접근로의 유도등(볼라드 등)이 균일한 조도로 설치한다.	
		3 외부조명은 야간에 상시조명으로 설치한다.	
		4 화장실 후면 조명을 밝게 한다.	
	조경	5 화장실 주변에 나뭇가지로 인한 그림자가 없다.	
		6 화장실 주변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수목을 정리한다.	
	주변환경	7 화장실 건물 후면이 좁거나 가려지는 경우 반사경 또는 출입통제장치(펜스 등)를 설치한다.	
		8 화장실 내부로 침입 가능한 곳이 없어야 한다.	
		9 화장실 입구주변이 자연감시될 수 있는 시설물을 주변에 배치한다(벤치, 운동기구, 자전거거치대, 파고라, 편의점 등)	
	CCTV	10 화장실 출입구와 주변을 비추는 CCTV가 있다.	
화장실 입구	조명	11 화장실 입구는 상시등으로 밝아야 한다.	
	조경	12 화장실 입구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수목을 정리한다 .	
	주변환경	13 여자화장실은 길가에 가까운 쪽에 위치한다.	
		14 화장실의 남녀입구가 분리되어 있다.	
		15 화장실 남녀구분사인이 명확하다.	
		16 화장실 출입시 여유있는 통로폭을 확보한다.	
		17 화장실 입구출입문은 안의 움직임이 인지될 수 있도록 하단부는 투시형으로 한다.	
		18 안전 안내판을 부착한다(방법순찰안내, 물가점검안내, 비상벨설치안내, CCTV설치안내 등)	
		19 안내판이 간결하게 정리되어 부착되어야 한다.	
		20 여성화장실 입구 가까이에 비상벨을 설치하고 경광음이 나는 경광등을 설치한다.	
화장실 내부	조명	21 실내등은 상시조명등으로 24시간 밝게 한다.	
		22 전원차단스위치는 관리인만이 사용토록 한다.	
		23 실내등은 정전 시 비상전원이 자동으로 켜지게 한다.	
	내부공간	24 세면대 사용시 안쪽을 볼 수 있는 거울을 설치한다.	
		25 세면대 가까이에 비상벨을 설치한다.	
		26 화장실내 안쪽 끝에 비상벨을 설치한다.	

구분	항목	점검사항	비고		
		27	창문은 밖에서 안이 안보이고 빛만 투과되는 반투명 재료가 되어야 한다.		
		28	창문으로 사람이 통과할 수 없어야 한다.		
		29	실내에는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가 되어 쾌적함을 유지하도록 한다.		
		30	실내 마감재는 밝고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색으로 한다		
		31	실내 마감재는 낙서 방지 재료를 사용한다.		
		32	실내에 차분한 음악이 흐르도록 한다.		
		33	실내에 이상음 감지기를 설치한다.		
		34	청소도구함은 문이 있는 부스 내에 설치한다.		
		35	실내에 숨을 수 있는 은폐공간이 없도록 한다.		
		36	외부로부터 침입가능한 경로가 없어야 한다.		
		37	바닥의 미끄럼방지과 배수가 잘되어야 한다.		
		38	바닥재료의 내구성이 좋고 청소가 쉬워야 한다.		
		개별공간 (부스)	39	부스실내등은 상시조명등으로 한다.	
			40	부스내 조도는 200 Lx로 한다.	
41	부스 안의 비상벨 위치는 부스문을 열었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측벽에 부착한다.				
42	부스측벽은 바닥과 닿도록 하며 앞문은 바닥에서 10~20cm 개방한다.				
43	부스출입문의 틈은 안이 보이지 않도록 한다.				
44	부스 칸막이벽은 낙서방지 재료이어야 한다.				
45	출입문은 바깥 방향으로 열리는 것을 권장한다.				
공통 시설	비상벨	46	화변기는 양식변기로 교체한다.		
		47	부스문의 잠금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한다.		
		48	비상벨은 현장의 경광등과 경광음이 같이 작동하며 동시에 경찰서와 연결되도록 한다.		
		49	양방향 음성통화 기능 비상벨은 세면대 가까이에 설치하여 경찰서와 연결되도록 한다.		
	50	비상벨 버튼은 눈에 띄는 색상으로 하고, 쉽게 터치될 수 있도록 크게 한다.			
CCTV	51	경광음 90dB 이상, 작동시간 30초 이상으로 한다.			
	52	100만 화소 이상의 CCTV를 설치한다.			